

EU통합의 심화와 통상산업정책의 재편*

허 만 · 김광수 · 이갑수 · 윤영득

최근의 세계경제흐름은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두 가지 특징적인 양상을 보이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안 끌어오던 우루파이협상의 타결과 세계무역기구 설립의 합의로 다자간 자유무역주의에 의한 무국경 경제시대가 도래한 반면, 다른 한편에서는 지역통합에 의한 세계시장의 분할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EU는 세계경제의 지역화를 다른 어느 지역보다 더 가속화시키고 있다. EU는 지난 1987에 발효된 유럽단일의정서에 입각하여 1993년에 시장통합을 완성하였고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로 공동시장의 단계를 넘어 경제동맹으로 진입하여 재정, 금융, 통화정책의 조화를 추구하는 단계로까지 발전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통합의 심화과정을 살펴보고 그 과정에서 추진되고 있는 통상 및 산업정책의 방향이 어떠할지를 포괄적으로 살펴보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러한 목적하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경제통합과는 동전의 양면과 같은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EU의 장기적인 추진목표가 되는 정치적 통합가능성을 그 역사적 발전배경을 통해 살펴보고 있다. 유럽연합의 통합운동은 신기능주의적 전보라고 할 수 있는 장기간의 과정을 거쳐 진행되어 왔고, 재정, 금융 및 통상정책의 통일과 조화에 주안점을 두어 왔으나 이것이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력에도 크게 기여한 것은 사실이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한 통화통합 합의로 통합운동이 연방주의적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으며 이 방향은 EU의 정치적 통합가능성을 한층 가속화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통상정책에 있어서는 그 기조가 더욱 자유화의 경향으로 나갈 것인지 아니면 더욱더 보호주의적인 양상을 보일 것인가에 관심이 두어지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통상정책결정이 중앙집권적 경향을 띠게 될 것으로 보이지만 EEA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이 더욱 유럽지향적이 되어 역외차별주의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기조는 자유무역을 표방하지만 세계적 차원에서의 무차별주의 원칙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불리지향적 성격은 고수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산업정책은 그 일차적 목적을 역내국 산업의 지역네트워크를 강화하여 내생적인 시장의 힘을 자극하기 위해 계속적인 구조조정을 물리적으로 촉발하는데 두고 있다. 그 정책적 접근은 종전의 산업간 구조적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한 정부의 보조금지불제도를 폐기하고 상호인정의 원칙과 제도적 조화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에 기반을 둔 공동산업정책을 통해 지역, 산업, 기업 간의 경쟁환경을 조성하고 동시에 관련당사자간의 협력을 조장함으로써 세계적 차원에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유럽의 시장통합은 실질적으로 유럽의 산업과 기업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기업에게 기회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 하나의 도전이 되고 있다. 그 영향에는 소속된 산업과 추구하는 전략

* 이 논문은 1993년도 교육부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및 국제화 정도 등에 따라 차이가 나며, 유형별로는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유럽지역에 이미 초국가적으로 활동하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기업들이 시장단일화를 통한 경쟁심화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며 주로 합리화와 주력사업의 전문화 등을 통한 구조조정과 생산성 향상에의 노력, 기존시장의 확보 및 신시장개척, 그리고 인수·합병 및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역내 및 역외간의 협력강화 등을 통해 변화된 시장환경에 보다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I. 서 론

20세기가 정치와 혁명의 세기라고 한다면 유럽대륙에서의 20세기는 전쟁의 세기인 동시에 제도창조의 세기라고 하겠다. 2차대전 직후 유럽대륙은 전면적인 파괴, 절망, 무질서 그리고 증오심과 복수심 등으로 점철되었다. 그 당시 유럽인들은 새로운 제도, 새로운 질서 및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지 않고는 유럽의 실체를 되찾지 못할 것으로 생각하였다. 이렇게 유럽을 재건하겠다는 의지는 유럽경제공동체의 건설로 시작되었다. 이것은 유럽을 단순히 과거에로 회귀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힘과 단결을 가져올 통합운동으로 전개하겠다는 장기적인 정치적 통합구상에 근거한 것이었다. 물론 유럽의 통합운동은 200여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전후 1950년 5월 9일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이 선언한 이른바 슈망선언을 기점으로 하여 본격적인 유럽통합운동은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본 논문의 전체적인 구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제2장에서는 유럽통합의 정치적 측면을 다루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체결과 함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유럽을 통합하는데 있어서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이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으로 이어져 왔으며, 한때는 전자의 경향이 강하게 미쳤고, 다른 한때는 후자의 영향이 강하게 미치기도 하였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럽공동체의 통합은 정치·경제적 통합의 이원성을 띠고 있다.

통합의 모델에 있어서 대체로 연방주의(federalism), 국가연합(confederalism), 조국으로 구성되는 유럽(Europe of states) 또는 단순히 결합을 상정하는 연합(union) 등 3가지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한편으로 통합모델에서 일어난 회원국들의 주권·통치권과 초국가주의 내지 초국가적 제도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진전되어 왔는지를 고찰하였다. 이러한 통합운동에 대한 유럽의 보수주의파와 국수주의파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지를 함께 설명하였다. 결국 유럽의 통합모델을 분석하면서 EU의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은 연방적 기술(federal technique)을 적용하는 데서 그 실현성을 찾아보았다.

둘째, 제3장에서는 주로 통상정책을 취급하였다. EEC부터 중요시되었던 공동통상정책이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고 있으며, 그것이 관세동맹을 거쳐서 공동역외관세를 성취

하였고, 최근에 와서 자유무역주의를 내세우면서 경제금융통합을 지향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또한 유럽단일의정서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서 공동시장의 수준을 넘어서 경제금융동맹 단계에 접어들어 가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즉 이 단계에서 재정, 금융,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책이 통일과 조화를 이루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분석하였다. 끝으로 EU의 대외무역정책은 EEA의 발효, 독일의 통일 그리고 UR의 종결과 WTO의 신무역체제로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주의가 불가피하게 지배하게 되었지만, 한편으로 보호무역주의의 대립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통상정책에 있어서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종전의 EC는 EU체제로 전환되었지만 통상정책상 중앙집권적 경향을 보일 것이며,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가 반드시 무역자유화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견해를 밝혔다.

셋째, 제4장은 EU의 산업정책의 재편에 대한 연구내용이다. 여기에서는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함께 EU의 신정책 분석에 초점을 두었다. EU가 기본적으로 로마조약의 산업정책을 이어 받아서 유럽단일의정서의 영향을 받아 크게 발전할 수 있었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공공개입의 중앙집중화 모델에서 제규칙을 세우고 제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이러한 기능은 상호인정의 원칙과 제도적 조화의 원칙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았다. 동시에 첨단산업의 조정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경쟁도를 증진시키는 유럽기술표준화를 위한 골격을 제공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지역적 환경과 제도적 환경에 기반한 유럽 지역 간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고 개량된 구조자금은 불리한 지역을 도우려는 EU의 신산업정책으로 파악하였다. 즉 EU의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에 최대의 목적을 두고, 이 목적을 위해 개방적이고 경쟁적인 시장체제를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같은 정책은 연합체 차원에서 추구되는 획기적인 것으로 평가하였다.

집행위원회에서 채택된 새로운 정책은 과거의 산업정책을 폐기하고 생산과 서비스관계의 지역 네트워크를 재강화시켜 내생적인 시장의 힘을 자극시키기 위하여 계속적인 구조적 조정을 할 것으로 전망하였다.

끝으로 제5장에서 EU의 시장통합에 따른 EU기업문제를 다루었다. 1993년 1월 1일을 기하여 EU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출범시키는 동시에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경제적 환경을 창조하고 있다고 전제하였다. 이 과정에서 시장통합은 무엇보다 생산요소의 자유이동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있다고 보았다. 한편으로 시장통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8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특히 유럽기업은 80년대에 와서 통합과 인수현황을 두드러지게 보여 왔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동시에 유럽기업은 글로벌화(globalization) 과정에 있어서 전략적 제휴에 역점을 두고 있는

데, 이는 EU기업의 중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다고 보았다.

EU의 통합에 관련된 문제들을 정치적 연구방법과 경제·산업·통상·기업연구를 종합적으로 시도한 것은 국내에서 처음 있는 일로써 그 의미가 있으며, 더욱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비중을 두면서 연구를 전개하였는데 그 중요성이 있다고 하겠다. 특히 본 연구는 정치·경제·통상 및 기업 등 다학문적 연구를 통해 EU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기여하고자 하였다.

II. 유럽의 정치적 통합 가능성과 그 전망

1. 정치·경제적 통합의 이원성

44년간에 걸쳐 진행되어온 유럽공동체의 통합은 어느 한 영역에서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치, 경제금융, 사회, 통상, 산업기술 및 노동시장 등 다방면에서 유럽의 통합을 추구하는 것이다. 실제로 다원적 통합이 장기간에 걸쳐 진행되는 과정에서 낙관론과 비관론이 교차하여 왔지만 지금까지 대체로 전자가 지배적인 영향을 미쳐왔다.

제1절에서는 슈망선언에서 시작하여 유럽연합(European Union)에 국한하여 통합운동의 정치·경제적 다이나믹스를 고찰하면서 통합모델의 분석에 집중하기로 한다. 동시에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이 어떠한 통합모델에 의해 발전할 것인가를 예측하고자 한다.

유럽의 통합은 제2차 대전 직후 유럽의 재건을 통해서 경제적 번영, 평화 그리고 안보를 모색하면서 출발하였다. 이러한 목표들은 단순히 국가와 국가간의 협력만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실적으로 두가지의 접근방법, 즉 정치·경제적 통합방식을 추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방식은 경제적 방식이나 정치적 방식 중 어느 하나에 치우쳤던 일원주의적 방식이 아니다. 이같은 유럽통합은 한 나라의 힘에 의한 다른 나라의 지배 또는 제3국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접한 국가들 간의 적극적인 평화공존을 하는 가운데서 더 큰 정치적·경제적 협력을 유도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의식에서 연유한 것이다. 만일 유럽대륙에서 제2차 대전 직후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희망이 없는 대륙, 시체로 뒤덮인 회복이 불가능한 땅이 되었을지도 모른다. 동시에 유럽대륙은 알타체제가 가져온 냉전적 구조 속으로 들어가 두개의 대륙으로 분할되었다.

서유럽인들은 냉전적 질서 속에서 평화공존의 틀을 마련해야 했으며, 그 틀 속에서 경제성장을 이루어서 경제적 번영, 평화 그리고 안보를 재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한 과제로 떠올랐다.

40여년 동안 어느 특정한 독트린이나 이념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 진행하여 온 정치·경제적 통합은 회원국들의 정치·경제금융의 주권을 다양한 제도에 이전하였다는 의미에서 초국가적인 기구로 발전하였고, 다른 회원국 정부간에 의존하면서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나가는 과정에서 협력을 극대화하였다. 이것은 각 정부의 주권과 통치권을 상당한 정도로 중앙에 이전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이러한 통합의 모델은 그것이 연방적 모델(federal model)이든, 국가연합 모델(confederal model)이든, 또는 단순한 연합(union)이든, 또는 국가들로 구성되는 유럽(Europe of states)이든 인간의 공동체 형성에 귀중한 경험을 남겨 주었다.

이러한 유럽통합 과정을 “불확실성”과 “끈기”(라종일, 1993: 2)로 그 특징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럽통합은 단순히 불확실성만도 아니고 일과성의 과정(Spinelli, 1972: 68)만도 아니라는 것이 그 통합 과정에서 나타났다. 통합을 추구하는 데 있어서 때로는 희망과 좌절, 예기치 못했던 발전과 이와는 반대로 정체로 연결되면서 전개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 유럽통합의 이원성의 기원은 무엇인가? 이는 무엇보다도 유럽석탄철강공동체(ECSC)의 형성에서 기인한다고 하겠다. 모네(Jean Monnet)가 구상하여 당시 프랑스 외무장관 슈망(Robert Schuman)에게 전달함으로써 형성된 이 기구는 두 가지의 전략적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다. 전략물자인 석탄과 철강을 최고기구로 하여금 공동으로 생산하고 공동으로 관리한다면 불·독간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없게 만들 것이며 여기서 평화가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그들은 전략물자를 공동체 회원국들 간의 공정한 거래를 바탕으로 하고 관세 및 수량제한을 철폐하는 것을 비롯하여 생산, 거래, 가격 및 기타조건 등에서 공평하게 관리하게 한다면 공동경제의 발전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믿었다. 결국 1952년 파리조약에 의거하여 탄생된 석탄철강공동체는 유럽공동시장을 위한 일련의 규약과 제도를 수립하는데 모태가 되었다. 이것은 당시 6개국간의 자유경쟁을 불러일으키는 데 크게 자극이 되었다(허만, 1991: 6).

슈망선언과 함께 유럽건설은 결정적인 추진력을 받았다. 분야별 통합방법이 최선의 방법인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석탄철강공동체 이후 전문화된 분야들, 즉 수송, 농업 또는 철강 등 전문분야에 대한 공동계획들이 추진되고 있었다. 이러한 공동계획들의 추진이 다른 경제 분야에까지 확대되는 초기적 통합이 논의되기 시작하였다.

당시 장 모네의 실용적인 유럽건설의 이념과 함께 유럽의 지도자들은 무엇보다 이러한 경제적 통합을 가속화하려고 하였다. 이같은 운동은 정치적 통합의 일환으로써 유럽방위공동체(Communauté Européenne de Défense)를 건설하려는 방향으로 전환되었다.

미국이 서독을 재무장시키고자 하는 한편 프랑스는 자신을 포함하는 6개 회원국간의 방위공동체를 구성함으로써 독일이 재무장되는 것을 예방하고 동시에 유럽의 평화를 독자적으로 유지할 능력을 배양하고자 하였다. 그래서 유럽군대를 구성하는 것은 하나의 정치적 권위(une Autorité Politique)를 통해서 통제하는 것이 필요했으며, 이러한 분위기는 6개국간에 유럽연방운동(*le mouvement vers la fédération*)을 논의하도록 유도하였다. 동시에 유럽통합을 통제할 정치적 권위가 필요했는데 그것은 보통선거로 구성된 유럽의회(une Assemblé Européenne)를 의미하였다(Gerbet, 1983). 이와 같은 계획들 내지 구상은 경제적 통합을 가속시키기 위한 동력을 갖추기 위한 방법들 중의 하나였다. 당시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방위공동체를 단지 소련에 대항하려고 하는 대항 기구로 보지 않고 국제 데탕트를 유도하여 유럽의 평화를 심으려 한 것이며, 긍정적으로 유럽적인 실체를 재건하고 국제정치에서 유럽의 역할을 담당하려는 구상이었다. 더욱이 유럽방위공동체의 구성은 1950년 6월 25일 한국전쟁의 발발에 자극을 받았다. 한편 북대서양 조약기구는 겨우 1년전에 체결되었던 때이었다. 당시로서는 서유럽의 방위문제는 아직은 초기단계에 머물렀었다.

프랑스는 미국이 주장하는 서독의 재무장 논의를 상쇄시키기 위하여 본격적으로 유럽방위공동체를 제기하였다. 2년여의 협상 끝에 1952년 5월 27일 파리에서 애치슨 미국외상과 영국외상 이든이 지켜보는 가운데 유럽방위공동체가 6개국간에 체결되었다. 그러나 아이러니컬하게도 당시 망데스 프랑스(Pierre Mendes France)정부가 이 문제에 냉담하였기 때문에 부결되고 말았다(Zorgibes, 1993). 만일 유럽방위공동체가 가동되었다라면 정치적 통합을 가속시킬 수 있었을 것이며 이는 유럽공동체의 결속을 더 빨리 가져올 수 있었을 것이다. 아마도 이러한 통합과정은 유럽공동체를 연방적 구조에 더 깊이 끌어들여 놓았을지도 모른다.

유럽방위공동체가 4년간의 협상 끝에 좌절됨에 따라 초기 정치적 통합의 기회가 봉괴되었다. 이 좌절은 다시 연방주의자들을 크게 실망케 하였다. 그리하여 유럽의 지도자들은 정치적 접근보다는 기능주의적 접근에 더 의존하는 경향을 보였다.

베네룩스 3국은 화란정부의 제의로 회의를 갖고 유럽경제공동체를 결성할 것을 논의하였다. 여기에서 합의한 문서를 베네룩스 메모렌덤이라고 부르는데, 그 요지는 첫째로 유럽의 정치적 통합은 무엇보다도 경제적 통합을 선행시키고 뒤따라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둘째로 이러한 의미에서 경제공동체를 조속히 결성하여야 한다라는 두 가지의 내용이다.

유럽경제공동체(European Economic Community)의 기본법인 로마조약은 “공동시장 형성과 회원국 경제정책의 점진적인 통합·조정으로 경제의 균형있는 발전과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라고 선언하고 있으므로 경제적 통합을 먼저 완성시킨다면 회

원국간에 더욱 풍요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며, 더욱 안정된 환경을 가져올 수 있다는 의미가 내포된 것이다. 이러한 접근을 경제적 통합의 우선론이라고 부를 수 있다.

공동시장의 주요 목적은 첫째 상품의 자유이동, 둘째 사람의 자유이동, 셋째 서비스의 자유이동, 넷째 자본의 자유이동 등 네 가지로 되어 있다. 여기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상품의 자유이동이며, 나머지 3요소는 상품 이동의 자유를 겨냥한 공동시장의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보충적인 요소들이다.

유럽의 지도자들은 공동시장을 완성하기 위하여 상품이동에 있어서 12년의 준비 기간을 정하였으나 이를 앞당겨 완성하였다. 이 과정에서 공동시장, 역내 관세의 철폐와 역외 관세율의 통일을 기하는 관세동맹(customs union)을 완성하였다. 그리하여 회원국간에는 무관세, 그리고 제3국 상품수입에 대하여는 동일한 관세율을 적용하기 시작하였다. 회원국간에 관세 제거뿐만 아니라 그들간의 공동관세율을 수립하여 수량제한을 철폐하기로 하였다. 그들은 유럽공동체를 12년의 준비기간을 1년 6개월 앞당겨 68년 7월 1일자로 관세동맹은 물론 앞에서 열거한 4가지 목표 중에서 3가지 목표를 달성함으로서 경제공동체를 건설하여 왔다. 경제공동체의 핵심적인 부분은 자유경쟁을 바탕으로 한 공동시장임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Zorgbibles, 1993).

공동시장을 건설하는 데 유리한 환경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특히 베네룩스의 국가들이 전면적인 경제적 통합을 지지하고 나섰고, 이태리는 이에 동참했으나 프랑스와 서독의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어려운 과정을 들파해야 했었다. 스파크(le Comité Spaak) 위원은 1956년 4월 23일 결정적인 노력을 기울였고, 1957년 2월 16일-19일 파리회담에서 6개국간의 합의를 이루어내서 “공동체 전체의 경제활동의 조화로운 발전, 지속적이고 균형있는 팽창, 더 큰 안정, 정치의 발전된 수준 그리고 회원국들을 결합하는 더 밀접한 관계를 촉진하는데 합의했다(Zorgbibles, 1993).”

유럽경제공동체에 주동력을 제공하는 공동시장은 이러한 과정을 거쳐 탄생되었다. 공동체의 제도의 성격과 역할에 대한 회원국들의 견해 차이가 심하여 공동체의 위기가 1966년 말까지 지속했고, 특히 각국의 농업정책의 마찰로 인해서 한때 위기가 심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들은 협상과 조정에 의존하는 신기능주의적 접근을 적용하여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였고, 동시에 1970년대의 유럽경제의 위기도 극복했다. 만일 유럽에서 공동시장이 작동하지 않았더라면 70년대의 유럽의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경제적 통합을 통한 유럽경제공동체의 건설은 이미 좌절되었을지도 모른다.

지도자들은 경제공동체를 단순히 경제적 공동체로 발전시키려고 하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1967년을 기해서 유럽석탄철강공동체, 유럽경제공동체 및 원자력 공동체 등

3개 공동체를 통합시켰다. 이것은 파리조약, 로마조약과 EAEC가 하나로 통합된 것은 아니었다. 이 3개의 기본조약은 여전히 유효하였으며, 기본조약에 중복해서 실지 운용되고 있던 공동체 집행위원회(Commission)와 이사회(Council)의 단일화, 그 중에서도 특히 집행위원회의 통합과 조직개편을 한 것이다.

유럽의 정치가들이 기능적 접근을 적용하여 공동체를 단일화하는데 성공을 거둔 것은 특유한 테크닉으로서 바로 정치·경제적 통합의 이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당시 프랑스의 외상 푸쉐(Christain Fouchet)는 유럽인들의 연합(*l'union des peuples européens*)을 지향하는 유럽공동체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그의 구상은 1960년 5월 31일 파리 동서 회담이 실패로 돌아간 후 드골 대통령의 구상에 근거한 것이다. 드골 구상은 유럽연합(*la conception de fédération européenne*)이라는 더 고전적인 정치적 협력의 개념을 빌드시키고자 하였다. 어떠한 측면에서 볼 때 그의 유럽통합론은 기능적·기계적 비전(*vision fonctionnelle et mechanist unifiée*)에서 일탈하려고 했던 것이다.

1961년 푸쉐가 제출한 첫 안은 통일적 외교정책(*une politique étrangère*)과 기존 유럽공동체들 내에서 중앙집중적 기구(*une organisation centralisant*)를 점진적으로 활성하기 위해 국가들의 연합(*l'Union d'Etats*)를 지향하는 것이다. 이러한 중앙집중화는 1953년에 정치적 유럽공동체안과 유럽방위공동체에서 등장했던 것이다. 실질적으로 이러한 기구에 근거한 유럽공동체의 건설이란 연방적 내지 초국가적 성격을 지닌 것이다(Zorgbibes, 1993). 그후 1961년 12월 4일 제2차 푸쉐안이 프랑스 정부를 통해서 제출되었다. 제1차 안과 유사한 것이라는 비난이 일어나는 가운데서 회원국들, 특히 벨기에와 화란의 반대에 직면했다. 1962년 1월 18일 푸쉐는 제3안을 제출했다. 기대했었던 수정없이 제16조의 수정이 있었을 뿐이다. 그 요지는 “회원국간의 협력의 다양한 방식을 단순화하고, 합리화시키고 또한 조정하는 것이다.”(Zorgbibes, 1993)라는 정도의 주장이었다. 그렇지만 푸쉐의 발상은 연방적 발상과 크게 크게 다를 바가 없었기 때문에 좌절되었다.

영·불간의 주도권 싸움이 일어나면서 유럽통합운동이 진전을 보지 못했다. 프랑스는 푸쉐안으로서 통합의 주도권을 취하려 했으나 패러독스하게도 실패하고 회원국간의 공동농업정책이 조절되지 않는 이유 등으로 1963년에 이르러 저조한 통합단계로 접어들어갔다. 특히 드골이 행사한 국수주의적 태도로 인해 공동체는 1972년까지 딜레마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드골은 미국의 NATO정책에 저항함으로써 대서양주의를 경계하고 있었다. 이러한 딜레마 가운데서 화란은 영국을 공동체에 가입시켜서 불·독의 영향력을 견제하면서 공동체의 건설을 시도하였다. 한편 아덴아워 수상은 영국이 아니라 드골과의 협력을 통해서 공동체의 건설에 공헌하려고 했었다(허만, 1991). 그러나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이러한 딜레마적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정치적 협력의지

를 공고히 하려고 노력했다. 그래서 그들은 1969년 헤이그 정상회담을 개최하여 공동체의 건설을 앞당기기 위한 정치적 협의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정상회담 개최에 이니시에티브를 취한 프랑스의 풍미두 대통령은 영국을 공동체의 협력자로서 가입시키면서 공동체 건설에 무엇보다 제활력도를 넣어야 한다고 믿었다(Zorgbribes, 1993). 그래서 그는 영국 가입에 대한 거부권을 제거하는 유화정책을 취하였다. 그리고 정상회담에서 3대 원칙을 실천하도록 합의를 끌어내었다. 즉 첫째, 공동체 건설의 잠정기에서 결정적 단계로 속히 이전해야 한다. 이것이 공동체 관심사의 최우선 과제이다. 이 정신은 공동체를 완성(achever)하자는 것이다. 둘째, 새로운 공동정책을 기술, 과학에너지, 수송, 사회권한 및 금융제정정책에 팔목할 발전을 기하는 새로운 공동정책을 발동시킴으로서 공동체에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어야 한다. 이것은 공동체 생명을 심화(approndir)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공동체의 지도자들은 영국을 비롯한 새로운 국가들에 문호를 개방시켜 공동체를 확대(élargir)하는 것이다.

헤이그 정상들은 프랑스가 강하게 지지하고 있었던 농업재정에 관한 규칙을 체결하였고, 공동체와 긴밀한 협력을 취하면서 70년대의 제정책을 입안하기로 했으며, 동시에 공동체 조약들과 정치적 목표를 수락하는 후보국들은 가입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정치적 위상을 확대하는 정치적 통합기반을 놓았다. 특히 회원국들간에 풀기가 어려웠던 공동농업정책을 완전히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정치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서 가능했다.

1971년 10월 19일 파리에서 최초로 9개국으로 확대된 확대공동체의 정상들이 모여서 중요한 실천 프로그램을 제시하였다. 즉, 경제금융통합의 원칙, 저개발국에 대한 재정적 지원, 사회 파트너들의 경제·사회적 결정들에의 확대 참여, 농업정책, 과학기술, 환경 및 에너지에 있어서의 공동체 차원의 실천의 장을 확대할 의지를 확인하는 한편, 제3세계, 미국 및 사회주의 국가들에 대한 전반적인 유럽정책을 준비하였다(Zorgbribes, 1993).

확대정상회담에서 합의된 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1980년대에 조약의 정신에 따라서 회원국간의 관계를 유럽연합(une Union Européenne)으로 변화·발전시키는 것이다. 연방론 또는 통합론을 반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이러한 합의 사항이 혹시나 초국가성(supranationalité)를 불러오지 않을까 걱정하였다. 1971년 1월 12일 풍미두 대통령은 “이러한 논쟁은 의의가 없을 것이다. 만일 유럽의 국가연합(confédération européenne)이 실현된다 하더라도 결정들이 모든 회원국들에게 부여되는 통치행위(un gouvernement)가 계속 존재해야 할 것이다. 중대한 결정들은 만장일치로써만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의 사법적 규칙보다는 정치적 사실(evidence politique)이 더 중요시 될 것이다(Zorgbribes, 1993).”

한편 구서독의 브란트 수상은 유럽연합(l'Union européenne)을 기능적 연방주의(*fé déralisme fonctionnel*)의 기초로서 해석했다. 그러면서 그는 1973년 11월 13일 유럽의 회에서 “연방공화국은 유럽연합을 자기의 조국으로 삼는다. 지난 날의 민족국가는 과거의 생명력 없는 국가행위이다. 그것이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없을 것이다. 유럽연합을 초국가적 혁명 또는 국경선의 변경에서도 탄생되지 않을 것이지만 그러나 경제금융의 통합(l'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 그리고 사회적 통합(l'union sociale) 및 정치적 통합(l'union politique)을 위한 기능적 노력의 증대에서 탄생할 것이다 (Zorgibes, 1993).”라고 선언한 바 있다.

70년대에 세계경제가 악화되었고, 두번에 걸친 산유국의 유가상승조정과 동시에 세계적 보호무역주의로 인해서 유럽의 경제가 오랫동안 침체에 빠졌다. 작크 들러르는 이러한 경기침체를 극복하기 위하여 유럽공동체가 크고 작은 희생을 감수하면서 결속하여 함께 나아간다면 하나가 된 국가건설, 하나의 유럽건설은 훌륭하게 실현될 것으로 확인하면서, 유럽공동체의 건설이 민족국가의 종말로 이어지는 것은 결코 아니고, 민족국가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을 존중하면서 유럽의 이념을 추구하는 것이며, 공동체가 추구하는 공공사업에서 최대한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신념을 제시하여 왔다(Delors, 1992).

이같은 경제적·사회적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유럽공동체 자체는 80년대부터 공동체를 과거보다 더욱 강화시키기 위한 노력을 하였다. 공동체 회원국간의 경제·통상상의 불균형을 경험하면서도 80년대에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을 영입하여 공동체를 확대하는 한편, 그들의 산업구조를 경쟁시킬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을 하였다. 물론 이들의 가입이전에 경제·통상상의 불균형으로 인해서 장기간의 경파조치를 경험해야 했었다(Kalaydjian, 1989). 즉 후보국들의 조건을 심사하고 선정하는 문제, 경제적으로 선진회원국들과 후진회원국들 간의 경제·통상 정책의 조정을 강력하게 하였다. 이러한 목표 가운데서 그들은 1957년의 로마조약에 서명한 회원국들이 진정한 공동시장을 창출할 것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인식하게 되었다.

유럽공동체의 지도자들은 공동체 건설에 대한 다양한 도전을 극복하려고 1985년 백서를 발행했다. 이는 행동을 위한 시간표의 일종이기도 하다. 이 백서는 매우 포괄적인 프로그램을 담은 것으로 통합적이면서도 견고한 경제기반을 점진적으로 창출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는 단지 어떤 특정한 회원국만을 유리하게 하는 경제 영역만을 해결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 회원국이 수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제안(minimal proposal)들에 집중하고 있다. 따라서 국경 통제를 정당화시키고 시장의 자유 기능을 억제시키는 모든 물리적·기술적·재정적 장벽들을 제거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으며 이러한 장벽을 제거하기 위한 300여건의 제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들은 이렇게 함으

로써 국경없는 진정한 유럽과 모든 면에서 진정한 공동시장을 완성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다(Documentation, 1989).

브르셀의 집행위원회와 함께 유럽공동체 회원들의 지도자들은 위에서 언급된 목표들을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하여 로마조약이 체결된 이래 처음으로 이 조약을 비수정·발전시키기 위한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를 1987년에 통과시켰다. 즉 유럽공동체의 경제적 침체를 극복하고 통상을 국경없이 이룩할 수 있도록 기술, 환경, 에너지 분야에 더 폭넓은 협력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도 정치적 접근방법이 계속 필요 했던 것이다. 만일 정치적 접근이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못했다라면 각국의 이해관계의 상충이 경제통상의 이기주의를 조절할 수 있는 방향에서 심화·발전시킬 수 있는 동력인 유럽단일의정서의 창출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이 의정서는 정치적 접근에서 그 탄생이 가능하였다고 본다.

1987년에 채택된 단일의정서는 역시 로마조약을 수정한 중요한 이정표임에 틀림없다. 그래서 그 의정서는 역내시장의 설립과 그 기능에 관한 몇 가지 조항들에 관하여 만장일치제를 특정과반수로 대체하도록 결정하였다. 과거의 만장일치제는 어떠한 결정도 내릴 수 없게 만들었다. 이로 인해 공동체 건설의 속도는 이완되었던 것이 사실이다(Documentation, 1989).

유럽단일의정서의 다른 주요한 측면은 절차가 적용되는 분야와의 관계에서 공동체의 입법절차에 대한 더 큰 입력을 유럽의회에 이관하는 새로운 협력절차(cooperation procedure)이다. 이 절차는 제안들에 대한 제1차와 제2차 독회를 함으로써 집행위원회와 이사회 그리고 유럽의회간의 보다 더 긴밀한 연관성을 요구하고 있다(ibid., 1989). 협력절차의 작동을 위해 수립된 이사회에서의 새로운 특정 과반수 투표원칙과 프로그램들은 관련제도들에 의해서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도록 자극해 왔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지만 이 협력절차가 모두 입법행위를 채택하지 못하였다. 그래서 공동체 지도자들은 자주 정상회담 내지 이사회를 통해서 정치적 접근을 사용하여 문제를 해결하여 왔다.

마지막으로 유럽단일의정서의 중요한 목표를 지적한다면 1992년까지 진정한 단일시장을 성취하기 위한 정치적·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한편으로 공동체의 심화·발전을 위한 도구로서 유럽 외교정책을 공동으로 수립하여 실현하기 위한 정치적 협력인 것이다(La Documentation fransaise, 1993). 요컨대 유럽단일의정서의 채택은 법률·제도적 발전과 함께 정치적 통합의 의지를 명시한 것이라고 하겠다.

2. 마스트리히트 조약과 통합운동의 지속

1992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로마 조약의 정신 그리고 유럽단일의 정서의

주요 목표들을 차질없이 실현함으로써 금세기 안에 유럽공동체의 경제·정치적 통합을 완성하려는 구체적이면서도 야망적인 규약이라고 하겠다.

프랑스의 미페랑 대통령은 1991년 11월 9일 유럽 이사회에서 “마스트리트조약은 반세기 중에 존재했던 가장 중요한 사건들 중의 하나다. 12개국의 정치적 활동의 가장 중요한 분야에 있어서 함께 행동해야 할 하나의 공동체에 그들을 묶어주는 베팀벽이 된다. 이것은 이제 불가역성의 일이다(Zorgbibles, 1993).”라고 지적하였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전체를 들여다볼 때 이는 두 분야, 즉 금융통합(Union monétaire)과 정치적 연합(Union politique)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단일시장의 특수성이 환율의 불확실성과 수송의 비용을 정확히 제거하지 않고서 완성될 수 없다는 것이다. 1997년 내지, 늦어도 1999년까지 단일 화폐를 채택하도록 유럽단일의정서의 서명 이후 중앙은행들의 의장의 공동작업이 작크 둘러르의 의장직 하에 구성되었다(Doutriaux, 1992). 다른 한편으로 1990년 갑작스럽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소련·동구권이 붕괴되면서 독일이 예상보다 더 빨리 통일이 되었다. 서유럽에서 이러한 현상의 변화에 대처해야 할 현실적인 인식이 대두되었다. 즉 유럽공동체를 더욱 빨리 경제적 통합으로 이끌어, 서유럽의 번영과 평화와 안보를 확보하는 것이 시급해졌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는 콜 수상으로 하여금 유럽통합이 통일 독일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게 하였기 때문에 그는 불·독협력을 제안하게 되었다(Zorgbibles, 1993). 유럽 현상의 돌발적인 변화는 유럽의 지도자들에게 완만한 경제적 통합에다 동적인 정치적 통합의 힘을 불어넣어야 하겠다는 의지를 더욱 북돋아 주었다고 본다. 즉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통해서 유럽 지도자들이 역시 이원적 통합을 적용하고 있다고 하겠다. 그러한 이원적 통합은 다음과 같은 조약 내용에서 나타난다 (Doutriaux, 1992: 83ff.).

첫째, 그들은 공동체의 경험을 발전시키면서 계속적인 단계를 밟으면서 발전한다는 것이다. 조약에 의하여 수립된 협력의 정책과 형태를 수정할 것인가를 정부간의 협상을 통해서 결정한다는 조항이 있다(조약의 공동규약의 B). 1986년에 조약의 효율성을 촉진하기 위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개정을 시작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둘째, 유럽시민권을 규정하고 있다. 공동체의 시민들의 투표권을 행사하는 양식을 1993년 12월 31일전까지(유럽선거)와 1994년 12월 31일(시 선거전까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셋째, 경제·사회적 결속을 언급하는 조항이 있다. 결속을 가속화시킬 기금이 1993년 12월 31일 전까지 창설될 것이다.

넷째, 유럽의회의 합동결정권의 장을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늦어도 1996년 또는 지금부터 1996년 예전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개정하는 범위에서 집행위원회가 이사회

에 제출하는 보고서에 따라서 확대될 것이다.

다섯째, 위원회의 숫자와 유럽의회 의원의 숫자가 1992년 말에 검토될 것이다.

여섯째, 공동체의 법령의 분류는 1996년의 개정회의에서 검토될 것이다.

일곱째, 공동안보와 국방정책을 규정하고 있다. 조약은 브르셀 조약의 제12조 범위에서 1998년 만기를 참작하여 1996년의 회담에서 수정될 수 있다. 이 회담에서 공동정책과 안보에 관련된 전반적인 조항들이 검토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법무와 내무분야에 대한 협력에 관한 규정이다. “공동체의 다리 (passerelle communautaire)”라고 불리는 이 조항은 이사회가 법무분야와 내무분야에 있어서의 협력에 관하여 취급된 문제들에 대해서 공동체적인 방법을 적용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만일 이 협력을 확대할 수 있는지를 1994년 말에 가서 *Europol*이란 범주 내에서 검토할 수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중요한 내용을 검토하였는데 이는 유럽의 지도자들이 –연방주의자들이든, 국가연합주의자들이든– 각 회원들의 성격과 이해관계를 존중하는 동시에 다양한 절차와 다양한 방법을 사용하면서 앞으로 공동체의 통합을 심화·확대시키려고 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특히 공동체의 통합은 하나의 조약문서에 의거하여 최소한 통합(minimalist integration)에 이르려는 것이 아니라 다양성과 유연성을 통해서 최대한의 통합(maximalist integration)에 도달하려고 한다. 그래서 이 통합운동은 정적인 운동이 아니라 어떠한 면에서 확실성과 불확실성의 확률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꾸준하게 전진해온 동적인 운동인 것이다.

다음으로 유럽연합을 지향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회원국들에게 부여하는 공통적 목표들은 무엇인가? 그들이 끈질긴 정치적 협상과 설득을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목표는 다음 다섯 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Doutriaux, 1993: 86-89).

첫째, 무엇보다 그들은 경제의 강화와 수렵의 강화를 목표로 삼는다. 이것 역시 새로운 것이 아니다. 이 목표는 이미 1957년 로마조약에서 “회원국들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developement harmonieux des economies des Etats-membres)”을 언급한 전문에 나타나 있다. 수렵의 개념은 EU에 관한 언급에서 경제·금융정책과 직결된다.

둘째, 공동체 국민들의 결속(*la solidarite entre les peuples*)을 지향하는 목표이다. 이는 곧 유럽 국민들 간의 결속을 심화하고, 사회적 발전(*le progrès social*)을 촉진하고, 응집력을 더욱 강화하고자 하는 것과 연결된다.

셋째, 유럽과 세계의 평화와 안보 및 발전을 촉진시키는 목표이다. 이 목표 역시 이미 유럽단일의정서와 유럽정치적 협력의 문서에서 언급되었다. 이 목표를 실현하는 도구는 공동외교정책과 안보이다. 이 도구는 새롭게 언급된 것이다. 공동외교정책과 방위정책은 적절한 시기에 공동방위로 연결되어 발전되어 나갈 것 같다.

넷째, EU에 속하는 공동시민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것은 회원국 시민들의 권리와 이해관계를 보호해 주며 강화시키는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다.

다섯째, 유럽국민들의 안정(*la sûreté*)과 안보(*la sécurité*)의 목표이다. 이 공동 목표는 완전하고 새로운 개념으로 1992년 12월 31일을 기하여 국경없는 지역에서 사람의 자유이동에서 자동적으로 얻어지는 것으로 본다. 역내 국경이 없는 공간을 설립하는 것은 그것이 국내 사법과 내정에 대한 새로운 조항들과 조화가 되지 않을 경우에 안정과 안보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을 것이다(조약의 Title VI). 즉 범죄에 대한 투쟁, 마약에 대한 투쟁, 불법이민에 대한 대처 등은 국경없는 유럽이 번영하기 위해서 회원국들 간에 더욱 긴밀한 협력을 요구하는 것이다.

EU는 지속적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도 위에서 언급된 목표들을 성취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면 EU는 어떠한 방법 내지 도구로서 이들 목표를 성취하려고 하는가? 다양한 제도와 방법들이 있겠지만 연합은 무엇보다도 보충성의 원칙(*le principe de subsidiarité*)에 크게 의존하려고 하는 것 같다. 이 보충성의 원칙은 법적·제도적 접근방식보다는 그 성격상 정치적 기술을 요구하는 방식이라고 하겠다. 로마 조약의 첫 전문에서 “제결정이 보충성의 원칙에 따라서 시민들의 의사에 가장 접근하여 이루어지다”라는 표현이 있듯이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회원국간에 절대적으로 중요한 이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조정하고 보장하려는 개념이다.

두트리오(Yves Doutriaux)는 이 원칙으로써 불가역성의 과정, 즉 공동정책들의 지속적 발전, “공동체의 경험” 그리고 다른 협력의 형태(외교정책, 내무와 법무에 대한 협력)를 내포하는 “끊임없는, 더욱 긴밀한 연합”을 균형화시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다(Doutriaux, 1993: 88).

균형의 다른 차원에서 볼 때 보충성의 원칙은 시민과 더 접근해 있는 낮은 수준에서 보다 연합체란 수준에서 대응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이 원칙을 적용할 때 회원국들 간에는 정열적인 논쟁을 야기시킬 것 같지만, 그러한 논쟁의 과정에서 공동체는 더욱 유럽적인 유럽으로 발전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EU의 지도자들은 통합된 유럽을 건설한다고 하더라도 경직적 구조를 갖는 단일적 공동체로 발전시키고자 하지 않는다. 그들은 지금까지 발전시켜온 유럽공동체의 다양성을 더욱 발전·유지시키고자 한다. 이러한 발전이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주요한 정신이기도 하다. 이러한 목적을 실현하는데 보충성의 원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책, 합의, 타협 및 조정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 원칙은 각 회원국, 또는 지역적 권위보다는 더 유리하게 구성된 공동체가 균형있는 해결을 모색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대부분의 통합주의자와 연방주의자들은 이 원칙을

잘 적용함으로써 유럽연합이 지향하는 모든 목표를 성취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결국 그러한 진보만이 다양한 유럽을 창출할 수 있다고 믿는다.

각 회원국들 간에 첨예하게 대립하고, 조정하기 쉽지 않은 문제들, 예컨대 경제금융통합(EMU), 공동외교정책 및 안보, 장차 탄생될 유럽 연합군대, 환경보호 그리고 역내외 통상 등의 문제에 있어서 이 원칙이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단지 이 원칙은 회원국들에 의해서 제시된 목표가 효율적으로 성취되지 못하고 그 반대로 공동체의 개입으로 더 효율적으로 성취될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음으로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작크 둘리르의 해석과 신념을 소개하기로 한다. 그는 그의 저서 *신유럽의 협조*(Le Nouveau Concert Européen)에서 이 관계를 공동체의 건설과 권한의 정의 그리고 그 권한을 행사하는 양식에 있어서 이 원칙을 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원칙은 두 가지 영역에서 적용된다. 즉 한편으로 넓은 의미에서 개인적 영역과 국가적 영역의 경계에 적용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정치적 힘의 서로 다른 수준 사이에서 과제들을 분배하는데 제공된다. 전자에 대하여 그것이 자주 무시되어 왔지만 각 개인의 완성이라는 근본적인 목적과 비례하여 권한을 공권력에 귀속시키는 기준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권력의 귀속이란 개념이 우리의 사고에 현실적으로 자리잡고 있는 현상이다. 그러나 그것은 철학의 관점에서 볼 때, 정치학에서 그런 것처럼, 연방적 접근(une approche fédérale)에 자리 를 잡을 때만 비로소 의미를 갖는 것이다(Delors, 1992).

보충성의 원칙은, 그의 견해에 따른다면, 단순히 상위권력이 스스로 행동할 수 있는 개인이나 또는 집단에 대해서 개입하는 한계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개인이나 집단이 성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행동하는 의무이기도 한 것이다. 이 원칙은 집단으로 구성된 사회조직을 전제로 하고는 있지만 개인의 원자화를 전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는 변증법적 관계에 근거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가장 짜임새있는 조직의 행동이 지금까지 추구하여온 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방대한 조직보다는 더 효율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Delors, 1992). 만일 이 변증법을 유럽적 수준으로 옮겨놓을 수 있다면 스피넬리의 개념이 가장 만족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왜냐하면 스피넬리는 이 보충성의 원칙에 두가지 의미를 포함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즉 연합은 개별적으로 작용되는 각 회원국들에 의하기보다 더욱 효과적인 방법으로써 공통적으로 기획될 수 있는 과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만 행동한다는 뜻을 포함하고 있다(Delors, 1992).

보충성의 원칙은 권한의 분배라는 단순한 개념으로만 귀결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역시 독일의 각주들이 최근에 언급했듯이, 또한 공동체의 정치적 결속에 관한 10월20일의 견해에 있는 교훈에서처럼, 중앙으로 이전된 제권한을 효과적으로 행사하는데 따

르는 항구적인 구속일 수도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제권한의 일상적인 행사로 인해 국가나 지역들이 무방비 상태를 방치시킬 수 있는 권한의 남용으로 표현되어서도 안된다. 권한 부여의 원칙으로서의 보충성의 원칙은 판사에 의해서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공동으로 집결된 행동양식들이 보충성의 원칙을 침해하지 않도록 판사의 통제를 받을 수도 있는 기회균등의 정치적 결정인 것이다. 결국 이것은 집행 수준에서 추구된 제목적에 비례하여 지나친 불균형적인 규제를 피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것이다 (Delors, 1992).

그러나 보충성의 원칙은 단지 정신적 상태, 즉 어떠한 결연한 의무감으로만 존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 정신에 맞는 실체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 바로 그것이 집행위위원회가 규범의 새로운 위계에서 제시한 바이다. 이 새로운 위계는 공동의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법들을 선택하는데 있어서 국가적 권리나 지역적 권리에 행동영역을 넓혀주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Delors, 1992).

유럽의 지도자들은, 특히 연방주의자들과 통합론자들은 유럽을 통합함에 있어서 보충성의 원칙을 가장 중요시하고 있다. 이는 통합하는데 있어서 중앙, 국가 및 제지역 간에 걸쳐있는 모든 문제를 보다 높은 차원의 위계질서에 따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그 궁극적인 가치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EU는 빠르면 1997년 1월 12일부터, 가장 늦을 경우에도 1999년 1월 1일에는 유럽화폐통합의 3단계에 들어 갈 것인데, 이 때에 회원국들의 화폐가 단일화된다. 또한 유럽에 유일한 통화수단으로 통용되는 것을 의미한다. 그 단일화폐의 명칭은 ECU (European Currency Unit)가 될 것이다. 화폐통합이 이루어질 경우에 그 과정이 매우 복잡하기 때문에 이 원칙이 크게 기여할 것이고, ECU의 창출은 상당한 정도로 유럽 통합의 정치적 결속을 약속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EU의 공통정책에 이 원칙이 어느 정도 작용할 것인가에 따라서 유럽의 통합체의 강도가 좌우될 것이다. 예컨대 지금까지 각 회원국의 개별 무역정책이 주조를 이루어 왔으나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 후 공동시장정책으로 전환할 가능성이 커졌다. 동시에 보호주의보다는 자유화해야 할 필연성에 직면하고 있다. 한편 유럽공동체의 특유한 경제성장 단계로 인해서 보호주의 경향도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각 회원국간의 마찰의 소지도 상존하고 있다. 보충성의 원칙은 회원국의 이기성 또는 통상 마찰의 소지를 풀어서 균형있는 공동통상정책을 수립하여 무역을 자유화시킨다면 궁극적으로 그것이 정치적 통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균형있는 자유무역의 활성화는 EU의 번영, 평화 그리고 안보를 가져오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할 것이다. 이 통상문제는 본 논문의 2장과 3장에서 보다 본격적으로 취급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이 크게 기여하여 연합의 강도를 가져 올 수 있는 분야는 공동외교정

책과 안보이다. 소련, 동구가 붕괴됨에 따라서 유럽대륙에서도 공동의 적이 사라졌지만 새로운 환경에 대응해야 할 외교정책과 안보개념이 이 지역에 필요하게 되었다. 독일은 동서독이 통일되어 더욱 큰 힘을 가진 하나의 독일이 되었고, 동구제국은 유럽 공동체에 편입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소련 역시 이러한 의욕을 표시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 직면한 유럽공동체는 먼저 확대를 해야할 것이나 또는 심화, 완성해야 할 것인가라는 우선순위의 선택에 직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유럽중심이나 대서양중심이나를 선택해야 할 시기에 놓여있다. 즉 EU의 공동정책과 안보는 새로운 변수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새로운 환경에서 EU의 통합의 강도를 가져올 수 있고, 집행부위원회, 유럽이사회 및 유럽의회가 긴밀한 정치적 협력으로서 보다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지만 그 적용하는 방식은 역시 보충성의 원칙에 근거할 것이다. 보충성의 원칙은 새로운 환경에서 도래하는 많은 새로운 변수를 균형있게 취급하고 조화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하는 동시에 중앙적 권위에서 균형잡힌 정치적 결정을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1990년 12월부터 로마의 유럽이사회가 개최되기 직전에 프랑스 미떼랑 대통령과 서독의 콜 수상은 정치적 연합(l'Union Politique)에 관한 공통적 입장을 제시한 바 있다. 그들은 서구연합(l'Union de l'Europe occidental)과 정치적 연합이 분명한 유기적 관계를 수립하기를 희망했다. 즉 서구연합이 정치적 연합의 중요한 요소를 이루고, 정치적 연합을 위해 공동정책을 수립할 수 있기를 희망한 것이다. 이러한 노선은 한편으로 프랑스와 독일, 다른 한편으로는 영국과 이태리가 대립하고 있었던 와중에서 나왔다. 영국과 이태리는 유럽연합과 대서양 조약기구와의 관계를 중요시하기를 원했다. 이러한 견해에서 볼 때 공동외교정책과 안보가 어떻게 공동으로 수립되며 수행되어 나갈지 앞으로 유럽연합의 강도를 결정지을 근본적인 변수라고 하겠다.

정치적 연합의 미래의 제도와 관련해서 볼 때 유럽의 지도자들은 유럽이사회가 위원회의 제안과 결정에 중심적 기구가 되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다시 말하자면 새로운 환경에 직면한 EU가 정치적 연합의 실현을 유도하는 경제·금융통합을 통해서 단일화폐를 창출하는 것이 동일하게 중요시된다. 정치적 통합을 통해서만 균형있는 모두의 이익을 가져올 수 있고, 그것이 공동외교정책과 안보를 가능케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역시 경제적 통합을 전제로 한 정치적 통합을 유도하고자 하는 이원적 접근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단일화폐의 유통이 보다 용이하게 공동외교정책과 안보를 유도해 줄 것으로 예상된다.

1950년대부터 중단하지 않고 단일의정서를 거쳐서 발전하여 오늘날 탄생한 EU는 단순히 미트라니(David Mitrany)의 통합주의론과 하스(Hass)의 신기능주의를 넘어서는 정치·경제의 이원적 통합주의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며, 그 계획의 진전과정이라

고 하겠다.

3. 통합모델에 관한 견해

역사적으로 볼 때 유럽통합운동은 200여년을 넘는 기간을 갖는다. 이 장구한 기간 동안 진전과 짧은 정체가 겹치면서 통합운동이 진행하여 왔다. 그 동안 통합 모델도 다양하게 제기되어 왔고 실험되었다. 연방주의자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연방적 모델(federalism), 국가연합주의자들이 실현하고자 했던 국가연합 모델(confederalism), 범유럽주의자들이 내세웠던 범유럽연합(Pan-European Union), 이상주의자들이 외쳤던 합중국 모델(United States of Europe), 또는 민족주의자들과 국수주의자들이 몰고 가려고 했던 조국으로 구성된 통합 모델(l'Europe des Etats) 등 다양하다.

그러나 유럽통합이 50년대 초부터 진전되어 온 과정을 따라서 설명할 때, 위에서 언급한 어느 한 모델에 국한되어 진전해 왔다고 할 수 없을 정도로 통합 모델은 신축적이고 유동성과 다양성을 보여왔다. 그래서 어느 한 모델에 맞추어 설명하기도 어렵다고 하겠다. 여하튼 같은 통합운동들이 모두 이론적으로나 실질적으로나 기능주의적 접근과 신기능주의적 접근의 틀에서 발전되어 온 것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여기서는 서유럽의 통합이 진전되어 오면서 뚜렷한 특징을 나타낸 3가지 모델에 국한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이미 제2차 대전 전부터 유럽의 지도자들은 연방적 관계(lien fédéral)에 집중하였던 경향을 보였다. 프랑스의 외무성의 사무국장 레저(Alexis Leger)는 유럽의 연방적 연합(l'Union Fédérale Européenne)안을 국제연맹에 1930년 5월 1일 제출한 바 있다. 그의 연방주의 사고는 유럽 국가들로부터 많은 반대에 봉착했다. 단지 유고만이 이 제안을 지지했다. 영국은 영연방(the Commonwealth)과 특별관계를 활기시켰다. 독일은 히틀러 하에 재무장에 여념이 없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이후 다시 이러한 통합의 모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여기서 통합이란 물론 전쟁을 예방하고자 하는데 주요관심을 보였다. 그래서 유럽 국민들간의 연방적 동맹(une Union fédérale entre les peuples européennes)을 창설하는데 관심이 집중되었다. 1942년 10월 처칠은 이든(Anthony Eden) 수상에게 유럽합중국(les Etats-Unis d'Europe)에 관한 메모를 전달하였다. 다시 처칠은 1946년 9월 19일 츄리히 대학교에서 동일한 주제로 강연을 했다. 즉 그는 “유럽의 가족을 재구성하여 평화롭고, 안전하게 그리고 자유롭게 살며,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구조를 창설할 야망과 함께 유럽합중국의 건설(Zorgbubes, 1993)”을 설교했다. 그러나 제2차 대전 직후 냉전이 전개됨으로서 이러한 구상은 무산되었다.

장 모네(Jean Monnet)의 첫 구상에 근거했던 슈망선언으로 탄생된 석탄철강공동체

는 이미 연방적 발상에 근거한 것이다. 석탄 철강을 공동으로 생산·관리하는 공동최고기구의 기능이 바로 연방적인 것이다. 물론 유럽통합을 추구하여 온 과정에서 단일적이며 지배적인 통합이념은 존재하지 않았지만 그와 반대로 완전하게 오류인 것으로 판명된 이론도 존재하지 않았다. 이러한 의미에서 연방주의는 아마도 현실에서 직접적인 영향력이 가장 큰 이론, 이념, 운동 또는 과정으로 그 입지를 고수하고 있다고 본다(Burgess, 1989).

석탄철강공동체의 결성을 기초로 하여 하스(Ernst Hass)가 기능주의적 통합(integration fonctionnelle)을 발전시켰다. 그는 유럽통합의 과정에 있어서 먼저 전개된 분야가 경제분야라고 보고, 제한된 경제적 결정들이 중요한 정치적 통합보다 획득하는데 더 용이하다는데 착안하였다. 전자가 유사한 선택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다분히 이해관계의 수용에서 비롯된다는 것이다. 일단 도달된 경제적 통합이 점진적 정치화 과정을 빌어 동시킨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통합의 자동적 진전이 정치적 통합으로 연결된다는 견해를 견지한다. 유럽공동체에 나타난 위기와 함께 조성된 유럽통합의 성쇠 등으로 인해 하스는 초기의 기능주의 이론을 수정하였다(Zorgibes, 1993).

그러나 유럽통합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점진적 과정 속에서 낮은 수준에서의 통합이 높은 수준의 통합에 이르는 것이다. 이는 반드시 그렇게 정의하기는 곤란하지만 기능주의적 통합의 원리를 담고 있는 동시에 연방적 접근을 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연방적 접근은 유럽공동체에서 50년대에서 60년대 초에 비교적 지배적인 것이었다. 예컨대 텐데만은 그의 보고서에서 두가지의 큰 주제를 제시하였다. 즉 공동방위정책과 공동안보정책이다. 첫째로 유럽통합은 공동방위정책을 기초로 하지 않는 한 비현실적인 것이 될 것으로 보았다. 실질적으로 70년대에 있어서 이 주제는 현상을 유지하려는 회원국들의 국내정책과 대립되는 것이었다. 그들은 그 당시 한편으로 소련을 자극시키지 않고, 다른 한편으로 독자적인 전략적 결정을 내리는 중앙기구를 만들으로써 대서양체제를 유지하려는 견해가 지배적이었다(Zorgibes, 1993).¹⁰ 둘째로 공동

1) 저자와 Léo Tindeman과의 인터뷰(브르셀 주재 유럽의회, 1993년 12월 27일)에서 그는 이 공동방위정책을 제시하였지만 NATO체제를 부인하려는 의도는 전연 없었다. 그는 이 접근방법을 통해서 연방적 발상이란 표현은 사용하지 않았지만 공동방위정책을 적용할 때 통합의 속도가 더 진척될 수 있을 것이고 완성도 가능해 진다고 진술했다. 그리고 EU가 추구하는 앞으로의 방위정책 역시 NATO와 서구연합체를 유지한 채 추구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이 때 그는 경제적 통합은 유럽의 각 국가들이 개별적으로 대응할 때는 미국과 일본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없으며 약체 경제이므로 불가피한 것이라고 진술했다. 동시에 그는 이러한 경제통합이 이론바 유럽의 요새화를 초래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경제적 협력을 가능케 할 것이라고 보았다.

외교정책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회원국과의 협력과 조정이 필요하다는 점때문에 더욱 강조되었다. 오늘날의 외교정책들은 다른 한편으로 경제와 금융이 밀접히 연결되어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관계에서 더욱 다양한 분야가 서로 교차하는 상호의존성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는 문제의 다양한 모습이 적어도 각료수준에서 통일한 장소에서 전체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실질적으로 텐데만 보고서가 주장하는 유럽통합은 단지 구조적인 것이지 기능주의적인 것은 아니라고 한다. 그래서 공동체 이사회가 공동체의 조약에 기초해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때에 따라서 정치적 협력으로서 대응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Zorgibes, 1993).

그리고 스피넬리(Altiero Spinelli)가 주도한 유럽의회내의 제도개혁 위원회가 유럽통합안을 제출했다. 그는 정치협력과 금융체제에 관한 통합을 강조했으며 의회가 입법과 예산에 있어서 각료이사회와 함께 공동결정권을 보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Zorgibes, 1993).

요컨대 두 연방주의자들은 경제·사회적 구조와 기능을 통합하여 정치적 통합을 유도하려는 이원적인 구도를 계획하는데 그 성격은 기본적으로 연방주의적인 것이다.

연방주의자들중에서 가장 강력한 방식을 전개하였던 사람은 스피넬리라 할 수 있다. 그는 회원국들로부터 간섭을 배제하면서 유럽시민들에 의해서 직접 표현되는 동의(consent)로부터 정통성을 찾는 민주적 유럽(a democratic Europe)을 위한 정치적 제도들을 설립할 필요성을 강조하였다(Spinelli, 1986:19). 일반적으로 연방주의자들은 효과적인 유럽공동체가 권력이 각 정부에 존치되는 국가연합적인 기반(confederal basis)에서 수립될 수는 없다고 믿는다.

한편으로 약간 완화된 연방안을 제시하는 학자도 있다. 루즈망(Denis Rougement)은 단숨에 제헌절차 혹은 전국절차 같은 것을 통해서 연방을 이룩하기보다 점진적 혹은 단계적인 방식으로 공동의 제도들을 만들어 점차적으로 유럽연방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80년대의 통합과정의 새로운 도약이 준비되었던 시기의 보충성의 원칙도 연방주의적 개념임을 부인할 수 없다(Laffan, 1986).

유럽공동체를 통합해오는 과정에서 연방제는 어느 제도보다 효과적이며 현실적 제도로 인정되면서도 완전히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연방적 접근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했던 이유는 무엇보다 국민국가의 개체성 또는 그 고유성을 제약할 뿐만 아니라 주권과 통치권을 크게 제약할 위협이 있기 때문이다. 하스가 지적했듯이 통합이란 "...각 기 다른 나라에 있어서 정치적 행위자들이 새로운 중심을 향하여 그들의 충성, 기대 및 정치적 활동 등을 이전하는 과정..."(Hass, 1985: 116)"이라고 정의했다. 연방적 접근이 이러한 과정과 유사한 것이다. 다음 이유를 지적한다면 연방제는 새로운 초국가적 기구 또는 초국가적 중심을 설립하는 것이므로 이것 역시 국민국가의 주권과 통치

권을 크게 손상할 것이라는 것이다. 프랑스의 골리스트파를 비롯한 공산주의자들은 프랑스 인민연합과 함께 이러한 연방적 접근을 저지하는데 정열을 쏟았다. 특히 드골은 초국가적 기구를 “그럴듯한 위장(faux-semblant)”이라고 공격하였다. 그는 대안으로서 국가들의 연합(Union d'Etats) 그리고 조국으로 구성된 유럽(l'Europe des Etats)을 제시하면서 연방적 유럽에 의존하는 초국가적 기구를 정치가 적용되지 못하는 기술적인 가치(valeur technique)만이 작용하는 무국적의 것이라고 비난하였다.

결국 프랑스 제4공화국이 주도했던 유럽방위공동체 그리고 푸쉐, 틴데만 그리고 스피네리 등이 제시한 연방적 접근이 현실적으로 적용되지 못했던 것은 이러한 사정에 기인한다.

아이러니컬하게도 공동체 내에서 새로운 중심, 새로운 연방적 주권과 권위에 저항하는 경향이 7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일어났다. 브르셀에 집중된 초국가적 중심으로부터 벗어나려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갈등의 소지가 증대하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대체로 국가연합(confederalism)으로 전환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경향을 통합적 정치의 몇가지 특성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첫째로 브르셀의 제도와의 관계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회원국이 방어적 자세를 취하였다. 회원국정부들의 방어적인 자세는 공동체에서 행위자로서 분류한 요소들을 고려하는 문제와 그 정부들과의 분리라는 문제와 관련된다. 둘째로 “다듬어진 이의사회”로 불릴 수 있는 정치적 상호작용체제가 등장했다. “다듬어진 이의 사회”的 주제는 회원국 정부가 회원국으로 되어있는 정치체제의 주요 특성들을 고려하는 것과 관련된다. 셋째로 통합을 위한 발전된 계획들과 회원국 정부가 천명한 의도에서 볼 수 있는 민족주의에로 후퇴하는 경향 사이에서 동요하는 모습 등을 볼 수 있다. 각 정부가 천명한 의도에 있어서의 동요의 주제는 상호 개입에 대한 정부들의 의식적인 대응이 서로 상관관계를 이루고 있다는 것이다(Taylor, 1975).

브르셀 제도와 관련되어 있는 각 정부의 방어적 자세는 국제기구에 대한 일반적 반응으로 고려될 수 있다. 사실상 국제기구의 적절한 작동은 국가이익이 존재하고 어떤 특별한 정부는 자신을 옹호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강화하여준다. 다른 한편 테일러 교수는 유럽공동체내에서 광범위하게 경제적·사회적·문화적·상호의존성이 발전함으로써 회원국으로 하여금 그들의 권력에 대한 잠재적 또는 실질적 위협에 직면하여 더욱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만들었다고 해석한다. 통합이 진전됨에 따라 각 정부는 광범위한 지역적 제약에 직면하여 방어적으로 변하였다고 지적한다(Taylor, 1975).

그는 이와 반대로 역설적이기는 하지만 정부간의 협력을 촉진하는 것이 개별국가의 일체성을 보호하는데 기여하였다고 규정하기도 한다. 그러나 유럽공동체의 작동하는 방법들은 오히려 국가이익의 개념을 파편화시켜온 경향이 있고, 정부의 주장을 약화

시켜온 경향이 있다는 것을 지적한다(Taylor, 1975).

테일러는 경제금융통합을 위한 위너의 제안(Werner's proposal)과 1972년의 정상회담은 성급한 통합의 결과라고 해석한다. 여하튼 국가연합단계(confederal phase)에서 방어적 자세를 취하게 했던 가장 강한 압력이 통합과정의 성공에서 비롯된 것은 틀림 없다. 유럽공동체내에서 각 정부는 회원국의 기능적 측면이 대체로 공존적이라고 인식하였던 그들의 국가를 더이상 통제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회원국들은 경제적으로나, 법률적으로나 또는 정치적으로 유럽공동체의 영역에 걸쳐 확장되고 있는 체제들에 의해서 침투되어 왔다. 따라서 각 정부는 그들의 국경 밖에서 일어나는 영향, 압력 그리고 규칙들을 고려하지 않고서 그들의 영토와 적결된 결정을 내리기 어렵게 된 것이 사실이다.

유럽공동체의 통합 과정에 있어서 국가연합단계가 비교적으로 비관적 견해에 해당된다면 결정론의 반영이라 할 수 있는 유럽단일의정서는 낙관적 견해라고 할 수 있다. 그후 이를 보다 다이내믹하게 성취하려고 탄생된 마스트리히트 조약은 모두 낙관론과 비관론을 흡수하여 더 높은 통합을 지향하는 통합문서이다(라종일, 1993). 요컨대 이 두개의 야망적 통합문서들은 테일러의 비관론 내지 비관적 견해로 볼 수 있는 국가연합단계를 넘어서는 단계라고 하겠다. 그후 공동체의 통합 과정은 국가연합 단계에서 연방적 단계로 접어들어 가고 있다. 그렇게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은 구조적 기능적 변화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첫째로 연방적 접근은 단일 체제가 지향하는 국경없는 공간(*une espace sans frontieres*)을 실현하여 상품, 용역, 자본 및 사람의 자유로운 이동을 구현하는데 적용되고 있다. 그것만이 진정한 단일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목표는 일단 각 정부가 그의 경제·통상활동을 보다 더 공동체의 틀속에 집어넣어서 보다 규율 있게 운영하여 공동의 번영을 창조하려는 것이다.

둘째로 연방적 성격이 반영되고 있는 것은 유럽의회의 권한을 증대하여 왔다는데 있다. 보통 직접 투표로 선출된 유럽의원들로서 구성되는 유럽의회는 더욱 자국을 민주적으로 대표하면서도 유럽적 차원에서 정치적 협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이는 국가 차원에서 보다 유럽의회 차원에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셋째로 연방주의자들이나 신기능주의자들은 정치적 협력이 강력하게 작용하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발효시킴으로써 공동체의 연방주의적 성격을 추가하려고 한다. 유럽 이사회는 1990년 12월 로마 정상회담이래 수반된 두개의 협상을 진행시키면서 이원적 목표, 즉 경제금융통합(*'l'Union économique et monétaire*)과 정치적 연합(*'l'Union politique*)에 대한 합의를 이룩했다. 즉 전자에 있어서 단일시장을 성취하기 위하여 환

율의 불확실성을 정확히 제거하는 것이다. 후자에 대해서 냉전이후 독일의 통일이 성취되는 등 유럽공동체의 냉전적 질서의 변화는 불·독간에 유럽공동체의 통합이 더욱 필요해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단지 정치적 연합을 가속화시켜서 새로운 질서에서 공동체의 통합이 진행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통합의 강도가 더욱 인식되는 그 자체는 연방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베네룩스 3국, 이태리, 그리스 그리고 포르투갈에 의하여 지지를 받은 독일, 프랑스와 스페인은 공동체의 연방적 진전(une evolution fédérale de la Communauté)을 위한 약속을 선언했다. 그래서 주권의 새로운 모든 이전을 반대하였던 영국, 덴마크 그리고 아일랜드를 양보하게 만들었다. 프랑스와 영국이 유럽의 사회현장(*la Charte Sociale Européenne*)에 관해 논쟁하였으나 영국이 공동방위정책을 수락하고 서구연합에 가입하겠다는 것을 선언함으로서 프랑스와 독일은 영국을 금융·동맹과 사회정책에서 오는 현실적인 구속력을 면제케 하였다. 그리하여 영국은 단일시장에 남아있으면서 금융과 사회통합(*l'intégration monétaire et sociale*)의 구속을 받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맥락에서 EU는 영국만을 금융과 사회통합의 구속력을 면제케하면서 11개국을 이에 통합시키는 특별한 통합 형태를 취하는 연방적 발전으로 볼 수 있다.

넷째로 연방적 성격 또는 2단계는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잘 표현되어 있다. 조약의 B조 1항은 “일정한 시기에 단일화폐를 포함하는 경제금융통합을 실시하고 경제·사회적 결속을 강화함으로써 국경없는 공간을 창조함으로서 균형있고 지속적인 경제·사회적 발전을 촉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2항은 “공동외교정책과 안보를 실시함으로써 유럽의 일체성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제3항은 “EU의 시민권을 도입함으로써 회원국들의 소속 국민들의 권리와 이익의 보호를 강화한다”라고 규정하고, 4항은 “내정에 대해서 긴밀한 협력을 촉진한다(Zorgbubes, 1993: 342)”라고 선언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경제·사회적 결속, 시민권의 도입 그리고 내정에 대한 더욱 긴밀한 협력 등을 공동체 차원에서 실행하려는 것은 연방적 접근에 더욱 가까워지려는 것이다.

EU에서 가장 연방적 성격을 잘 표현한 것은 C조에 나타난다. 즉 “연합은 공동체의 경험을 존중하고 이를 발전시키면서 제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금까지 실현해온 결속과 행동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유일한 제도적 틀을 보유한다(Zorgbubes, 1993:342)”라고 표현되어 있다.

이러한 조약상의 선언은 연합이 추구하려는 제목적을 정부간의 협력에 의존하면서도 동시에 더욱 공동체의 차원으로 끌어올리려는 연방적 접근이라고 하겠다. 예컨대 F조에서 “연합은 회원국들의 국가적 일체성을 존중한다”라고 언급한 것은 바로 정치적 협력의 이원성을 의미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연방주의자들은 각 회원국의 국가적

일체성을 손상시킨다면 연방적 성격과 연방적 기능을 달성하지 못할 것이라는 발상에 의거한 것이라고 하겠다.

다섯째로,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3B에서 언급된 보충성의 원칙과 관련하여 볼 때 이 원칙은 전체적으로 정치적 연합에 매우 유익한 도구라고 간주된다. 공동체의 업무와 주권의 이전 또는 통치권의 이전이라는 개념으로 이해되는 이 원칙은 공동체적, 지역적 그리고 국가적 범위에서 균형있고 효용성있게 조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무엇보다 정치적 연합을 촉진하는 연방적 성격을 부각시키는 장치라고 하겠다. 작크 둘러르는 “보충성의 원칙은 연방적 접근을 위한 일종의 교육이다”(une pédagogie de l’approche fédérale)라고 간결하게 지적했다. 즉 “시민이 각각 새로운 권위에 소속된다는 것은 더 옥 광범위한 차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다(Delors, 1992: 163).”라는 그의 표현은 바로 연방적 성격을 함축한 것이다. 연방적 성격을 갖는 유럽연합은 이 원칙을 단순히 권한을 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회원국 각자가 분리하여 대응하는 것 보다 더 효과적으로 대응하려는데 그 궁극적 의도가 있는 것이다. 결국 유럽연합이 앞으로 연방적 제도를 강화·적용하는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보충성의 원칙이 크게 작용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4. 정치적 통합의 전망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겹치면서 지속적으로 유럽공동체가 통합의 과정을 밟아왔다. 44년간 통합의 과정을 거친 유럽공동체는 초기 통합의 강도를 보다 조직적으로 추구할 목적으로 연방주의적 성격을 지향하였으나, 통합의 중반기에 들어서 통합 그 자체로 인하여 형성되고 있었던 초국가적 제도를 경계하려는 국가연합주의적 성격으로 기울어졌다. 그러나 탈냉전으로 갑자기 조성되고 있었던 새로운 유럽의 정치질서에 대비해야 하는 동시에 통합을 더 효율적으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에 직면한 유럽의 지도자들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을 체결, EU를 선택하게 되었다. EU가 추구하고자 하는 몇 개의 이상적 목표들, 즉 유럽시민권의 도입, 단일화폐의 적용, 그리고 공동외교정책과 공동안보 등은 필연적으로 다시 연방주의적 제도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장기적인 전선 속에서 낙관주의와 비관주의가 교차하면서도 유럽의 연방주의자들은 지속적으로 통합의 강도를 추구하여 온 것은 신기능주의적 접근 위에서 진전을 창조할 수 있다는 낙관주의가 강하게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이것을 낙관적 진보주의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같은 낙관주의는 과거와 같은 쳐참한 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 유럽공동체가 필요하며 그 공동체의 지속적인 진전만이 유럽에 번영, 평화 그리고 안보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이다. 물론 이같은 유럽의 건설은 경제적 통합과 그 다

음으로 실현된다고 믿는 정치적 통합이라는 이원적 접근에 대한 믿음에 근거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 이후 유럽연합은 모든 면에서 합의된 주권의 이양이며 합의된 통치권의 이양일 수밖에 없는 제도로 나타날 것이다. 회원국들로부터의 주권의 이양과 통치권의 부분적 이양으로써 형성되는 초국가적 제도들은 전통적인 의미의 연방정부나 주권국가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정치적 행위를 하지 못하는 제한적 주권과 제한적 통치권만을 행사하는 특수한 초국가적 제도로 발전할 것이다.

결국 각 회원국이 합의에 의하여 주권과 통치권을 이양하여 제한적 통치권을 형성하는 것은 불가피하게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정치적 통합은 최초 유럽연합의 조약들과 최초의 연방주의자들이 도달하려고 했던 정치적 형태이다.

그렇지만 EU의 정치적 통합은 연방적 기술(federal technique)에 기초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서 연방적 기술은 경제적 통합에서부터 정치적 통합으로 이어주는 매우 강력한 연결고리가 될 것이다. 연방적 기술은 회원국간, 회원국들과 공동체 그리고 이 양자와 제3국을 정치적으로 통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도구로 간주된다. 동시에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써 연합을 성숙시키는데도 이 도구는 매우 효과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동시에 보충성의 원칙은 연합을 성숙시키는데 촉진제가 될 것이다. 당분간 동유럽 국가들에 확대되는 속도를 늦추면서 12개 국간의 다방면적 통합이 강도 높게 일어 날 것이다.

물론 앞으로 통합의 모델은 어떻게 하면 회원국 간의 정치적 협력을 바탕으로 하는 연방적 기술을 더욱 확대·발전시켜 나가느냐에 달려 있다고 본다. 연방적 기술의 적용만이 개별국가가 대응할 수 없는 문제들, 즉 초대형 산업기술의 개발, 통상문제, 핵문제, 오존층의 파괴, 자연보호 또는 대재앙 등과 같은 문제들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실현해 온 번영, 평화 그리고 안보를 순식간에 파괴할지도 모를 세계적 차원의 핵전쟁을 예방하는데 더 더욱 연방적 기술이 요구될 것이다. EU가 이러한 목표들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회원국의 주권과 통치권을 도전하거나 파괴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 정치적 통합의 모델이 연방적 접근으로 지향하면 할수록 정치적 통합의 가능성을 제고 시킬 것이다. 이같은 정치적 통합은 궁극적으로 회원국간의 다원적 상호의존성을 제고시켜 민족주의의 성격도 완화시킬 것이다. 그것은 결국 제도적 민족주의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21세기에 이르면 정치적 통합으로 인한 하나의 새로운 형태의 민족주의인 제도적 민족주의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민족주의의 성격을 완화시켜 제도적 민족주의-EU의 통합에 순응하는 민족주의에로의 순화-로 이끌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결국 제도적 민족주의는 EU의 정치적 통합을 촉진시킬 새로운 환경인 문화적 동질성과 정치·경제·외교·안보적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III. 유럽연합(EU)의 통상정책

1. EU 통상정책의 개요

EU의 통상정책(external trade policy)²⁾에 대한 연구는 일본이나 미국에 대한 연구와 비교하면 아직 초보적인 수준이라 볼 수 있다. 그것은 EU가 미국이나 일본과는 달리 단일의 정치체제를 형성하지 못하고, 이제 국가연합을 선언할 정도로 초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통상정책도 공동정책이라기 보다는 각 회원국의 개별무역정책의 총화로 파악되어 왔다. 통상정책에 관한 연구도 통합적이라기 보다는 각 국가별 무역정책으로 수행되어온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공동통상정책은 농업정책과 더불어 EEC조약 때부터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어 온 것으로, 주로 관세동맹(custom union)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 있다. 관세동맹이란 안으로는 무역장벽이 되는 관세 및 비관세를 철폐하고 밖으로는 공동역외관세(common external tariff)를 부과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area)보다는 한층 심화된 경제통합의 형태이다. 현재 유럽연합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공동시장(common market)의 수준을 넘어 경제동맹(economic union)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경제동맹의 단계에 오면 재정, 금융,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초국가적 기구의 탄생을 보게 된다. 따라서 유럽연합의 역외무역에 관한 정책결정은 개별국가로부터 점차 집행위원회로 이관되어오고 있는 추세이다. 더구나 최근 역내시장을 통합을 위한 '1992년 프로그램'이나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비준으로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하겠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유럽연합의 통상정책 기조가 더욱 자유화의 경향을 떨 것인가 아니면 더욱 보호주의 색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유럽연합 12개국의 무역은 전세계 무역의 40%를 점하고 있다. 이 거대한 무역대국이 자유주의냐 보호주의냐에 따라 한국은 물론 전세계의 무역이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현재 두가지 방향 모두 예측될 수 있다. 우선 URE타결로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여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이 다소 자유화의 추세로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다른 가정은 유럽연합이 최소한 현재와 같은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는 서유럽제국의 실업률

2) 통상정책은 무역정책과 혼용되어 쓰이고 있다.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무역정책은 상품의 국제적 거래에 국한되는 것이고 통상정책은 모든 경제거래를 포함하는 광의의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래서 통상정책을 대외경제정책과 동일시하기도 한다. 또한 협의의 통상정책은 바로 무역정책과 유사한 개념이 된다.

이 아직 10% 이상으로 경쟁국인 미·일에 비해 현저하게 높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국내산업의 경쟁력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역을 자유화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다.

본 장에서는 우선 유럽연합의 대외무역의 현황과 통상정책의 제도적 기초를 분석한 다음, 향후 통상정책을 전망해 보고자 한다. 문제는 UR타결이 주는 영향을 본격 분석하기에는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는 점이다. 그러나 유럽연합의 공동체법 또는 정책기조 등에 산재해 있는 여러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최소화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EU의 대외무역현황

EU 회원국 12개국의 총무역액은 1992년 기준으로 수출 1조 1,200억 ECU (약 1조 6,000억 달러), 수입 1조 2,000억 ECU (약 1조 8,000억 달러)로 전세계 무역의 약 40%를 점하고 있다. 이중 약 60%가 EU회원국간 역내무역(internal trade)에 의한 것으로 EU의 역내무역은 다른 어느 경제통합체보다도 비중이 높다. 1980년 EC의 역내무역 비중이 50.2%였다는 것을 감안하면, 지난 10여년 동안 EU 역내시장 단일화는 한층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1980년대 후반(1985-1990)에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국가별로 보면 프랑스, 이태리 등이 높은 역내시장 의존률을 보여주고 있으며 영국, 독일의 경우 역내 의존도가 각각 53.5 및 54.2%로 비교적 낮다. 이것은 영국, 독일의 역외통상정책이 비교적 자유주의적이고, 프랑스, 이태리의 경우 다소 폐쇄적임을 반영하는 것이다. 실제로 EU의 공동통상정책상의 혼란은 독일, 네덜란드 등의 자유무역주의 노선과 프랑스, 스페인, 이태리 등 라틴계 국가의 보호주의와의 마찰에

〈표 3-1〉 EU 및 주요국의 역내시장 무역비중(1980-1992)

(단위 : %)

국별	1980	1985	1990	1992
영국	40.3	45.2	51.7	53.0
독일	47.5	49.1	54.3	54.2
프랑스	49.5	52.4	63.8	64.1
이태리	45.4	45.4	57.8	58.9
네덜란드	62.2	63.9	68.2	68.3
EU 전체	50.2	51.7	59.9	60.1

자료 : Commission, basic statistics of the community, 각호 및 European Economy, Dec. 1993.

서 일어나고 있다.

다음 <표 3-2>에서 보듯이 EU의 대유럽 무역의존비중은,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까지 포함한 넓은 의미로 보면 70%를 상회하고 있다. 대미 수출 및 수입비중도 겨우 7%를 상회하며, 대일본 수출 점유율은 겨우 2.1%에 불과하고 수입비중도 4.1%정도이다. 또한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신흥공업국 4개국에 대한 수출입의존도는 각각 2.3 및 2.5%에 머물고 있다. 기본적으로 EU는 유럽지향적인 무역구조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 추세는 향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본다. 더구나 1993년 1월 1일부터 발효된 EEA협정으로 EU와 EFTA간의 자유무역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향후 EU의 유럽지향적 무역구조는 심화될 것으로 보여진다.

또 하나 특기할만한 사실은 EU의 대아시아 무역이다. 다른 지역과 달리 이 지역에서는 무역수지 적자를 시현하고 있는데 특히 일본과의 교역에서 상당한 역조현상을 보여주고 있다. 더구나 아시아지역은 경제성장 및 교역증가율이 가장 높은 지역이다. 따라서 아시아지역에서의 EU 산업의 경쟁력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

<표 3-2> EU의 지역별 수출입의존도 (1990)

(단위 : %)

지역별	수출	수입
유럽지역*	73.0	69.7
· 역내무역	61.0	58.8
· 대 EFTA	10.5	9.5
· 기타 유럽국	1.5	1.4
미주지역	9.6	10.9
· 미국	7.1	7.6
· 캐나다	0.9	0.8
· 남미	1.6	2.5
아시아지역	5.2	7.7
· 일본	2.1	4.1
· NIEs 4개국	2.3	2.5
· 중국	0.8	1.1
기타	12.2	11.7
총액 (10억달러)	1,360	1,415

* 러시아 및 동유럽제국은 유럽지역에서 제외되었음.

자료 : European Economy (Dec. 1991), L.Winters and A. Venables (1993), p.36에서 재인용

다. 이렇게 보면 아시아지역을 향후 EU 통상정책의 전략지역으로 볼 가능성이 높다. 최근 프랑스와 독일이 아시아지역에 대한 무역 및 투자강화를 주요 대외경제전략으로 채택했다는 의신보도가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다.

한국과 같은 역외국의 입장에서 보면 EU의 통합이 어느 정도 역외에 무역유발을 가져오느냐가 중요하다. 이를 역외무역창출효과(external trade creating effect)라고 하는데 다음 <표 3-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80년대를 통하여 EU의 역외무역도 꾸준히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³⁾ 1980년 EU의 역외 수입총액은 약 4,000억 달러였는데 10년후인 1990년에는 약 6,000억 달러에 달해 명목증가율은 거의 50%에 이르렀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EU의 수입잠재력이다. 그것은 EU의 역외로부터 수입액이 매년 6,000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 수치는 미국의 1.5배, 일본의 3배에 해당되는 것이다. 말하자면 EU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세계 최대의 수입국이라는 것이다. 현재 한국의 대 EU수출은 약 100억 달러로 EU 역외수입의 약 1.6%라는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 수출 800억 달러의 세계 10대 무역국의 하나인 한국의 입장으로서는 유럽시장의 점유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평가할 수 있다.

<표 3-3>

EU 역외 무역수지 (1990)

(단위 : 10억 달러)

	1980	1989	1990
수출	305.0	456.0	530.6
수입	393.9	499.3	593.6
무역수지	-88.9	-43.3	-63.0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90-91, (1992)

3. EU 공동통상정책의 기초

(1) 공동체법상의 통상정책의 기초

유럽연합은 그 명칭에도 불구하고 아직 정치적 실체는 아니고 국제법에 의한 국가 간 협력체일 뿐이다. 따라서 공동정책의 모든 근거는 유럽공동체법에서 나오고 있다.

3) GATT 제 24조는 국제적 경제통합이 무차별원칙에는 어긋나지만 무역의 확대라는 GATT의 기본정신과는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고 규정하고 있다. 즉 경제통합은 물론 통합국 간의 무역을 증진시키지만, 제 3국에도 수출확대의 기회를 주게 된다는 것이다. GATT체계 내에서 특혜무역을 허용하는 또 하나 예외는 GSP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혜관세의 공여이다.

공동체법이라 함은 로마조약으로 불리는 EEC조약(1958), ECSC조약(1951), 1967년의 통합조약(Merger Treaty), 1987년의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 최근의 마스트리히트조약(1993)을 통칭하는 것으로 유럽연합의 헌법적 기초가 되는 것이다.

유럽공동체법에 나타나고 있는 공동통상정책의 기초는 다음 2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역내 회원국간 통상정책이다. 이것은 EEC조약 Title 1(제 9-37조)에 규정되어 있는 역내물품의 자유이동(free movement of goods)이다. 이를 위한 가장 핵심적인 조치는 역시 관세동맹이다. 관세동맹의 특징은 역내무역의 자유화와 역외로는 공통관세를 적용하는데 있다. 역외공동관세야말로 자유무역지대(FTA)와 구별되는 관세동맹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 할 것이다. 광범한 통상정책의 기초는 EEC조약 제 110-116조에 나타나고 있다. 'Common Commercial Policy(CCP)'로 표기되고 있는 데서 보듯이⁴⁾ EEC조약 제 110-116조는 EU 통상정책을 이해하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이다. 이중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제111, 114조 및 116조는 폐지되고, 제113조와 제115조는 수정되었다.⁵⁾ 따라서 EEC조약 제110조, 수정 EEC조약 제113 및 제115조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본적으로 EEC조약 제110조는 역내무역자유화와 세계무역의 자유화를 지향하고 있다. 말하자면 관세동맹의 결성이 세계무역의 '조화로운 발전'(harmonious development)을 위한 국제적인 무역 및 관세장벽의 인하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본 조문의 후반부에 가면, 관세장벽의 제거가 회원국 기업의 경쟁력(competitive strength)의 강화에 있다는 것을 언급함으로써, 결국 역내 경쟁력강화에 통상정책의 목표가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EEC조약 제 110조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By establishing a custom union between Member States aim to contribute, in the common interest, to the harmonious development of world trade, the progressive abolition of restrictions on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owering of customs barriers.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take into account the favourable effect which the abolition of customs duties between Member States may have on the increase in the competitive strength of undertakings in those States."

EU의 공동통상정책의 가장 중요한 법적 장치는 EEC조약 제113조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 다소 수정되긴 했지만 근본 취지는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 제113조는 모두 4개의 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항에서는 통상정책의 공동집행을 명시하고 있다. 즉 역외 관세율의 결정, 제3국과의 무역협정체결의 경우에는 물론, 무역자유화 등

4) EEC조약 Title II, Chapter 4, Commercial Policy 참조.

5) The Treaty of European Union (일명 Maastricht Treaty), Title VII 참조.

수출정책, 또는 반덤핑이나 보조금 상계관세를 부과할 경우에도 공동체적의 입장에서 처리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The common commercial policy shall be based on uniform principles, particularly in regard to changes in tariff rates, the conclusion of tariff and trade agreements, the achievement of uniformity in measures of liberalisation, export policy and measures to protect trade such as those to be taken in the event of dumping or subsidies.”(The Treaty of European Union, Title VII)

특히 반덤핑이나 보조금에 대한 무역방어규정때문에 제113조가 역내산업보호 조항이라고 불리고 있다. 이것에 근거하여 덤픽규제조치와 세이프가드 등 화색무역제한조치가 남발하게 되었다. 제2항 이하에서는 집행위원회(Commission)로 하여금 각료이사회(Council)나 유럽의회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아 통상정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에 권고나 제안을 할 수 있게 하여 통상정책의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수행기구가 되고 있다. 물론 형식상 모든 정책의 최고의사결정기관은 각료이사회이다. 집행위원회는 각료이사회가 임명한 통상전문위원회(제 113조 위원회라고도 함)의 자문을 받기도 한다.

EEC조약 제115조도 다소 수정되었지만 그 실질적 내용은 그대로이다. 이 조문에서는 무역굴절(trade deflection),⁶⁾ 회원국간의 무역정책의 차이로 인한 어려움이 발생할 때 집행위원회의 조치를 명시하고 있다. 이때 위원회는 각 회원국들로 하여금 ‘필수적인 협조(requisite cooperation)’를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이 협조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해당 당사국은 개별적인 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그 조건이나 내용은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개별국가가 단독으로 무역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집행위원회에 권한을 요청할 수는 있다. 이때도 관련 회원국에 조치 내용을 통보해야 하며, 집행위원회는 언제라도 그 조치에 대한 수정이나 철회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⁷⁾

이상 공동체법(특히 EEC조약)을 분석해 볼 때,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의 기초는 연합회원국의 공동이익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말하자면 자유무역의 조화로운 발전은 유럽연합 회원국의 경쟁력제고를 위한 전제로 보고 있는 것이지, 세계적

6) 무역굴절이란 域內 저관세국을 통해 수입된 상품이 다른 역내고관세국으로 유출되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했을 때 전형적으로 우려되는 현상이지만 유럽연합에서도 문제되고 있다. 과거 동독의 상품이 서독으로 무관세로 유입되어 전 EU로 흘러간 것이라든가, 저율의 이스라엘 농산물이 독일로 수입되어 스페인이나 프랑스의 농산물과 마찰을 일으킨 경우가 이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를 대비하여 원산지증명이 필요하다.

7) “... The Commission may decide at any time that the Member States concerned shall amend or abolish the measures in question.”

인 차원의 자유무역이 반드시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의 기조는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공동체법 제110조). 뿐만 아니라 덤펑이나 보조금에 관한 집단대응을 명시함으로써 (제113조) '집단적 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의 길을 열어두고 있는 셈이다. 경제동맹이나 경제통합의 실질적 이익은 보호주의의 집단화를 통한 협상력(bargaining power)의 강화에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를 소전정웅은 '집단적 보호주의'라고 규정하고 있다(소전정웅, 1992).

EEC조약 제113조가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재확인된 것은, 앞으로도 EU는 언제든지 역내기업의 보호라는 명분아래 보호주의적 색채를 떨 수 있음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공동체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사회와 동의를 구하면 위원회는 어떤 무역제한조치라도 취할 수 있도록 권한이 포괄적으로 위임되어 있다(EEC조약 제235조).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나타난 EU 공동체법의 또 하나 특징은 중앙집권화인데, 이는 통상정책에서도 여실히 나타나고 있다. 역내무역에 관한 EU차원의 시장단일화는 1978년 'Cassis de Dijon'사건에 대한 유럽법원의 판결이후⁸⁾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나, 역외무역정책은 EEC조약에도 불구하고 각 회원국간에 차이를 보여온 것이 사실이다. 말하자면 독일, 네덜란드 등은 자유주의적 무역정책을 표방하고 있는가 하면,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은 제3국에 대해 보호주의적 경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공동체법(EEC조약) 제115조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 집행위원회로 하여금 조정자의 역할을 담당하게 하고 있다. 개정된 조문에도 집행위원회의 권능을 인정하고 있다. 즉 각국의 이해가 상충될 경우에는 동위원회에 조정권을 부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통상정책에 대한 권력의 집중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보는데, 이유는 국제경제관계에서 집단적 협상이익이 더욱 부각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최근 타결된 UR협상에서 집행위원회를 통한 EU의 단결은 그 전형적인 예에 불과하다. 그러나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권력집중에 반대하는 소리도 없지 않다. 소위 '보충성의 원칙'(subsidiary principle)에 입각하여 경제정책의 지방화, 지역화를 주장하는 논리가 제기되고 있다. 더구나 무역정책은 각 회원국

8) 이 사건은 1978년 당시 독일회사인 Rewe Zentral 주식회사가 Cassis de Dijon으로 알려진 프랑스産 술을 수입하려들자, 당시 독일 정부는 자국의 표준에 미달한다고하여 수입을 금지시켰다. 독일의 수입업자는 이에 불복하여 유럽법원에 제소하였고 유럽법원은 독일정부의 수입제한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유럽법원은 EC통합정신에 비추어 볼 때 프랑스에서 유통한 상품은 독일에서도 유효해야 한다고 판단했던 것이다. 이 판례는 유럽연합의 시장단일화에 결정적인 계기를 주었고, 경쟁정책에도 큰 영향을 주었다. El-Agraa, A., *The Economics of the European Community*, (St. Martin Press, New York, 1988), p.153 이하 참조.

<표 3-4>

EU 통상정책의 법적근거 및 주요내용

법적근거	내 용
EEC조약 제 110조	자유무역원칙, 역내기업의 경쟁력제고
제 113조	통상정책의 공동실시, 반덤핑등 역내산업보호
제 115조	통상정책의 결정기구 및 집행위원회의 권한
제 228조	준회원국대우에 의한 무역특혜조치
제 235조	권한의 포괄적 위임

의 경쟁력수준, 경제수준을 반영하여 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Möschel, 1993: 91-105).

(2) 신통상정책조치(NCPI)

EU의 통상정책은 <표 3-4>에서 보듯이 공동체조약(로마조약) 제110조, 113, 115조 등에 의해 원칙이 선언되고 있다. 특히 제113조에서는 EU 위원회와 이사회에게 통상분야에서 공동정책을 취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이에 따라 EU는 공동역외관세(CET)를 부과하고, 덤핑이나 보조금이 지급된 수입에 대해서 공동체 차원의 대책을 취해 왔다. 그러나 1970~80년대 이후 점차 악화되어 가는 국제경제관계와 EU의 경쟁력악화에 비추어 기존의 통상정책수단은 미흡하다는 인식이 회원국 사이에 퍼지게 되었고, 공동통상정책(Common Commercial Policy)의 강화를 주장하게 되었다. 말하자면 EU기업들이 그 동안 외국기업의 불공정 무역행위에 의해 손실을 입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항하여 공동체 차원의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위기는 'Welsh Report'와 'French Memorandum'에 잘 나타나 있다(Broncker, 1984). 이에 따라 EU도 미 통상법 제301조와 같은 신통상정책조치(New Commercial Policy Instrument)를 마련하였다. 1984년 9월 EU 이사회는 외국의 불법적인 무역관행으로부터 역내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Regulation 264/84)을 제정했는데 이것이 신통상정책조치이다.

신조치의 주요내용은 불공정 무역관행으로 EU기업에 피해를 역외국가에 대하여 보복관세의 부과, 수입수량제한, 수입과징금부과 등을 통하여 보복조치를 취하는 것이다. 여기서 불공정 무역관행이라는 것은 국제법 특히 GATT협정 위반을 의미하는 것이지만 자의적으로 운용될 가능성이 높다. 우선 신조치의 적용대상에서 불법(illicit) 교역관행이 과연 어떠한 것인지를 명확하지 않다. 물론 미국의 통상법 제301조처럼 불정당(unjustifiable), 비합리적(unreasonable), 차별적 행위를 총망라하는 포괄적인 내용은 아니나, 불법교역의 범위를 둘러싸고 EU당국의 자의성이 개재될 가능성이 크다. 둘째,

신조치의 발동주체에 관한 것이다. 신조치는 회원국 정부당국 뿐만 아니라 이해당사자인 사인(기업 또는 단체)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원래 GATT규정이나 GATT Code의 규정은 ‘비자기집행적’이다. 따라서 사인은 제소권이 없고 자국정부에게 ‘외교적 보호권(diplomatic protection)’을 요청하여 정부간 협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EU의 신통상정책조치(NCPI)는 미 통상법과 마찬가지로 사인의 제소권을 인정하고 있다. 로마조약 제113조가 사인의 이러한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신조치는 중대한 정책수단이 된다.

EU의 신조치는 미통상법과 제301조 및 슈퍼 301에 비하면 온건한 조치이고, 실제로 적용된 사례는 드물다. 더구나 이러한 신조치에 의해서 무역보복으로까지 이어진 사건은 아직 없다. 그러나 IPFI사건이나⁹⁾ AKZO사건¹⁰⁾ 등에서 보듯이 통상문제가 피해기업의 주도로 해결되고 있는 경향은 보여주고 있다. 국제경제에서 보호주의와 쌍무주의가 줄어들 것으로 보지 않는다면, EU에서도 신조치에 의한 통상정책이 고개를 들 것으로 본다.

4. EU 대외통상정책의 실제

(1) 특혜관세제도

EU의 통상정책은 기본적으로 세계적 차원의 자유무역을 추구하고 있다. 그것은 EU의 역외 무역장벽이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사실에서도 확인된다.¹¹⁾ 뿐만 아니라 앞 장에서 보았듯이 EU 집행위원회의 통상마찰 처리과정에서도 가능한 GATT 등 다자간 협상방식에 의존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EU의 대외통상정책은 다음 2가지 점에서 차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우선 EU의 무역정책은 유럽지향적이다. EU자체가 유럽국가간의 연합일 뿐만 아니라 EU가 맷고 있는 통상협정 자체도 유럽국가에 중심을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러하다. EU는 EFTA(유럽자유무

9) 1987년 음반제작회사인 IPFI社는 자사보유의 지적 재산권을 인도네시아가 침해하고 있다하여 EU 집행위원회에 제소하였다. 이에 EU 집행위원회는 인도네시아와의 쌍무협정을 맺었고, 인도네시아가 EU수준의 복사권(copyright)을 보호하기로 합의하여 사건은 일단락되었다.

10) 네덜란드의 화학회사인 AKZO社는 경쟁사인 미국의 Dupont社가 자사의 특허를 침해하고, 미국이 외국인기업을 차별대우하고 있다고 하여 EU집행위원회에 제소하였다. EU 위원회는 바로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고 GATT에 제소하여 시정판결을 받았다.

11) EU의 평균관세율은 미국과 일본에 비해 비슷하거나 다소 높은 편이지만 20%이상 고율관세 품목은 5개에 불과하다. GATT양허품목도 전 공산품수입품의 99%에 달하고 있다. 민충기, 『EC의 무역장벽』, (KIEP 정책연구 92-14, 1992), p.14 참조.

역연합) 국가와 유일하게 자유무역협정(1973)을 맺고 있으며, 1991년에는 EEA협정을 통해 유럽전역을 단일 경제통합체로 격상시키는 시도를 하고 있다. 둘째로 EU는 다른 어느 나라 또는 블록보다도 특혜무역협정이 많다. ACP국가(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연안의 저개발국), 중동 및 지중해 연안의 국가들, 동구권 국가 등등 많은 국가들과 차별적으로 대우하는 무역협정을 맺고 있다.

(표 3-5) EU의 주요 특혜무역협정

대상국	협정명	협정내용
EFTA	자유무역협정(1973) EEA 협정(1991)	관세인하 상품의 범유럽적 유통촉진
ACP	Yaounde 협정(1962) Romé 협정(1975)	ACP국가의 1차상품특혜 1차산품의 가격안정
Maghreb	특혜무역협정(1976)	전수입의 무관세
Mashreq	특혜무역협정(1977)	제조업상품의 무관세수입
이스라엘	특혜무역협정(1975)	무관세혜택
유고	특혜무역협정(1980)	무관세적용
개발도상국	GSP적용	특혜관세적용
OECD	—	최혜국관세적용

자료 : 민충기(1992), p.15.

(2) 대EFTA 통상정책

EU 무역의 대EFTA 의존도는 약 10%에 이르고 있다. EU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미국 7%, 일본 2-4%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면 EFTA는 EU 최대의 통상국이다. EFTA지역의 역내인구가 3,200만 명으로 미국의 15%에 불과하다는 사실에서 보면 EU와 EFTA간의 특수한 통상관계를 짐작할 수 있다.

EU의 대EFTA 통상정책은 EEA(European Economic Area)협정을 통해 이해할 수 있다. EEA협정의 목적은 EU와 EFTA의 무역 및 경제관계를 동등한 경쟁조건과 동일한 규칙하에 둘으로써 양 지역을 동질적인 경제지역으로 만들자는 것이다.¹²⁾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1984년 이미 달성한 자유무역지대를¹³⁾ 보다 심화하여, 서비

12) European Community, Agreement on the European Economic Area, 1991.

13) EU와 EFTA는 1973년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는데 1984년에 이르러 공산품의 무관세가 실시되었다.

스,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제도적으로 보장하며¹⁴⁾ 환경, 교육, 사회정책에서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EFTA회원국은 1,400여개의 EU 규정을 수용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국내법을 정비하기로 합의하였다. EU의 대EFTA 주요 통상정책을 EEA협정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 3가지로 요약된다:

- 상품교역의 자유화
- 노동, 자본, 서비스의 자유이동
- EU 경쟁법의 EFTA지역 적용

1) 상품교역의 자유화

공산품에 대해서는 일부품목을 제외한 대부분의 경우 이미 자유무역이 실시되고 있다. 따라서 EEA협정은 농산물 및 수산물 교역확대를 규정하고 있다. 농산물교역의 확대를 위해 매 2년마다 농산물의 교역조건을 검토하기로 결정하였다. 이를 토대로 농업분야의 교역장벽을 완화하기로 합의하였다. 원래 농업은 EEA협정에서 제외되었으나¹⁵⁾ 농업분야의 시장통합이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자 시장통합의 기초작업으로서 교역장벽의 점진적 완화를 합의하게 되었다. 수산물 분야에서도 관세인하가 합의되어, 1997년까지 수산물 수입관세를 70% 인하하기로 되어있다. 이외에 상품교역의 자유화를 위한 조치로 국경절차의 간소화, 기술장벽의 철폐, 공공조달의 상호확대, 반덤핑 및 보복관세의 배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2) 생산요소의 자유이동

EEA협정에 의해 1993년부터 EU 및 EFTA회원국 노동자들은 국적에 관계없이 EEA 전지역에 자유롭게 거주하거나, 공공부문을 제외한 전직종에서 노동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동시에 사회보장의 혜택도 받게 되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단일화를 위하여 학위나 자격증제도의 조화 등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기로 하였다. 자본시장의 단일화를 위하여 자본 및 서비스의 이동에 제한을 가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며, 1993년부터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산업의 단일면허제를 도입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EEA지역 어느 한 곳에서 금융업의 면허를 받으면 EEA 어느 지역에서도 영업활동이 보장되게 되었다.

14) 생산요소의 이동을 보장하는 단계에 이른다면 이는 자유무역지대나 관세동맹의 수준을 넘어 공동시장의 수준에 도달하는 것이다. 경제통합의 단계론에 대해서는 B. Balassa,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Allen & Unwin, London, 1969).

15) EU는 로마조약체제 출범 당시부터 공동농업정책(CAP)을 실시해 왔기 때문에 농업정책상 많은 수단(instrument)들이 개발되어 왔다. 따라서 농업분야의 공동보조가 역외국의 EU가입을 저지하는 장벽으로 작용해 왔다. 영국의 EC가입이 지연된 것도 공동농업정책때문이었다.

3) 경쟁법규의 적용

EFTA 회원국은 반트리스트, 독점적 지위의 남용, 기업합병 및 매수, 공공조달, 정부보조금 등 경쟁정책에 관한 한 EU의 경제법규에 따른다. 기업합병에 관한 통제의 권한을 EU에 위임한다.

이상에서 보았듯이 EU의 대유럽 통상정책은 유럽전역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발전시키는 것이다. EU는 비EU 유럽국가를 상대로 EU 가입협상을 적극적으로 벌이게 될 것으로 본다. 물론 동유럽의 성공적인 시장경제로의 전환이 관건이 되겠지만 21세기 초에는 동유럽까지 포함한 ‘범유럽경제권’의 탄생을 보게 될 것이다. EU의 역내시장이 확대되면 될수록 역외시장에 대한 차별적 조치는 강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UR의 타결과 WTO체제의 출범으로 자유무역에 대한 기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역외 지역국과의 상호주의(bilateralism)에 입각한 통상정책은 심화될 것이 분명하다.

(3) EU의 대미·아시아 통상정책

EU의 주요 교역파트너는 EFTA지역외 북미, 일본 등 동아시아지역이다. 1990년 EU의 역외수출은 약 4,300억 ECU(European Currency Unit), 역외국으로부터의 수입은 약 4500억 ECU에 달해 약 200억 ECU 정도의 무역수지 적자를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도 대미무역은 균형을 보이고 있으며, 대일무역에서 약 200억 ECU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EU 역외통상정책의 기조는 GATT체제하의 다자주의에 두면서 현안별로 쌍무주의를 취하고 있다.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서는 항공산업보조금,¹⁶⁾ 농업보조금,¹⁷⁾ 정부조달,¹⁸⁾ 사정각미디어산업 등에서 통상마찰을 보이고 있다. 기본적으로 미국과의 무역수지가 균형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마찰의 정도는 심각하지는 않다고 본다. EU 역외 통상정책의 표적은 역시 일본이 될 가능성이 높다. 대일무역에서 매년 200억 ECU의 적자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그러하다. EU·일본 간의 통상마찰의 쟁점으로서 일본의 과도한 무역흑자 외에도, 일본의 전략적 산업정책, 금융산업의 보호, 정부발주공사의 유럽기업차별, 일본기업의 대유럽 투자의 문제점(screw driver plant, indirect

16) 美-EU간 항공산업에 대한 보조금논쟁은 8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었다. 미국은 Airbus社에 대한 EU의 지원을 비난하였고, EU(특히 프랑스)는 미국의 군용기구매국에 대한 차관을 비난하였다.

17) EU농산물 중 파인생산물에 대한 수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EU는 수출보조금을 지급하여 왔다. 이에 미국은 EU가 제3국시장에서 가격덤핑을 자행하고 있다고 비난하였는데 UR협상에서 수출보조금을 우선적으로 철폐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18) 미국은 EU회원국들이 정부가 발주하는 프로젝트에 미국기업의 참여를 인위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표 3-6) EU의 교역국별 수출입구조 (1990)

(단위 : %)

교역대상국	수출	수입
총액	4,300억 ECU	4,500억 ECU
EFTA지역	25.9	22.8
미국	18.8	18.7
일본	5.0	10.3
남미	3.6	5.8
ACP국가	3.4	4.4
구소련	2.9	3.4

자료 : 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ies, eurostat(1992)

(표 3-7) EU의 대 일본무역수지 (1980-1990)

(단위 : 억 달러)

	1980	1989	1990
수출	167	231	285
수입	197	526	607
무역수지	-30	-295	-322

자료 : GATT, International Trade 90-91(1992)

dumping) 등이 제기되고 있다(El-Agraa, 1990: 430).

5. EU 통상정책의 전망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대외무역정책은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 그것은 1993년 초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통화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EFTA국가와의 자유무역을 명시한 EEA 조약의 발효, 독일의 통합가속, 그리고 UR의 종결이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UR의 종결과 WTO 신무역체제의 성립으로 세계적 차원의 무역자유화가 기대된다고 하지만, 아직 유럽연합의 통상정책에는 보호주의적인 색채가 많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종전의 EC(유럽공동체)는 EU(유럽연합)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면에서 통상정책상의 중앙집권적 경향을 보이리라 예상할 수 있다.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가 반드시 무역자유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주도국의 입장에 따라 ‘집단적 보호주의(collective protectionism)’가 더욱 강해

질 우려도 있다. 또한 범유럽주의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정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EEA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은 더욱 유럽지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70%가 넘은 유럽연합의 대유럽 무역의준도가 밀하듯이 유럽외 지역과의 교역에서 소극적이거나 보호주의적 경향을 떨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 통일의 가속화 동구권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범유럽적 경제통합과 역외차별주의가 강화될 우려가 있다.

요약하자면 EU 통상정책의 기조는 자유무역이지만 세계적 차원의 무차별주의는 아니라는 것이다. 단적으로 위에서 지적한대로 유럽과 그 주변국가간의 특수한 통상관계를 보면 알 수 있다. 그것은 영국, 프랑스 등 과거 식민지를 많이 가진 유럽국가들이 과거의 전통적 관계를 단절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이유이지만, EU 자체의 블록지향적 성격도 무시할 수 없는 이유이다.

결국 EU 통상정책의 방향은 다음 두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유럽 전지역의 통합을 촉진하여 역내시장을 확대하는 적극적인 시장개방정책을 예상할 수 있다. 이는 EEA조약에서 보듯이 전유럽의 시장단일화를 추구하는 측면에서 본 것이다. 범유럽권의 경제통합은 EFTA회원국의 EU흡수가입으로 진전될 것이다. 이미 노르웨이는 EU가입을 이미 결정한 바 있고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등도 비슷한 준비를 하고 있다. 더구나 동구권제국 중 폴란드와 헝가리는 매우 적극적인 가입의사를 밝히고 있다. 이렇게 보면 EU의 시장개방정책은 유럽국가에게 우선적으로 적용될 것이다. 둘째, 비유럽국가와의 통상에는 다소 소극적으로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북미, 일본 등과의 통상관계에서는 방어적 자세를 계속 취해갈 것이다. 더구나 우리나라 등 동아시아 국가의 시장공세를 적극 봉쇄하면서 동아시아로의 진출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개방압력을 행사할 것으로 본다.

UR타결과 WTO 신무역기구의 출범이 EU의 역외 통상정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에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무역을 제한해왔던 여러가지 회색조치의 완화 내지 철폐가 기대되고, 철강, 반도체 등에서 무관세화가 추진되고 있지만 50-60년대의 자유무역에로의 회귀는 불가능하다고 본다. 그것은 EU의 실업률이 어느 지역보다도 높고, EU의 경쟁력회복에 최우선 순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EU가 우리나라에 공여 하던 GSP중지를 결정한 것이나, 한국산 자동차수입규제를 논의하고 있는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프랑스는 UR합의의 대가로 미국의 '수퍼 301'에 해당하는 강력한 대응조치를 취하도록 유럽연합 집행부에 압력을 가하고 있다. 이런 사례들이 앞서 언급한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에 대한 잠재적 위협요소가 될 것이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EU의 통상정책은 WTO 신무역체제하에서 기대되는 '다자적 무역자유화'(multilateral liberalisation)와 이에 대항하는 '쌍무적 보호주의'(bilateral

protectionism)의 조절(trade-off)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으로는 시장확대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방어적 성격을 띠는 소위 ‘미니주의적 무역자유화’(minilateral liberalisation)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IV. 유럽연합(EU)의 산업정책

1. EU 산업정책의 개요

유럽단일의정서의 비준에 이어 유럽연합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이 마스트리히트에서 1992년 2월 7일 비준됨으로써 유럽은 그 통합을 한층 진전시키고 있다. 이제 유럽연합이 경제통합의 효과를 충분히 볼 수 있다면 20세기에 들어 미국에 빼앗겼던 유럽의 영광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유럽경제통합의 성공을 위한 관건 중 하나가 유럽의 산업정책이다.

유럽연합의 산업정책은 통상정책과도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며 유럽이외의 타지역의 정책형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산업정책의 구체적인 수단을 대부분 개별국가에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를 국가들의 정책수단을 조정하는 역할이 필요하게 된다. 바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유럽연합의 과업이며, 이것은 유럽연합의 핵심된 원칙인 보충성의 원칙(Principle of Subsidiarity)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본 장에서는 이렇게 유럽연합국들의 경제통합으로 인해 필요하게 된 공동산업정책(Common Industrial Policy)에 관하여 논하기로 한다.

전통적으로 산업정책이란 시장기구가 이루어 놓은 부문간 자원배분에 영향을 주어 부문간 자원의 재배분을 가져오는 정책을 의미한다. 자원배분을 시장메커니즘에만 의존하지 않는 이론적 배경에는 후생경제학에서 논하는 시장실패의 여러 요인으로 외부성, 공공재, 불완전한 정보 및 불확실성, 독점, 고용의 안정, 국제수지의 균형, 그리고 무역이론에서 주로 논의되는 유치산업보호론 등의 경제적 요인과 국방이나 환경보존, 지역발전 등의 비경제적 요인이 있다.

산업부문간 자원재배분으로서의 산업정책에는 현재소비와 미래소비의 배분을 위한 투자재부문과 소비재부문간의 자원재배분도 물론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전통적 의미에서의 산업정책은 경제이론적으로 보았을 때 정태적 자원재배분의 견지에 머물고 있다.

산업정책을 좀 더 폭넓게 해석해서 산업의 동태적 차원에서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높이는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물론 이것은 개방경제를 전제로 하고 있다. 타국산업과의 국제적 경쟁에서 자국산업이 지속적으로 경쟁적 성공을 이룩하거나 경쟁력을 창조

할 때 산업의 국제경쟁력이 있다고 할 수 있다(M. Porter, 1990). 이러한 차원의 산업정책이 근래에 들어와서 더욱 관심을 끌게 되는 것은 일본이 과거에 지속적인 산업적 성공을 이루한 것은 정부의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는 데에서 연유하기도 한다.

우리가 여기서 다루려고 하는 산업정책은 산업부문간 자원의 재배분을 의미하는 산업정책만이 아니고 산업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도 포함하는 것이다. 근래에 재편되고 있는 유럽연합의 산업정책은 이러한 포괄적 차원에서의 산업정책을 의미하고 있다.

2. EU산업정책의 전개

(1) 로마조약과 EU산업정책

1957년에 체결된 로마조약은 EU형성의 기본적인 근거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산업정책과 관련되는 내용으로서 다음과 같은 것을 다루고 있다. 즉 자원, 지배적 기업, 카르텔, 기업설립권한, 자본과 노동의 자유이동, 덤핑, 그리고 공동시장의 창설 그 자체 등을 다루고 있다. 하지만 로마조약이 다루는 내용들은 포괄적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조약이 다루는 영역들간의 상호관계에 대해서도 규정하지 않고 있었다.

로마조약의 창시자들은 공동시장의 확립 그 자체가 산업정책이어서 공동시장의 탄생과 더불어 동반되는 변화가 산업정책적 효과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EU 집행위원회는 산업정책에 대한 최초의 언급에서 그러한 정책의 공동체적 측면을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산업적 행동의 새로운 체제는 공동체 그 자체이다. 그러므로 공동체는 그것의 산업구조를 재검토해 보아야 하며 회원국들의 정책시행들을 조정하여야 한다. 또한 여기에 필요한 수단들을 강구하여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EC 집행위원회, 1967).”

1960년대에는 단일시장의 형성과 법률적 그리고 재정적 조화를 통한 유럽기업의 형성이 그 정책의 주요 강조점이었다. 또한 산업구조 등과 같은 것에 주요 배려가 있었다. 1960년대의 EU 산업정책에 있어서 두가지 점이 특기할 만하다(B.T Bayliss and A. M El-Agraa, 1992).

첫째로 공동시장의 형성을 통해서 촉진될 수 있는 새로운 산업정책의 형성을 위한 자발적 움직임이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의 존재에 관하여 실질적으로 무관심하였다. 두번째로 발전 도상에 있는 지역에 비하여 기존의 번영지역에 있어서의 산업적 쇠퇴는 산업의 지역적 측면과 더불어 구조적 측면을 부각시키게 되었다.

(2) EU 산업정책의 전개

1970년 3월 집행위원회는 산업정책 분야에 있어서의 행동을 자극하며, 산업정책의 구조적 측면의 중요성을 주장하기 위해 EU의 산업정책에 관한 메모렌덤을 제시했다.

메모렌덤에서 제시되고 있는 선택된 공동체 산업정책의 목표는 기업들로 하여금 공동시장의 존재와 규모로부터 최대한의 장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다. 이러한 목표하에 다음과 같은 6개의 주요 주제가 제시되었다.

- 가. 단일시장에 잔존하는 장벽의 제거
- 나. 회사법과 조세의 조화와 EC 자본시장의 형성
- 다. 공동시장의 필요에 적응시키는 산업의 재구성
- 라. 기술의 증진
- 마. 산업발전의 사회적 그리고 지역적 측면
- 바. 역외국들과의 관계

이러한 메모렌덤의 내용과 관련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자 메모렌덤 발표 3년 후에 집행위원회는 위와 같은 전반적 전략에 집착하기보다는 산업정책의 특수한 측면에 관심을 집중하여 그 분야의 활동을 활성화를 시도하였다. 1973년 5월에 그 전년도의 파리정상회담으로부터의 요청에 의해 집행위원회는 기술정책 및 산업전략의 분야에서의 활동프로그램을 EC 각료회의에 제출했다.

그 프로그램은 다음과 같은 9개의 행동영역에 집중되어 있다(B.T Bayliss and A. M. EI-Agraa, 1992).

- 가. 무역에 대한 기술적 장벽의 제거
- 나. 공공계약의 자유화
- 다. 기업들간 협조에 대한 재정적 장벽의 제거
- 라. 기업들간 협조에 대한 법률적 장벽의 제거
- 마. 첨단기술의 진흥
- 바. 특정 산업분야의 재구조화 및 현대화
- 사. 집중화 및 경쟁
- 아. 수출과 신용보험
- 자. (특히 비광물성의) 천연자원의 공급

하지만 3년 전의 메모렌덤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진전을 보지 못하

다 1984년에 가서야 중요한 진전이 있었다. 1984년에 정보기술분야에 유럽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프로그램인 ESPRIT 프로그램, 골격(Framework) 프로그램, 그리고 다수의 특수한 연구프로그램의 채택 등의 연구개발 정책의 재활성화가 있었다. 또 그 해에 단일공동체 관세의 문서가 준비되었고 1985년 봄에는 소위 기술적 조화(Technical Harmonization)에 대한 새로운 접근의 채택이 있었다.

이러한 진전들이 1985년 말에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에 관하여 회원국들이 동의함으로써 실제화되었다. 예산에 관한 논쟁과 새로운 회원의 가입에 관하여 오랜 협상 후에 회원국들은 공동체 의사결정의 핵심으로 되돌아 왔다. 즉 유럽단일의정서는 백서(White Paper)의 중심목표, 다시 말해서 경계없는 지역의 성취라는 목표를 명시적으로 채택하게 된 것이다.

유럽단일의정서는 공동체의 권한을 확장시켜 새로운 분야들 즉, 연구, 환경, 지역에 관한 정책과 사회정책의 일정한 측면들의 분야에서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확장시켰다. 그러나 유럽단일의정서의 중심목표는 의사결정의 새로운 과정을 허용함으로써 공동체의 행동을 증진시키는 것이다. 만장일치제에서 오는 의사결정의 지체를 경험한 회원국들은 내부시장완성을 위해서는 새로운 의사결정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감하였다. 그리하여 수정된 다수결투표제(Modified Majority Voting)가 여러 영역으로 확장되었다.

(3) 유럽단일의정서의 EU 산업정책에의 영향

모든 산업정책의 수단 중 1/9이 국가적 수단에서 시행된다. 따라서 공동체는 국가정책의 조정자로서, 유럽수준의 협조 증진자로서, 그리고 경제구조의 신축성을 촉진시키는 수단의 유발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한다.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여 공동체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단일의정서에는 공공개입의 중앙집중화 모델에서(공동체가 중앙관료기구로서 역할을 하면서 직접적으로 정책을 경영하고 국가행정부를 관장함) 규칙을 세우고(다른 기관들이 강제하는 것들은 수용하면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여러 국가와 여러 지역들 간의 협조에 기반을 둔 접근으로 변화시켰다. 이같이 분권화된 정치권력모델에서 중앙당국은 지역당국들 상호간의 조화를 촉진시키는 기본 기능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기능은 상호인정의 원칙(the Principle of Reciprocal Recognition)과 제도적 조화의 원칙(the Principle of Institutional Harmonization)에 기반하고 있다. 또 중앙당국은 일개 지역당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수행이 필요한 경우에만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 은 보충성의 원칙(the Principle of Subsidiarity)이라고 할 수 있다.

① 정부정책의 조정은 신종산업뿐만 아니고 사양산업에 있어서도 유익한 영향을 가

쳐올 수 있다. 국가보조의 통제는 이러한 상황에서 특별히 중요하다. 국가보조는 단일 국가 수준이 아닌 공동체 수준에서 공동시장과 상호 일관성이 있는가의 평가가 내려져야만 이루어질 수 있으며, 공공기금이 기업간 경쟁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데에는 사용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철강산업에 있어서 제조능력규모의 통일화된 감소(예를 들어 투자계획은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승인되어야 하며 총제조능력규모의 감소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는 국가산업정책사이의 자기소멸적인 경쟁을 피하고 더 효율적인 선택과정을 회복시켜줄 수 있다. 첨단산업에서의 조정은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이용하여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것을 허용하는 유럽 기술표준화를 위한 골격을 마련해 준다. 기술적 조화에 대한 부문별 접근을 포기하고 좀더 전체적인 전략을 취하는 것이 이 분야에 있어서 바람직하다. 조화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재화와 서비스의 자유 이동을 허용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동일한 목적들(예를 들어 건강, 안전 등)을 위한 국가적 규제들을 상호 인정하는 것은 의사결정과정의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기술적으로 상세한 수준까지 만장일치를 구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어떤 국가의 이익을 침해하기 마련이다. 따라서 재화가 공동체에 자유롭게 이동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전체 이익에 입각한 기본적인 규정만 충족하도록 각료회의가 채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렇지만 국가적 규제의 공존이 경제적 견지에서 보았을 때 항상 좋은 것만은 아니다. 생산의 공통적 표준이 전기통신같은 부문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되기 때문에 국가적 규제를 조화시키는 것이 필요하게 된다. 규정(directive)만이 아니고 규제(regulation)을 채택할 가능성이 이 분야에 있어서 더 많은 신축성을 부여한다.¹⁹⁾

로마조약에서 다루어진 조화에 관한 수단에 있어서 재정정책, 사람의 자유이동, 외교용인의 윤리에 관한 것을 제외하고는 유럽단일의정서에서 수정된 다수결 투표제가 허용되었다. 그러나 회원국은 국가적으로 중대한 이익이 위태로울 때는 조화를 위한 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 하지만 이 가능성은 회원국이 미리 신고를 해야하며 집행위원회에서 그 예외항목의 정당성에 대한 인정이 있어야 실행이 된다.

② 임계적 규모(critical mass)의 성취가 중요한 전제조건일 때 기업들간의 협조는 바람직스러울 수 있다. 즉 규모의 경제라든지, 학습을 통한 효율성이 중요할 때 혹은 자원배분의 관리적 방식이 시장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보다 더 낮은 비용과 더 높은 이윤을 가져오게 할 수 있을 때에는 기업들간의 협조는 필요한 것이다. 우주산업, 통신산업 등의 연구개발은 공동적 사업추진을 통해서 비용과 위험을 분산시킬 수 있

19) 유럽의정서 공포에 있어서 회원국들은 조화를 이루하기 위해서 현존하는 국가적 규제(regulation)의 어떤 부분이 수정이 필요한가를 표명하였다. 더 자세한 것은 Corbett(1987, p.262) 참조할 것.

으며 시장에 대한 접근을 획득할 수 있다. 여러 다른 나라들로부터 온 참여자들에 의해 추진되는 공동연구 프로그램은 순전히 국가적 이익에만 관심을 맞추는 것을 회피하고 정보의 확산과 공동적 기술기반의 발전을 촉진한다. 이러한 목표로 유럽차원에서 정보기술의 분야에서 이루어지는 연구 프로그램인 ESPRIT 그리고 전기통신분야에서의 연구 프로그램인 RACE는 이러한 사실을 반영한 것이다. 19개국의 유럽국가들의 공동사업추진 프로그램인 EUREKA는 이 공동체적 접근과 국가이익의 수렴을 강조한다. 하지만 이러한 수렴은 공동체 차원의 행동수단을 실제적으로 증진시키는 데까지는 다다르지 못했다.

유럽단일의정서 형성을 위한 협상에서 공동체차원의 행동의 여러 형태(공동체 프로그램, 공동체와는 다른 기구 혹은 회원국가 프로그램에 있어서 공동체의 참여, 공동체 프로그램에 제3자의 참여가능성)에 관하여 신속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졌다(Elizabeth De Ghellinch, 1990). 하지만 의사결정의 방식에 있어서는 상호불일치가 있었다. 독일은 특별히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였다. 협상의 결과로 다년도 골격 프로그램(Multiannual framework program)의 채택과 구체적 프로그램의 채택과 수행은 그리고 재무에 관한 의사결정은 만장일치에 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었다. 그 골격프로그램은 공동체의 금융적 참여의 양과 그 것의 분야별 배분에 관한 것 등 상당히 세부적으로까지 규정하고 있다.

3. 유럽연합의 신산업정책

(1) 신산업정책의 필요성과 방향

80년대 EU 산업의 성과는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²⁰⁾ 하지만 오늘날 단기적·중기적인 경제의 전망은 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지구적 도전과 여러 가지의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에 직면해 있음을 알려준다.

경쟁은 점점 더 지구적이 되고 EU 내부적으로나 세계적으로나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 기술적인 노하우는 지속적으로 더 높은 수준의 투자를 요구하며 제품의 수명주기를 단축하고 있다. 새롭게 부상되는 몇몇 주요 핵심적인 산업들은(첨단물질, 첨단전

20) EU의 GDP 성장률은 다음과 같다.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1990	1991	1992(1)	1993(2)
0.7	1.6	2.4	2.4	2.8	2.8	4.0	3.3	2.8	1.4	1.1	0.7

(1) 1993년 2월 추정치 (2) 1993년 2월 예측치

자료 : EC 집행위원회, Panorama of EC Industry 1993년의 p.16에서 발췌인용.

자, 진보된 전자와 정보시스템, 종합화된 제조업체제, 생명과학용 등) 공동체가 강점을 가지고 있는 부문들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산업적 응용은 점점 더 어려워진다. 기술적 진보의 첨단에 있는 자들만이 경쟁성을 유지하며 개선할 수 있다. 이것은 제품 그 자체와 생산기술 모두에 적용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구적 기업전략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 그 결과로 생산의 지역화는 생산조건의 체계적인 비교를 통해서 결정된다. 사용가능한 저축에 대한 강력한 경쟁적 요구가 나타나면서 제조업 투자를 위한 거시경제적 조건은 더욱 어려워지게 됐다. 이것과 관련하여 세 가지의 주요한 사건전개가 부각되고 있다. ① 환경적 고려의 점증하는 역할, ② 중유럽과 동유럽에 있어서 건전하고 경쟁적인 경제를 재건설할 필요성, 그리고 ③ 인구의 노령화에 대처해야 하는 도전 등이 그것이다. 첫째와 둘째 것은 대규모적인 투자를 요하며, 세번째 것은 노인들에 대한 사회적 필요성과 추가적 재원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저축을 유인하기 위해서는 사적 투자의 이윤성이 매우 중요해진다. 그것의 거시경제적 조건은 근래에 EU에서 팔복하게 진전됐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과 석유가격에 있어서 외부적 충격에 대한 민감성도 높게 유지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동체는 개발도상국의 상황에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들의 채무, 어떤 원재료 가격의 저하, 전통적인 제품의 수출에서 직면되는 어려움 등으로 인한 그들 경제의 취약성으로 인하여 외부적 충격에 더욱 민감하다. 개발도상국들이 이런 위기에서 해쳐 나오도록 돋는 것이 EU의 자기이익에 부합된다. 이것은 세계적인 혼란에서 벗어나기 위한 국제적 협조를 더욱 중요하게 하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들의 조합은 EU산업에 대한 여러가지의 주요 도전을 제시한다.

① EU에 있어서 높은 생활수준과 고용은 산업이 국제적 경쟁에서 충분히 앞서 나갈 수 있는 능력에 계속적으로 의존할 것이다. 이것은 기술적 진보성, 장족의 생산성 진보, 인적 자본에 대한 충분한 투자, 급속한 구조적 변화속도의 수용 등을 요구한다.

② 기업의 장비와 기술적 노하우 그리고 교육·훈련에 투자할 수 있는 능력은 계속적으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기업들은 금융자원의 적정량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하며, 그것은 이윤수준을 유지시켜 주는 것이 우선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과 세금부문에서 이 결과가 충분히 인식되어야 한다.

③ 기술적인 혁신을 효율적으로 습득하는 능력은 중요한 경쟁우위를 제공하여 줄 것이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산업의 모든 부문에 있어서 혁신을 이룩 하려는 산업의 능력이다.

④ 기술적인 변화와 새로운 작업조직을 습득할 인적 자원을 개발할 능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미래의 EU산업의 기능적 필요를 예측하는 더 큰 능력을 요구한다.

(2) EU 신산업정책

유럽단일시장의 형성은 그 자체로서 기업들이 행동방식에 변화를 요구한다. 그러나 EU 내외의 새로운 환경에 부응하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공동체 전체로서 취해져야 할 산업정책, 즉 공동산업정책을 발전시켜왔다. 이에 근거하여 EU 집행위원회는 EU의 공동산업정책을 입안하였다. 이미 논의되었듯이 유럽단일의정서에는 이러한 공동산업정책을 보충성의 원칙, 상호인정의 원칙, 제도적 조화의 원칙에 기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이를 근거로 하여 EU집행위원회는 1990년 11월 경쟁적 환경하의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에 대하여 발표했다(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1991). 이 공동산업정책에 있어서 올바른 기업활동을 위한 환경의 창조와 적극적이고 개방적인 접근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공동산업정책의 접근은 근래에 EU에서의 경험과 유럽경제의 주요 특색에 의존한다. 산업정책에 대한 산업부문별 접근은 일시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결국은 구조적 조정을 연기시키게 되고 일자리의 손실을 가져왔다. 국제무역의 개방과 그러한 교역을 관장하는 규칙에 대한 존중은 EU의 산업보호를 위한 방어적 정책을 배제한다. 경험에 의하면 모두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경쟁적 환경이 경쟁적 산업을 배양시키는 가장 좋은 조건이다. EU의 신산업정책은 다음 핵심적인 요소들 사이의 적절한 균형의 기반위에 확립되어 있다.

첫째,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전제조건의 확립으로서 효율적으로 기능하는 시장경제에 대한 안정적이고 장기적인 조건을 형성하는 것, 즉 경쟁적 경제환경의 유지와 교육과 사회적 유대의 높은 수준을 달성하여야 한다.

둘째, 구조적 조정을 위한 주요 촉진제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 점에 있어서는 내부 시장의 완성은 전략적 역할을 한다. 내부 회원국가의 자체제도의 본질적인 부문들의 조화와 상호 인정의 원칙에 기반하여 확립된 내부시장 프로그램은 산업적 발전을 위한 최적의 기회를 제공한다.

셋째, 구조적 조정을 가속화시키고 경쟁을 강화시키는 도구를 개발해야 한다.

이러한 산업정책에 대한 공동체적 접근의 이면에는 시장이 가지고 있는 효율적인 자원배분의 기능을 최대한 활용하려는 의지가 깔려있다.

EU의 신산업정책은 산업의 구조적 조정에 관련되는 모든 정책의 효과적이며 일관성있는 수행에 관한 것이다. 1991년 11월에 위와 같은 새로운 접근은 EU 각료회의(EU Council)에 의해서 승인되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순서로 EU 집행위원회의 산업정책에 대한 새로운 접근을 구체적으로 알아보자.

1)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필요 전제조건의 확립

산업이 구조적 조정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여러 전제조건들이 충족되어야 한다.

① 경쟁적 환경의 확보

경쟁적 조건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것들이 핵심적인 요소이다.

첫째, 매우 큰 집중에 대해서는 각별한 경계를 기울여야 한다. 하지만 그러한 경계는 국제적 경쟁으로 인하여 부과되는 규모에 대한 필요와 내부단일시장에서의 사업자 간의 균형적이고 경쟁적 조건의 유지에 필요한 것들의 최적조합을 이루어내야 한다.

시장의 지구화는 더 확대된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할뿐만 아니라 좀더 좁게 정의된 영역에서의 특화도 가능케 한다. 지구화의 경향에 직면하여 경쟁이 행해지는 시장의 범위에 대해서 좀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게 됐다. 국제적으로 성장한 산업을 가진 나라들을 살펴보면 같은 산업안에 경쟁적인 여러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것이 나타났다. 그들의 국내시장이 매우 좁은 경우에도 실제로 국내에서의 강한 경쟁은 외국에서의 성공을 위한 매우 중요한 요소로 나타나고 있다. 내부시장의 완성은 국제적 경쟁을 위한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가능케 하는 동시에 시장에서의 경쟁이 유효하도록 한다. 경쟁의 조건은 부문마다 그리고 시간을 통해서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러한 조건을 지속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이 분야에서 중요한 법적 장치가 경쟁법이다. 이 경쟁법에 의한 규제는 내부시장에서의 경쟁을 위한 적절한 기업전략의 추구에 필요한 법률적 안전성과 신속성을 제공한다. 이 경쟁법은 경쟁이 유효하게 나타나는 이상, 기업의 인수·합병에 의한 성장의 가능성을 허용하여야 한다. 즉 경쟁법에 의한 규제가 경쟁력을 저해하지 않는 이상, 합병의 신속한 승인을 보장해야 한다.

둘째, 공공당국에 의한 금융적 지원은 면밀히 검토되고 통제되어야 한다. 다른 형태의 보호주의가 퇴색됨에 따라 정부보조금의 반경쟁적 메커니즘으로서의 중요성은 점증하고 있다. 경쟁에 대한 부정적인 효과 이외에도 정부보조금은 공동체 내부적으로 경제적 접근에 심각한 장애를 가져올 수 있다. 규모가 크며 잘 발전된 나라들은 보조금을 통한 산업에 대한 영향에서도 공동체의 주변국들인 덜 발달된 회원국가들을 항상 능가할 수 있을 것이다. 공동체 국가 중에서 가장 큰 4개의 국가는 공동체 각국에 주어진 총 보조의 88%를 구성한다. 산업정책의 목표는 그러한 보조금의 통제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조건을 창조해야 한다. 정부지출이 공동체의 경쟁력에 긍정적인 기여를 하기보다는 구조적 조정을 반영하는 은밀한 반경쟁적 메커니즘이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더구나 유대성을 더욱 증진시키는 공동체정책의 효과는 중심적이며 더 번영하는 지역들에 대한 보조의 계속적인 감소로 나타나야 한다.

국제적인 보조금경쟁을 끝내는 것이 공동체 내의 정부보조금의 지속적인 감소를 위

한 중요한 전제조건이다. 정부보조금에 대한 더 엄격한 규율이 공동체의 국제적인 파트너에 의해서도 지켜져야 한다.

② 안정적인 경제환경의 유지

가격메커니즘의 기능을 증진시키는 안정적인 경제환경으로의 환원이 공동체의 산업적 회복을 가져왔다. 이러한 환경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특히 저축과 투자를 계속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 재정정책은 기업의 투자능력과 시장조건에 적응하는 능력에 큰 영향을 미친다. 한편으로 공공당국은 그들의 활동을 위해서 기업에 대한 직접세 부과 등을 포함하는 제수단을 통해서 자금을 거두어 들여야 한다. 반면에 재정적 조치, 특히 이윤과 감가상각에 대한 정책은 기업이 투자를 위한 자금의 비용과 가용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 국제적 경쟁이 심화되고 기술적 혁신에 의해 자본이 신속 급격하게 감가상각될 때 유보이윤과 감가상각에 대한 재정적 조치는 더욱 중요해진다.

③ 높은 수준의 교육적 달성

높은 수준의 교육적 달성은 선진경제에서 필요로 하는 인적 자본에 대한 기초가 된다. 지식의 수준 그 자체보다는 새로운 기술을 만들어내고 동화시키는 능력, 조직적 방법, 문화적 다양성이 효과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본 전제가 된다. 기능을 계속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해서는 인생전체를 통해서 배우려는 자세가 중요하다. 산업의 구조적 조정과정에서 숙련된 사람들의 수급에 있어서 심각한 불균형이 나타났다. 전반적 교육(all-round education)이 유럽의 산업을 위한 중요한 장점이 된다. 이것은 학교졸업 후의 특화된 지식의 계속적인 개발을 통해서 보완적으로 강화될 수 있다. 영속적이며 시장지향적인 연구와 훈련이 특화된 제품들의 시장에서 경쟁적 우위를 성취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④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 유대성의 증진

유럽지역의 다양성은 이점도 제공한다. 대규모 시장의 효과는 지역들간의 경제적 유대성에 의하여 더 커질 수 있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이 1992년 단일시장에 적응하기 위해서는 공동체로부터의 자금지원이 요구된다. 공동체의 구조자금은 이런 목적 때문에 제고되었다. 그들 지역이 산업적 활동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이 유럽내부시장만이 아니라 유럽이외의 지역에서 경쟁하는데 필요한 수준으로까지 확충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산업체와 공공당국의 대화가 필수적 요소이다.

유연하고, 혁신적이며, 지식집약적인 산업은 강한 사회적 유대를 필요로 한다. 기업의 의사결정에서 고용인에 대한 정보, 자문 그리고 그들의 참여는 기업의 의사결정에 신뢰의 확보와 새로운 작업방법의 신속한 도입, 기업내부에서의 인적 자원의 재활용 및 배치 등을 도움으로써 구조적 조정을 촉진시킨다. 기업내부적으로 모든 수준의 직책에 적절한 정보와 자문을 제공하는 것은 그들의 동기부여와 그들의 수용성을 변화시킨다.

관련 당사자들의 필요간에 적절한 균형을 유지하는 것은 그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건설적인 역할을 한다.

적절한 수준의 사회적 보호가 변화의 위험성을 감소시키고 유동성을 촉진시키는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줄 때 구조조정은 더욱 쉽게 수행될 수 있다. 혁신적 성격의 여러 가지 형태를 취할 수 있는 신축적 근로시간은 관련되는 수준에 따라서 교섭과 합의의 문제가 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일자리를 촉진할 뿐만 아니라 변화하는 시장조건에 따라 생산도구를 더 잘 활용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근로조건의 개선에 기여한다. 신축적 노동시간은 근로자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 그의 시간을 작업장 안이나 작업장 밖에서 더욱 잘 조직할 수 있도록 한다. 물론 이러한 유대성의 강화는 기업측의 입장에서 볼 때 비용없이 이루어질 수 없으나 이러한 비용은 그러한 변화로부터 오는 편익의 견지에서 보아야 하며 그들 행동의 정상적 수행을 위한 필요조건으로 간주해야 한다. 더 높은 사회적 비용을 이에 상응한 생산성 제고로 상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⑤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

환경적 차원은 그 자체로서 내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속적 경제성장은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에 의해 유지될 수 있다. 그러므로 적절한 수준의 환경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근래에는 세계적으로 환경의 가치에 대한 인식 제고로 국제적 차원에서 상품의 환경적 우호성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제품의 환경적 우호성에서 선두적인 위치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환경우호적 제품 생산을 통해 시장에서 선두적 위치를 확보하는 것은 국제경쟁력을 위해서도 중요한 것이다.

2) 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촉매제의 제공

어떤 정책들은 변화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산업정책에 있어서 특별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기업의 이니셔티브를 촉진하며 공동체의 이익에 기반을 둔 장기적 전망의 방향에서 이들 기업을 인도하는 정책이 선택되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자극적인 경제환경을 확립하는 것은 시행될 정책과 그에 따르는 의사결정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합의를 필요로 한다.

① 변화요소로서의 내부시장

필요한 규모와 질을 가진 자국시장을 마련해 준다는 차원에서 내부시장의 완성에 관한 프로그램은 그 자체로서 매우 훌륭한 산업정책이다. 세계적 수준에서의 경쟁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때에 자국시장의 중요성은 오히려 강화되고 있다. 자국시장에서 산업이 건실히 육성되면 외국으로의 진출이 보다 용이해지는 것이다.

자국시장에서의 투자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를 통하여 이룩되는 장점은 대규모 시장에서만이 아니라 특화된 제화의 생산에도 적용된다. 시장의 규모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절이다. 공동체 내 각국의 문화적 다양성은 각각의 문화적 토양 속에서 개발된 특화된 제품의 다양성의 폭을 가져오게 한다. 상호존중의 원칙하에 실시되는 내부시장 프로그램은 그런 제품들에 대한 시장을 넓혀주는 것이다.

② 표준과 제품의 질

유럽표준은 EU내 교역의 기술적 장벽을 제거하는 목적을 위해서도 요구될 뿐만 아니라 이것이 점차로 산업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핵심적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표준화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경쟁력을 증가시킨다.

가. 생산비용을 감소시킨다.

나. 친근감에 의하여 재화에 대한 고객의 선호를 형성시킨다.

다. 새로운 기술로 제조된 제품시장의 출현을 가능케 한다.

시장이 지구적인 산업에 있어서는 유럽표준이 국제적인 표준과 상호부합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공인된 표준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초기에 유럽표준의 차원에서 표준을 정하여 이것이 국제적 표준의 제정으로 연결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시장의 필요에 부응하려면 새로운 기술에 대한 표준화는 좀더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③ 공공구입

공공구입이 산업경쟁력에 있어서 중요한 이유는 다음의 세가지로 요약된다.

첫째는 공공구매의 거대한 규모(1987년에 ECU 6,000억 혹은 GDP의 16%)는 공공구입에 대한 시장접근이 모든 기업에게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보에 의하면 EU내의 한 커다란 국가의 시장에서 4%이하만이—경우에 따라서는 1% 이하—수입에 의해 충당된다. 일반적 재화의 시장에서는 수입침투도가 이들 나라에서 20%정도라는 것을 고려할 때 공공구매의 시장을 매우 폐쇄적이다.

둘째로 공공구입은 혁신제품에 대한 수요를 확보해줌으로써 기업의 기술적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셋째로 공공구입은 상대적으로 소수의 부문에 집중되어 있다. 그 결과 컴퓨터와 사무기기(30%), 대기우주기기(50%), 철도차량과 전기통신기기(10%) 등의 부문의 경우 공공구매는 전체 판매의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제품생산에 존재하는 상당한 정도의 규모의 경제효과는 높은 진입장벽, 그리고 과점적 구조의 창조를 가져왔다. 혁신적 경쟁의 결여는 기업의 노력을 제품혁신의 기회비용 하에 현재의 기술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데만 치중하게 하였다. 정부는 공급의 안정적 확보와 첨단기술이 어떤 취약한 부문의 산업을 존치시키기 위하여 혹은 일자리를 보호하기 위해 때때로 그러한 상황을 합리화시켜 왔다.

이러한 전략의 실패는 거대한 공공적 지원에도 불구하고 공동체 국가들이 국제적으

로 경쟁력있는 기업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에서 입증되고 있다. 경쟁기업의 압력이 없이는 일반적으로 혁신에 대한 자극은 보통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산업에서는 공공구매를 개방하는 것이 중요하다.

④ 사업을 위한 일률적 법률체제

내부시장 프로그램은 공동체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법률적 체계에 영향을 준다. 기업이 그들의 기업활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법률적 도구가 필요하다.

내부시장의 형성으로부터 오는 산업협력의 가능성을 충분히 활용하기 위해서 법률적 정비가 필요하다. 지적재산권의 보호는 기업이 국제화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지적재산권의 계속적이며 효과적인 보호는 혁신의 강력한 유인을 제공한다.

⑤ 전유럽적 네트워크

전유럽적 네트워크의 형성은 유럽의 각 지역간 통신과 교통의 소통을 원활히 하여 내부시장 형성에 직접적인 기여를 한다. 사람과 재화가 유동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두텁고, 신속하며 경제적인 수송의 수단을 필요로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현존하는 장애거리의 제거와 동시에 철도의 서로 다른 유형을 통합하는 것이 특히 중요하다. 단일시장은 또한 전유럽적 전기통신네트워크를 필요로 하며 공동체 전체의 에너지 분배 시스템이 필요하다.

3) 산업적 조정의 강화

산업적 조정에 대한 적극적 접근은 그 과정의 강화를 지원하는 정책의 형성을 의미한다. 산업적 조정을 강화시키는 정책으로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① 공동체의 기술적 능력의 개발

공동체의 기술적 능력의 개발이 중요하다. 새로운 기술의 충격은 소수의 첨단산업에만 한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재화와 생산기술의 모든 측면에서 경제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유연생산시스템과 정보기술, 신소재, 생명공학 등 기초기술의 응용이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위해서 중요하다. 예를 들어 정보기술은 많은 정보를 입력·처리·전달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기초기술의 확대를 위해서는 기업과 공공당국과 과학자들의 행동의 조화가 필요하다. 또한 산업구조가 점점 더 국제적으로 상호의존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세계적 수준에서 단체들간의 상호협력이 필요하다. 기술의 파급과 이용이 지니는 전략적 역할은 단절된 수단들이 기술증진을 위해서는 부적절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것은 경쟁하기 전에 수행되는 연구노력의 상호협조적 성격의 강화, 기업의 연구개발 노력을 강화시키기 위한 적절한 형태의 재정정책 등의 수단들이 상호일관성있게 수행되는 것을 요구한다.

② 중소기업에 대한 동태적 정책

중소기업은 생산에 있어서의 유연성, 새로운 시장상황에 대한 적응능력을 통해 구조적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산적인 기업문화의 유지를 위한 정책과 중소기업의 창업과 발전을 위한 정책은 계속되어야 한다. 세계시장을 향한 강력한 공급업자들의 존재가 경쟁적 성공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과의 협력을 통해 동시에 발전할 필요가 있다.

③ 국제적 투자에 대한 자극의 유지

점증하는 경제의 국제화로 기업들은 내부시장뿐 아니라 세계시장에서 일관성 있는 자구적 전략을 수행하기 위한 해외투자를 중대시킬 필요가 있다. 이러한 투자는 공동체 내부에서 경쟁력 증강에 역행하는 요소가 아니라 오히려 보완적인 요소로 파악되어야 한다. 유럽기업들은 특히 미국에 투자를 많이 하였지만 변화하는 세계환경을 고려해 볼 때 동유럽과 동아시아에 대한 투자도 증가시켜야 한다.

④ 일관적이며 효과적인 접근의 필요성

공동체 수준과 국가수준, 그리고 지역수준에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연구개발에 있어서 전경쟁적 측면의 공동체 연구와 시장에 더 접근한 EUREKA 프로젝트 사이의 책임분할이 발전되었다. EU 수준에서 이러한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중소기업의 접근을 추진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이 개발 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적 차원의 R&D 프로그램들이 앞으로도 계속 주도적일 것이며 이러한 프로그램에 의한 노력에 대해 공동체 국가들이 상호조정해야 한다.

최소한 초기단계에서 산업의 대표자들이 심도있는 상담을 하는 것은 공동체에 있어서 합의를 이끌어 내기 위해서 필요하다. 이것은 중소기업과 대기업 대표자들에게 공히 적용된다. 그리고 고용인 대표들에게도 코멘트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3) 유럽연합조약(Treaty of European Union)의 영향

1992년 마스트리히트에서 조인된 유럽연합조약은 위에서 살펴본 EU집행위원회의 산업정책을 인정하고 있다. 유럽연합조약 제130항의 제1항목에서 공동체의 산업이 경쟁력을 지니는 데 필요한 조건이 존재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유럽연합조약 130항은 계속하여 그 목적을 위해서 개방적이고 경쟁적 시장의 체제에 부응하여 공동체의 회원국가들의 행동이 ① 산업이 구조적 변화에 적응하는데 보다 신속하도록 해야하며, ②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선도적 역할과 발전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며, ③ 기업들간의 협조에 우호적인 환경을 촉진하며, ④ 혁신적 연구와 기술적 개발을 위한 정책이 지니는 산업적 잠재력을 좀더 이용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제130항의 제2항목에서 유럽 회원국가들은 집행위원회에 파견자를 통해서 상호 협의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그들의 행동을 서로 조정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집행위원회는 그러한 조정을 위해서 어떤 유용한 선도적 행동도 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유럽연합조약 제130항의 내용은 공동체의 정책형성에 있어서 전환점이라고 할 수 있는 유럽단일의정서에 기반을 두고 있다(Patrizio Bianchi, 1992). 유럽단일의정서에서는 상호인정의 원칙과 제도적 조화의 원칙에 근거하여 산업정책을 세우도록 하고 있다. 또 중앙당국은 단일의 지역당국의 범위를 넘어서는 정책수행이 필요한 경우에 개입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은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다. 중앙당국은 또한 국가와 지역정부의 지역 공공정책을 통한 비효율적 기업에 보조금을 지불함으로써 기업들 간의 경쟁을 약화시키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이러한 세 원칙의 수용은 규제와 산업을 위한 표준을 확립하여 지역생산자의 경쟁력을 증진시키는 공공정책의 개발에 있어서 지역당국간의 경쟁을 유발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4. 신산업정책의 평가

집행위원회에 의해 채택된 산업정책의 새로운 접근은 구조적 불균형을 보상하기 위하여 보조금을 개인기업에게 보조해 주는 국가의 오래된 관습을 폐기시킨다. 정책의 목적은 생산과 서비스관계의 지역 네트워크를 재강화시켜 내생적인 시장의 힘을 자극하기 위하여 계속적인 구조적 조정을 강제하는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 접근은 시장의 힘에 대한 공동체의 일반적 태도와 일치한다. 이것은 산업적 발전을 위하여 지역적 환경과 제도적 조건에 기반을 둔 유럽지역간의 경쟁을 도입하는 것이다. 새로 개량된 구조자금의 현재목적은 이러한 계임에서 불리한 지역을 도우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EU의 신산업정책은 산업발전을 위해 시장의 내생적인 힘을 이용하면서도 관련당사간의 협조와 조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것은 개방적이며 경쟁적인 환경 하에서의 산업정책으로서 근본적으로는 아주 전전하고 발전적인 것이다. 그러나 EU의 산업정책은 적어도 다음과 같은 두가지 요소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첫째로 제도적 재구성의 과정은 현재 1980년대 후반기보다 좀더 복잡하다. 독일의 재통일, 동유럽 국가들의 정치·경제적 재구성, 구소련에서의 극적인 사건들, 남부지역의 계속적으로 취약한 산업은 모두 유럽통합에 있어서 새로운 제도적 문제들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EU의 새로운 산업정책을 심각하게 제한하고 있다. 주요한 위험은 EU가 이러한 여러 문제를 올바르게 직면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유럽통합을 위한 산업정책에 있어서 과도하게 단순화시킨 접근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이다.

둘째로 각국 정부들과 공동체가 기업활동을 위한 우호적인 조건을 창조하려는 것은

매우 타당하지만, 그 새로운 제안도 EU기업들에게 외국시장에서 균등한 접근이 주어지는 것과 무역이 공정해야 한다는 것을 확실히 보장하려는 공동체의 의도는 무역의 마찰을 가져오게 할 소지가 있다. 이러한 공동체의 의도는 어떤 정부에 있어서도 정당한 관심사이다. 그러나 공동체가 공정무역의 이름하에 내부적으로 요구되는 보호주의적 압력을 성공적으로 견디어 낼 수 있을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것이다.

V. 유럽연합의 시장통합과 EU기업의 대응전략

1. 시장통합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

(1) 시장단일화의 목적과 기대효과

1993년 1월 1일 유럽연합은 유례없는 세계최대의 단일시장을 출범시켰다. 유럽단일의정서(Single European Act)는 유럽산업이 세계적 차원에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 경제적 환경여건을 마련하는데 그 일차적인 목적을 두고 있다(Dudley, 1992: 25). 이러한 시장통합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경제의 효율성을 제고시키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구체적인 추진계획도 생산요소의 이동을 제한하는 역내의 각종 방벽을 제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추어지고 있다. 유럽 전역에 걸친 법적 규정의 동질화와 경쟁법, 회사법, 합병법 및 노동법과 같은 법규의 조화로 행정, 기술 그리고 재정면에서의 각종 장벽의 철폐가 EU역내의 기업에게 본국시장의 확보는 물론 국가간의 효율적인 거래를 위한 하나의 새로운 도전과 기회를 제공해 주고 있다.

일반적으로 말해지고 있는 유럽시장통합의 경제적 기대효과를 구체적으로 열거하면 다음의 사항들을 들 수 있다.

- 역내국경에서의 통제철폐에 따른 시간과 비용의 절약
- 규모의 경제가 가져올 비용절감, 생산성향상 및 투자증대
- 경쟁조건의 개선에 따른 기업의 경영효율성 증대 및 품질향상
- 판로의 확장으로 인한 공동 연구개발활동의 증대와 역내산업의 기술 경쟁력 강화
- 비용절감이 가져올 역내 제품가격의 하락 및 역내 소비자의 이익과 역내 수요의 증대
- 역내 장벽의 철폐에 따른 정부의 법규집행 및 통제비용의 절감과 정부투자여력의 창출
- 공공구매시장의 개방에 따른 회원국 정부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정부투자여력의 창출

- 투자증대와 기타 경제활동의 증대에 따른 고용증대 및 실업감소

한마디로 말해, 단일시장의 형성은 거시적 측면에서 볼 때 하나의 연쇄적인 효과를 갖게 한다(Cecchini, 1988: 131; Bruhn, 1989: 66). 시장의 확대와 이를 통한 구매력 및 수요의 증대는 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동시에 기업간의 경쟁압력이 강화된다. 그리고 이를 통한 경쟁력증대는 부수적인 기회제공은 물론 역외국, 특히 미국이나 일본에 대한 교역상의 지위를 강화하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단일시장의 효과가 미시적, 다시 말해 기업차원에서는 자동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아니다. 그 효과는 새로운 기업여건에 대응하고 기업잠재력을 최적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개별기업의 능력에 달려있다고 하겠다.

유럽의 시장통합이 기업에 미치는 효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단일시장화의 직접적인 이점은 시장진입장벽의 축소에 있다. 지금까지 보호되어 있거나 경제적으로 그다지 매력적이지 못했던 시장들이 무역장벽, 생산장벽 및 여타 비관세장벽 등의 철폐와 법적 구조의 통일화 내지 동질화를 통해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것들은 역내시장에서 기업의 적정규모를 달성하게 하는 촉진요인이 되고 있다.

둘째, 시장진입장벽의 축소는 이로 인해 무역규모가 증대되고 경쟁압박이 심화됨으로써 기업에게 규모의 경제효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촉구하는 동적인 원동력으로 작용한다.

셋째, 기업간의 경쟁강화는 기업으로 하여금 경영의 합리화와 생산성향상을 위한 노력을 촉구하고 시장여건의 동태성을 부여한다. 경쟁심화에서 오는 이점 내지 긍정적인 효과는 재화나 용역의 생산뿐 아니라 이를 지원하는 활동인 연구·개발, 재무, 광고 및 판매촉진이나 물적유통부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Kluvich, 1992: 12).

(2) 유럽연합의 시장통합 내용

재화, 사람, 서비스 및 자본의 자유로운 이동을 통해 EU전역이 진정한 하나의 단일 시장으로 통합되기 위해 제거해야 할 역내장벽인 물리적 장벽, 기술적 장벽, 재정적 장벽 등 3개 분야의 282개(최초에는 279개)항목에 달하는 추진계획이 이사회지침으로 제시되었다. 1992년말 현재 총 262개 항목이 합의에 도달하여 93%의 달성을 보이고 있으나 각국에서의 적용에 있어서나 그 구체적인 주요부문에 있어서는 아직도 협상을 해야하는 상황에 놓여 있으며 그 진척도에 있어서도 아직까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EC-Commission, 1993b: 65ff.). 예컨대 물리적 장벽 및 기술적 장벽에 관해서는 회원국간의 조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나 재정적 장벽에 있어서는 조세에 대한 회원국간의 의견 통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반면 자본이동의 자유화

는 100%의 진척률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추진계획의 대부분은 역내 상품교역에서의 장벽제거에 목적을 두고 있으며, 공동 서비스시장의 창출, 요소이동성의 증대, 주요 생활영역에서의 제법규의 통일 등이 주요한 과업이 되고 있는데, 여기서는 주로 상품교역과 관련된 장벽들만 살펴본다.

① 물리적 장벽의 제거: 물리적 장벽의 제거는 역내국경을 통과하는 재화와 개인에 대한 통제가 철폐됨을 의미한다. 이로써 유통과 산업을 위시한 모든 사업부문에서의 불필요한 비용을 증대시키고 이로 인해 유럽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각종 통관에 수반하는 시간낭비, 수수료부담, 추가수송비부담 등이 제거되게 되었다(Pinder, 1988: 49; Alderson, 1988: 303f.).

② 기술적 장벽의 제거: 기술적 장벽제거에는 특히 상품교역과 공공계약에서의 자유, 공동의 서비스시장, 자본이동, 기업 및 산업협력, 노동시장의 자유화, 공동체법의 적용 등이 포함된다.

이는 무엇보다 자유로운 상품교역을 보장해 주기 위한 것으로 유럽회원국 중 한 나라에 적법하게 생산, 판매되는 제품은 역내 어디에서나 판매될 수 있음을 말한다. 유럽연합국내에 100,000여 이상의 다른 기술표준이나 제품을 상업화하는 데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규격이 서로 달라 타회원국에 제품을 판매 하려면 제품을 해당국의 기술표준이나 규정에 맞추어야 함으로 이로 인한 기업의 부담은 대단히 컸고 기업간 협력의 추진이나 공동시장형성이 저해되고 있었다.

따라서 EU집행위는 소비자 보호, 안전, 환경보호 등과 관련된 요구사항을 정하고 기술적 표준화를 위해 CEN/CENELEC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유럽규격의 제정이 완료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각국의 현행규정을 상호 승인해 주도록 하였다. 획일화 원칙을 제한하는 이러한 상호승인 개념과 기술적 표준과 규정의 변경시의 보고의무는 일부 회원국들이 국가적 이해관계에서 역내시장의 창출을 방해하는 행위를 배제하고 동시에 기업들이 더 이상 각 회원국에서 드러나는 법규나 규정상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없이 자국의 규정이나 통일된 유럽연합체의 규정에만 적용하면 되도록 하는 필수적인 전제조건이다.

③ 재정적 장벽의 제거: 재정적 통제는 역내국에서 이루어지는 대표적인 장벽으로 국경에서의 통제철폐는 간접세에 관한 한 재정적 장벽의 철폐와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

세제의 통일은 재화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한 전제조건이나 세제가 국가주권과 직결되어 있고 정치적으로도 대단히 민감한 사안이기 때문에 각국의 입장에 상당한 차이가 있다. 더욱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가중다수의 의결이 아닌 만장일치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세제의 조화가 가장 난항을 겪고 있는 셈이다.

특히 간접세에 있어서의 국가간 차이는 대단히 큰데 이미 1957년의 EEC협정에서 부가가치세와 소비세의 통일화가 추진되었으나 큰 진척이 없었다. 그간 유럽연합의 모든 나라에서 부가가치세제를 도입하고는 있으나 그 세율은 0%에서 38%에 달하고 있으며 특정품목에 대한 소비세의 차이는 현격하여 이것이 교역에 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였다(Dichtl and Dohet, 1992: 224).

유럽연합위원회에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 처음 각국의 심한 반발이 있어 지금까지 부가가치세율에 대한 합의를 찾지 못하고 간접세의 조화를 목적으로 1996년 말까지 시행될 몇가지 경과조치에 대한 합의만 이루어져 있다.

(3) 시장통합이 기업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

1) 기업에 대한 영향

EU의 시장통합에 따른 여건변화가 모든 기업이나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사실이나 그 영향이 모든 산업이나 기업에 그리고 기업의 모든 기능부문에 동일한 비중으로 미치는 것은 아니다. 그 영향정도는 특정국 산업이나 기업이 기존의 무역장애나 진입장벽과 관련하여 EC역내국 시장에 얼마나 큰 비중(예컨대 전체 매출액에 대한 EU 역내국의 수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다.

일반적으로 시장단일화로 인해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기업들은:

- 역내시장국에서 수출 및 부가가치창출(직접투자의 경우)비중이 대단히 높은 기업,
- 기업의 사명, 사업규모나 성과가 기업의 전략에 의해 영향을 많이 받는 기업,
- 기계제작, 제약이나 화학, 자동차산업에서와 같이 기업의 제품이 규격 및 법적 규정의 국별차이와 유럽시장국 간의 극심한 제품가격차이에 노출된 기업,
- 금융산업, 철강산업, 운송 및 통신산업과 같이 비관세 무역장벽을 통해 국내에서 경쟁상의 보호를 받고 있는 기업과 항공 및 우주산업에서처럼 정치적인 영향을 심하게 받는 기업,
- 특정 세분시장에서 원가나 품질 면에서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
- 무역거래에 존재하는 기술 혹은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별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지않던 기업 등이다 (Kluvich, 1992: 14; Bruhn, 1989: 66; Meissner, 1990: 111).

한편 기업의 기능부문에서 볼 때, 이러한 시장통합은 서비스산업뿐만 아니라 제조기업에 있어서도 일차적으로 마케팅과 계획부문, 그리고 일부 조직부문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나라마다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연구·개발부문은 생산부문보다 그 영향정도가 낮다고 하겠으나 이탈리아의 일부지역, 스페인 그리고 포르투갈은 그 반대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 영향정도를 기업유형별로 살펴보면 대개 다음과 같다.

첫째,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의 경우 그 영향은 대단히 크며 환경여건의 적용에 많은 부담을 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들 기업은 한편으로는 특정 세분시장(시장틈새)이나 국내시장에만 이들의 활동을 제한하기에는 그 규모가 너무 큰 반면, 다른 한편으로는 3억2천만 이상의 소비자를 지니고 있는 단일시장의 경쟁에 대응할 수 있기에 그 규모가 너무 작다고 할 수 있다. 경험적으로 볼 때 성장하는 시장은 대부분 이에 걸맞게 자금력, 경험, 외국종업원관리, 노하우 등에 있어서의 투입자원의 증대를 필요로 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기업은 중소기업에 비해 신축적이지 못해 구조적인 적응력을 지니고 있지 못하다.

둘째, 범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기업들은 근본적으로 역내시장의 요구에 대한 특별한 고려없이 세계시장에 표적을 두고 이미 국제시장에서 해외의 경쟁기업들과 경쟁을 하고 있다. 따라서 아직도 상존하고 있는 역내시장에서의 각종 장애요소들의 철폐가 이들의 경쟁조건에 별다른 영향을 미친다고는 할 수 없다.

셋째, 중소기업들 역시 이들이 이미 역내시장에서 특정 표적집단에 전문화하고 있기 때문에 유럽시장의 단일화로 인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유럽에서 이미 초국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도 궁극적으로는 유럽통합의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회사 및 경쟁법의 조화로 투자의 가능성은 물론 전략적 제휴 등의 방법을 통해 새로운 사업영역에 침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증대되었기 때문이다(Berg, 1990: 85f.; Hoefner, 1990: 33ff.).

2) 산업에 대한 영향

산업에 미치는 시장통합의 영향과 관련하여 EU위원회가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총 120개 산업부문 중 약 40개 부문이 시장통합의 영향이 클 것으로 나타나 있다(EC-Commission, 1989).

분석기준으로 사용된 지표는 회원국간 교역을 제한하는 비관세장벽의 수준, 동일상품에 대한 가격차이의 전도, 회원국간 수입침투율, 규모의 경제효과의 정도 등이다.

부문별로 그 영향정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Scholz et al., 198ff.).

① 전통적 공공조달 및 국가통제 산업: 철도, 발전설비, 의약 등 지금까지 국가로부터 육성·보호를 받아왔으며 타회원국 기업의 진출이 제한된 산업들이다. 따라서 역내시장국간의 교역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각종 비관세 장벽으로 국별 가격격차가 대단히 크다. 시장통합의 영향은 대단히 크며 이것이 특히 경쟁력 있는 기업에게 유리하게 작용한다. 적정규모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매수 및 합병 등이나 공장의 통합 등을 통한 기업집중화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전기설비분야에서 ABB(Asea-Brown Boveri)사의 탄생과 영국의 GEC사와 프랑스의 Alsthom사가 합작

기업을 설립한 것이 좋은 예이다.

② 공공조달관련 성장산업: 정보기술, 사무기기, 통신기기, 의료설비 등의 산업으로서 국가로부터 비교적 적극적인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내시장에서의 교역이 비교적 활발하며 국별 가격격차가 크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일본이나 미국 등 역외국기업들로부터의 경쟁이 심하고 이들이 유럽기업보다 더 큰 경쟁적 우위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시장통합의 경제효과가 가능한 부문이기 때문에 규모의 경제효과를 최대한 활용하여 비용절감효과를 기하고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의 기업간 협력을 할 필요가 있다. Siemens, Philips, SGS Thomson 등 EC의 기업들이 JESSI계획(Joint European Semiconductor Silicon Research Program) 하에 상호협력하기로 한 것이 그 예이다.

③ 대량 소비재 산업: 자동차, 가전제품, TV, 라디오, VTR, 섬유, 의류, 신발, 완구 등의 산업부문이다. 많은 분야에서 이미 대기업들이 유럽전역에 활동을 하고 있고 다른 산업부문에 비해서 비관세장벽이 낮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품의 국가간 가격격차가 비교적 큰 편이다. 시장통합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으나 그 효과는 생산부문에서보다 유통부문에 더 클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시장개방과 교역확대로 국가간에 제품의 가격격차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유통의 마진폭에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며 중·장기적으로는 이것이 생산업체의 수익에도 영향을 주게 될 것이다.

④ 구조적 위협을 받고 있는 산업: 조선, 전기제품, 가전제품, 일부 식품 등 신흥공업국들로부터 경쟁압력이 비교적 큰 산업부문으로 EU통합과는 관계없이 이미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통합으로부터의 영향이 가장 작다고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언급된 산업대상은 제조업이다. 이러한 분류를 타 산업에도 적용시킬 수가 있을 것이다. 예컨대, 운송산업은 제1유형에 속하며, 은행 및 보험 등 금융산업은 스페인이나 이탈리아 등에서 정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다수의 회원국에서는 제3유형에 속하는 것으로 분류될 수 있다.

EU통합으로 인해 가장 큰 영향을 받게 된 산업체를 구체적으로 열거한다면 대개 식품가공산업, 금융서비스산업(은행, 보험), 운수업(수송, 유통), 화학 및 제약산업, 통신정보산업 등이다(Bruhn, 1989: 67).

2. 시장통합에 따른 EU기업의 대응전략

(1) 시장통합에 따른 기업의 기회와 위협

시장통합에 따른 결과가 기업에게는 하나의 기회도 제공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되기도 하는데, 유럽기업들은 대부분 유럽의 단일 시장이 기업에게 위협보다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는 것으로 보고 있다. 12개 역내국의 11,000개 유럽기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Ifo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조사기업의 52%가 역내시장의 도입을 통해 기회가 더 증대되었다고 응답했으며 더 큰 위협이 된다고 응답한 기업은 전체의 7%에 불과 하였다(Guertler and Nerb, 1988: 21). 기업이 소재해 있는 국가적인 입지와 관련해서도 전체의 49%가 더 큰 기회가, 그리고 13%만이 더 높은 위협이 주어지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다. 한편 15,000개 독일기업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한 DIHT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다수기업이 이들의 경쟁적 위치를 더 공고히 할 수 있을 것으로 답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전체기업의 25%가 대단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으며 다른 58%는 EU역내시장의 발전에 보조를 같이할 수 있을 것으로 믿고 있었다. EU시장통합에 따른 부의 효과를 우려하는 기업은 17%에 불과하였다(DIHT, 1989).

1) 기업간의 경쟁심화

다수의 국가시장을 대체하는 하나의 유럽시장은 역내나 역외기업에게 시장진입의 용이성과 이에 따른 경쟁의 심화를 의미하는데도 기업이 전체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환경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이들이 시장통합으로 인한 경쟁의 심화를 하나의 필수적인 생산적 과정으로 파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DIHT, 1988: 1). 위협 및 기회와 관련하여 기업이 시장통합으로 받게 되는 도전은 크게 다음과의 두 가지 측면에서 파악될 수 있다.

① 비용측면의 도전: 증대되는 경쟁압력과 경쟁기업의 영향력증대로 인해 제품가격이 지금보다는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것은 이익과 이윤폭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기업은 생산성향상에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경영합리화, 생산자동화 및 유연생산체제, 효율적인 정보체계 등을 갖춘 기업만이 경쟁력을 갖게 될 것이다(Berger, 1990: 23f.). 또한 시장 확대로 인한 매출증대로 이룩되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포함한 경험곡선효과를 통해 원가절감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다.

② 시장측면의 도전: 세계 및 기술규격의 통일로 인한 여건변화와 국경통제의 철폐 등으로 인한 시장진입의 용이성은 기업으로 하여금 유럽의 어느 시장이든 쉽게 진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것은 Berger/Manager Magazin 조사에서도 기업들이 그들의 일차적인 전략을 시장개척에 두고 있다는 사실에서도 드러나고 있다(Berger, 1990: 58ff.).

유럽의 역내시장으로 제일 먼저 기대되는 것은 역내무역이 큰 폭으로 증대될 것이라는 사실이다. 하나의 장기적인 복리증진은 제품과 용역이 보다 효율적으로 생산되고 극심한 경쟁압력하에 보다 저렴하게 판매될 것이라는 근거하고 있다. 역내시장의 가장 특징적인 현상은 동질적이고 국제적으로 교역가능한 재화들의 가격에 차이가 없어

진다는 것이다(Goermann, 1992: 199). 국가적인 가격격차의 철폐는 특히 소비자나 구매자에게 혜택을 주게 된다. 소비자나 사용자는 보다 저렴한 가격의 동일제품을 공급하는 국가로부터 제품을 구매하게 될 것이고 이것이 비싼 제품을 생산하는 국가의 제품가격을 인하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것이다. 반면 기업들에게는 이러한 가격적인 압력 외에도 변화된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기 때문에 시장단일화의 이점이 분명하게 존재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역내에서의 입지상의 차이

시장통합의 전제가 되는 법적 규정들의 범유럽적 통일화가 각 회원국에 미치는 영향에는 차이가 있다. 즉 독일과 같이 유럽연합의 공동체 규정들이 지금까지의 국내 규정들과 많은 점에서 유사한 경우도 있고 그리스나 포르투갈처럼 그 내용이 기존의 국내법과 상당한 차이를 갖는 경우가 있다(Plinke, 1990: 69).

시장진입장벽의 철폐와 이에 따른 시장매력성의 증대로부터 모든 기업이 혜택을 얻기 위해서는 모든 동참기업이 경쟁에서 동일한 출발점을 가져야 할 것이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기업차원에서도 우선 산업, 기술, 법적 구조, 하부구조 및 종업원 등에 있어서의 구성이 동일한 여건 하에 있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 측면에서도 전 역내국 내지 지역이 동일한 조화화의 진척도를 지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표 V-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규모나 매력도 및 비용 측면에서 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뿐 아니라 국가의 경제 및 통화정책상의 차이, 노동조합, 해고금지, 공동의사결정 등의 규정에 있어서는 물론 생산요소의 가용성, 문화 및 언어 등에 있어서의 국가간 차이들은 기업에게 하나의 기회를 제공해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위협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회사나 자회사 설립의 자유 및 취업의 자유, 상품, 사람, 자본이동의 자유가 현실화됨으로써 노동, 자본, 경영 및 노하우 등의 이동성이 대폭적으로 증대되었고 이에 따라 기업은 더 이상 국가적인 규제나 장애요소 때문에 특정시장국에 진출해야 할 필요성은 거의 없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유럽 전역은 물론 전세계에 걸친 경쟁상황이 개별 국가나 지역의 입지조건을 고려하게 하고 기업은 기존의 투자결정에 대해서도 재검토하여 경제적인 수익기대가 가장 큰 입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생산전략에 있어서 국경없는 유럽에서 요소비용의 차이는 대단히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는데, 스페인, 그리스, 포르투갈, 구동독지역, 이탈리아 남부 및 아일랜드의 일부 등 유럽내의 주변지역들에서 아직도 임금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고 지가도 비교적 저렴하기 때문에 이러한 면에서 유리한 입지적 조건을 지니고 있다. 반면 생산요소가 충분치 못하고 비싼 중심부의 고도산업화된 지역에는 지식집약적인 최첨단기술제품의 생산이 유리하다(Adams/Rekitte, 1989: 305ff.). 앞으로 역내에서 투자와

산업발전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 질 중심지역으로는 영국의 남부를 기점으로 하여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밀라노에 이르는 이른바 '바나나(banana)'지역이나 프랑스의 리옹에서 바르셀로나를 거쳐 발렌시아에 이르는 '태양대(sun belt)'지역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Methfessel, 1990: 209).

〈표 V-1〉 시장성 지표를 통한 각국의 현황

	상대적 시장 매력도							상대적 비용우위			
	GNP 비중	구매력	성장	특허	직접 투자	경영 능력	교육 수준	노동비	관리비	품질비	소득 과세
독일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프랑스	80	85	91	46	58	90	57	68	55	86	64
이탈리아	70	72	118	10	41	90	45	80	43	65	73
영국	67	64	105	24	222	88	50	68	64	50	64
베네룩스	32	77	69	17	108	92	77	80	72	57	85
스페인	28	41	127	0	20	95	42	56	24	50	57
덴마크	9	90	77	0	3	85	80	81	101	71	90
그리스	4	26	68	0	3	50	50	30	24	70	60
포르투갈	3	21	109	0	3	39	39	18	15	60	57
아일랜드	2	40	95	0	27	90	90	54	61	66	60
											43

자료 : Kluvich, 1992: 146.

국제적인 생산네트워크를 지니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새로운 공장이나 판매시설을 갖추려 할 때, 위에서 언급한 요인들보다는 공급능력이나 운송비 등과 같은 기준이 더 중요한 고려대상이 되며 이러한 면에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지니고 있는 입지들의 최적조합을 결정하게 된다(Tietz, 1989: 98).

3) EU기업의 대응전략

유럽의 시장단일화가 기업에게는 주로 지역적인 확장뿐 아니라 시장의 구조적 및 질적 변화를 의미한다. 이러한 변화에 직면하여 유럽의 수많은 기업들은 기업 내에 유럽위원회를 구성하고 유럽통합을 통해 이루어진 새로운 여건과 거대해진 시장에 신속히 적응하여 그들의 지위를 확보할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고 있다(Goermann, 1992: 195).

Roland Berger 자문회사의 견해에 따르면 이러한 기업의 적응은 주로 수익과 이익에 대한 압력, 공격적 마케팅활동, 경쟁 및 비용구조의 변화, 혁신과 기술에 있어서의

격심한 경쟁 등에 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Goermann, 1992: 200). 한마디로 말해 하나의 유럽시장과 유럽지역시장으로의 진입의 용이성은 기업에게 새로운 시장참 입자와 경쟁해야 함은 물론 시장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행동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Toepfer & Huenerberg, 1990: 77).

- 다른 EC국가로부터의 새로운 경쟁자가 출현함으로써 국내 및 외국의 경쟁기업간의 경쟁이 격심해지고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역외국 기업들이 EC시장의 조기진출을 통해 그들의 지위를 강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 기업간의 규모와 시장지배력에 대한 경쟁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고 이에 대한 노력이 강화되고 있다.
- EC시장국의 소비자와 산업구매자가 기업의 수요자이다. 이것은 한편으로는 욕구의 이질성을 의미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소비재시장에서 유럽시장전체에서의 욕구동질화가 증대되고 있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그리고 유럽에 활동하는 산업수요자의 협상력도 증대되게 되었다.
- 유통업도 이제는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하여 기업활동을 하게 되었으며 이미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유통업은 기업협력과 지점망확충 등을 통해 그 지위를 강화하고 있다.
- 공급업체들과 마케팅조사기관, 광고대행사, 운송업, 금융 및 보험기관 등 서비스기업들도 유럽시장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그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시장환경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기업의 대응전략은 산업이나 기업이 추구하는 목적 및 처해있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말하기는 힘든다. 기업의 대응 내지 적응전략의 계획여부에 대해 Ifo에서 행한 조사에 의하면, 피조사기업의 3/4이 이러한 변화에 대한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차 이를 중견기업과 대기업간에는 찾아볼 수 없으나, 고용인 50인 이하의 소기업은 적은 수만 대응전략을 강구하고 있었다. 기업의 적응반응에서 가장 우선되고 있는 것이 생산전략으로서 중견기업의 50%가 가격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기업내부의 합리화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5%가 생산협력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하고 있으며 반면 대기업의 경우에는 1/4이 이를 계획하고 있었다. 중견기업의 경우에는 기업자체적인 판매망의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1/5은 판매 및 유통에서의 기업협력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전략과 관련해서는 중견기업들이 대부분 자체적인 연구개발투자에 역점을 두고 있어 연구개발에 대한 기업간 협력은 중소기업에 있어서 그 비중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Scholz et al., 1990: 143ff.).

유럽기업들은 나름대로 시장통합에 따른 불리한 여건에 대처하고 주어진 기회를 포

착하기 위해서 다각적인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아무튼 새로운 환경에 직면하여 시장 단일화를 통해 추구되는 목적을 기업의 전략계획에 포함시키고 기업의 내부능력을 외부환경이 제공하는 기회에 일치시키는 보다 적극적이고 선행적인 경영전략을 강구하는 기업에게 시장의 기회가 가장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것은 확실하다.

현실화된 시장통합으로 야기되는 경쟁압력에 대응하는 유럽기업의 적응 및 대응전략의 방향은 기본적으로 ① 기업의 구조재조정 및 생산성증대, ② 새로운 판매시장의 개척, ③ 국경을 초월한 기업협력의 강화에 두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먼저 경쟁력강화를 위해 기업이 취하고 있는 전략수단은 합리화를 통한 구조조정과 생산성증대를 들 수 있다. 특히 가격경쟁에 있어서 기업은 더 이상 지역적인 가격차 별화전략을 구사할 수 없으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전반적으로 가격수준이 낮아질 것으로 예상되며 이것은 기업의 수익에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특히 대기업들은 비용절감 가능성을 활용하는 방향으로 그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그 몇가지의 예를 제시하면 기업들은 유럽차원에서 생산공장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하나의 효율적 로지스틱시스템을 통해 적기공급을 가능하게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Meffert, 1989: 15; Toepfer, 1990: 32). 또한 많은 대기업들은 경쟁력제고의 일환으로 구조재조정과 함께 생산합리화를 강화하기 위해 시장령역의 확장을 시도하면서 효율적인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주변사업분야를 과감히 청산하고 자신의 주력업종에 집중하는 전문화전략을 추구하고 있으며(Jacquemin, 1993: 126), 유럽에서의 선도적 위치를 점하기 위해 연구·개발투자에 있어서도 판매비중이 높은 분야나 기술혁신에 따른 기대수익이 높은 분야에 집중하고 있다.

시장의 단일화를 통한 각종장벽의 철폐는 국내에서 외국의 경쟁기업을 배제시킬 수 있는 배타적인 사업영역을 독자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더이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것은 기업으로 하여금 국내시장에서의 지위도 더욱 공고히 하도록 촉구하고 있다. 유럽기업들은 우선 생산 면에서 유럽 내에서의 광범한 공급원(Euro-sourcing)을 확보하여 저렴한 원부자재를 활용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하고 동시에 지금까지의 세분시장에서 높은 수준의 고객충실후를 갖게 하는 전략을 통해 경쟁력강화에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이러한 틈새전략으로 외국경쟁업체가 국내에서 성공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가능성을 처음부터 배제하는 것이 그 일차적인 목적이다.

둘째로 새로운 판매시장의 개척 및 구축과 관련하여서는 중소기업들은 대부분 아직 까지 다른 유럽지역에 진출해 있지 않은 상태에 놓여 있다. 따라서 특히 중견기업의 유럽전략은 주로 유럽지향적 마케팅을 구축하는 데 그 주안점을 두고 수출활동의 강화, 해외직접투자, 프랜차이징 계약의 체결 등의 다양한 방법을 통해 조기에 주요 유럽시장지역에 진출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와는 반대로 대기업들은 대체로 이미 유럽시장을 대상으로 기업활동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 해외시장국에 독자적인 자회사나 생산공장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기업의 목적은 특히 유럽시장전역에 하나의 통일된 상표를 구축하는 일이다. 이러한 유럽상표화의 예로서 독일 Henkel사의 Pattex을 들 수 있는데, 여기에 전제가 되는 것은 우선 제품에 있어서 유럽규격이 존재해야 하고 동시에 수요측면에서는 범유럽적 세분시장을 규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유럽상표화를 통한 표준화 전략에는 '유럽소비자'가 존재하느냐가 성공의 관건이 된다고 하겠는데, 시장단일화에도 불구하고 문화적 차이, 다양한 언어, 제품이나 기호에 대한 선호도의 차이, 유통체제 및 구매관습상의 차이, 매체 및 매체활용의 비중에 있어서의 차이, 경쟁여건의 차이 등으로 인한 '비단일성(이질성)'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유럽기업들은 다른 글로벌기업에서 볼 수 있듯이 하나의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면서 동시에 개별 국가의 여건에 따라 전략을 차별화하는 방법을 통해 소위 말하는 '범세계적으로 사고하고 현지적으로 행동하라(think globally, act locally)'는 원칙에 충실하려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시장통합을 계기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현상은 연구·개발, 생산 및 유통분야를 중심으로 기업간 매수 및 합병이나 전략적 제휴 등을 통한 기업간 협력을 활발히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음 장에서 논의되는 바와 같이 이러한 기업협력을 강화하는 동기는 다양한데, 유럽통합과 관련하여 가장 가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 이러한 방법을 통한 기업의 대응전략이라 하겠다.

3. EU기업의 결합 및 제휴전략

(1) EU의 기업간 협력

유럽 역내에서의 기업협력은 다양한 형태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어떠한 형태이든 기업협력이 바람직한 경우는 규모의 경제나 학습에 의한 효율성이 중요하거나 기업내부적인 자원의 의도적인 배분이 소위 말하는 시장메커니즘의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한 자원 배분의 경우보다 더 큰 비용감소와 수익증대를 가져올 때라 하겠는데(Geroski and Jacquemin, 1984: 349), 이러한 기업협력을 통한 기업의 국제화·세계화는 오늘날 더 이상 환경변화에 대한 수동적이고 방어적인 적응이 아니고 다음과 같은 적극적인 전략적 고려에서 이루어지고 있다(Rath, 1990: 220ff.).

- 새로운 기술에의 접근
- 적극적인 시장개척
- 제품차별화 능력의 제고

- 파트너가 가진 능력의 상호내부화
 - 주요한 EU역내시장에로의 동시침투의 용이성 및 제한적인 재무적 지원 하에서 추구가능한 범세계적 시장확대
 - 의욕적인 해외개입을 위한 동적 요소로서의 기업협력 활용
- 국제적인 제휴기업들은 오늘날 70년대나 80년대 초에 비해 달리 행동하거나 반응하고 있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Kluvich, 1992: 21; Ohmae, 1985: 170f.).

첫째, 이전의 기업합병은 직접적인 경쟁업체에 대해 이루어진 반면,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놓여 있지 않는 기업간의 느슨한 협약이 이루어지고 있다.

둘째, 오늘날의 국제적 기업협력은 참가자들의 동기에서 예전과는 구별된다. 즉, 이러한 협력은 국제화를 확대시키려는 욕구의 결과이다. 이전에의 기업결합은 이것이 비록 국제적이기는 했으나 자의에 의해서라기보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외적인 여건에 의해 주로 이루어진 것이다.

셋째, 기업결합의 결과에 있어서도 과거에는 국제적인 경쟁을 회피하자는 의도가 지배적이었으나 오늘날에는 이러한 행위가 일차적으로 경쟁촉진적인 효과를 갖고 있다.

넷째, 과거의 합병에 비해 새로운 형태의 기업제휴는 자원의 공동활용과 개발비용의 극소화를 위한 제품의 상호교환에 그 전략적인 의미가 있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EU의 시장통합은 그 규모나 질에 있어서 모든 회원국에 동일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 경제수준, 부존자원, 그리고 문화적 사회적 요인들에 있어서의 국가 내지 지역적인 특수성이 존재하고 있다. 따라서 기업들은 일반적으로는 보다 심도 있는 제휴형태를 취하면서 동시에 회원국에 존재하는 지역적 특수성과 EU의 조화화조치를 개별국가에 적응시키는 과정에서의 자연으로 인한 법적인 불확실성에 자원투입의 다양성을 통해 대비하고 있다.

유럽에서 가장 강한 경제력을 지니고 있는 독일의 예를 보면 독일기업들은 특히 노무비와 세금부담면에서의 국제비교에서 상대적으로 유리한 역내국에 투자를 집중하려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측면에서 가장 유망한 생산입지로는 특히 스페인, 프랑스 그리고 영국 등을 꼽고 있다(Kluvich, 1992: 21).

투자형태로는 신규설립과 기업인수가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합작투자인데, 투자는 주로 국내에서 적극적으로 종사하고 있는 동일한 산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해외진출은 모든 기업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이것은 기업의 규모와 국제화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데, IWD와 DIHT가 독일의 1,100개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은 3/4이 해외투자를 하지 않은 반면, 대

기업들은 1/2이 해외에 투자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2) 유럽기업의 인수 · 합병

〈표 V-2〉는 1987-92기간동안의 유럽기업의 합병 및 다수지분을 통한 인수현황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인수 · 합병은 80년대에 들어와 미국과 일본을 위시한 선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져온 투자전략이지만 EU에서는 역내시장통합백서가 발표되고 시장단일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되기 시작한 1985년 이후 1989년까지 급속한 증가를 보여왔다. 1987년과 1989년 사이에 그 건수가 거의 배로 증가했으며 그 증가속도가 서비스업보다는 제조업이 더 컸다.

〈표 V-2〉 EU내에서의 M&A 현황(건수)

연도	국 내		역 내		역 외		합 계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제조업	서비스업
1987	787	923	104	74	69	61	960	1058
1988	985	1092	257	143	146	73	1388	1308
1989	1766	1717	538	402	410	252	2714	2371
1990	1648	1624	574	433	457	277	2679	2334
1991	1787	1533	457	283	383	208	2627	2024
1992	1573	1343	365	248	367	227	2305	1818

자료 : EC-Commission, 1993a: 7.

이러한 기업결합의 주요동기를 보면, 〈표 V-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시장에서의 지위강화가 가장 중요한 동기이고 그 다음이 사업확장 및 보완의 순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들은 모두 사업의 지리적 확장과 생산합리화를 통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주된 목적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EU기업간 또는 EU기업과 역외국 기업간에 이루어진 대부분의 기업결합은 특정 사업분야에서 범유럽시장을 석권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나 근본적으로는 생산시설을 통합관리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통한 생산비의 절감 및 합리화로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 되고 있다. 이러한 예는 이탈리아의 Fiat사가 국내의 소규모 자동차회사들인 Lancia, Ferrari, Alfa Romeo를 인수한 것을 들 수 있으며, 프랑스에서 식품 및 음료산업에서 선도적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기업인 BSN사는 유럽의 8개 식품회사와 RJR Nabisco의 5개 유럽 자회사를 인수, 생산비용의 절감을 통해 EU시장내에서의 지배적인 지위를 획득하였고 스웨덴의 ASEA사

〈표 V-3〉

1987/88년도 EU국가의 기업집중의 주요 동기

주 요 동 기	건 수	비 율(%)
시장지위의 강화	70	18.3
사업의 확장	54	14.1
사업의 보완	54	14.1
합리화 및 구조재조정	41	10.7
사업의 다각화	23	6.0
사업의 특화	6	1.6
생산 및 마케팅상의 이유	5	1.3
연구·개발	2	0.5
기타	2	0.5
특별한 이유 없음	19	5.0
합 계	383	100

자료 : OECD, 1990: 323.

는 스위스의 BBC사와 합병하며 ABB사를 탄생시킴으로써 중전기분야에서 세계 1위의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내국에서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할 뿐 아니라 동시에 생산규모의 증대와 시장확대를 위한 복합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진 예로서는 독일의 Volkswagen사가 Seat사(스페인) 주식의 75%를 매수하고 Skoda사(체코)와 BAZ사(슬로바키아)를 인수한 것을 들 수 있다. 또한 다국적 기업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에서도 이러한 전략이 추진되고 있다. 금융서비스분야에서 주요 은행과 보험사들이 합병한 예가 여기에 속한다. 즉, 독일에서는 Dresdner은행과 Allianz사가, 영국에서는 Lloyds은행과 Abbey Life사, 그리고 프랑스에서는 National der Paris은행과 Union des Assurance de Paris사가 합병한 것이 그 예에 속한다. 그리고 인수·합병은 기업의 구조재조정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되고 있다. 정보통신부문에서 CGE사가 ITT사의 유럽 자회사를 인수한 것이라든지, 프랑스의 Thomson사가 영국 EMI사의 전자사업을 인수한 것이 이러한 예이다(Quelch et al., 1991: 63f. Jacuemin, 1993: 131).

사실 기업인수·합병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따른다. 흡수대상이 되는 기업이 대부분 부실기업일 경우가 많고 법적인 제약 및 협상에서의 어려움이 있으나 기존의 생산설비, 전문인력, 노하우, 상표 및 유통망 등 제반 경영자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시장통합 이후 기업으로부터 선호되고 있는 투자전략이 되고 있다.

(3) 유럽기업의 전략적 제휴

경쟁양상이 세계화·첨예화되면서 기업의 글로벌화 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중요한 경영수단이 되고 있는 것이 전략적 제휴이다. 유럽기업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형태는 주로 연구·개발분야에 중점을 둔 투자활동, 합리화를 위한 투자 및 생산활동, 사업다각화 및 판매협력에 중점을 둔 시장활동으로 대별된다(Scholz et al., 1990: 141).

기업통합면에서 볼 때, 활발한 기업인수·합병을 통해 유럽시장에서 대기업의 시장지배력 정도가 더 증대할 것이다. 이 사실은 상대적으로 여력이 부족한 중견기업도 결과적으로 새로운 시장여건에 적응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합한 협력파트너를 찾을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다양한 부문이나 부가가치 창출단계에서의 기업협력이 특히 중견기업에게는 기업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되고 있다. 중견기업간의 협력은 특히 제품의 판매에 중점을 두게 되는데, 이러한 협력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기 위해서는 협력 파트너들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서로 보완적인 관계에 놓여있어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우는 특히 제품이나 시장영역을 협력을 통해 상호보강할 수 있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제품의 차별화를 이용한 시장확대전략을 구사하는데 있어서 사전 및 사후서비스로서의 서비스정책은 하나의 중요한 성공요인이 되고 있다(Toepfer, 1989: 12f.). 이를 하나님의 경쟁적 우위로 구축하기 위해서는 지역적인 고객밀착이 전제조건이다. 이것이 재정적인 이유로 독자적인 판매회사를 통해 이루어질 수 없다면 적합한 유통업이나 생산업체와 협력관계를 맺는 것이 성공의 관건이 된다.

급속한 기술의 변화, 제품수명주기의 단축 등으로 인해, 그리고 아직도 존재하고 있는 역내국에서의 보호주의적 성향, 관료주의적 인허가절차, 복잡하게 얹힌 기업의 소유구성 등의 장애요소가 인수나 합병을 어렵게 하고 있는 것도 기업이 전략적 제휴라는 방법을 택하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Quelch, 1991: 180).

그러나 타기업과의 제휴에는 문제가 야기될 수도 있다. 예컨대 제휴를 통한 후방통합에 있어서 품질이나 적기공급상의 어려움은 도외시하더라도 부품의 표준화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범유럽적 생산연계를 위한 제휴는 어렵게 된다(Toepfer & Huenerberg, 1990: 86).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대기업은 흔히 여러 유럽지역에 기업인수의 형태를 택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기업 내부적인 전환 및 적응과정만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통일화 문제가 가장 작게 나타나는 분야가 바로 연구·개발부문이다. 특히 오늘날 기술수명은 단축되고 있는 반면 신제품개발에 엄청난 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연구·개발을 위한 비용분담이 기업협력의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다.

이러한 비용상의 이점 및 결합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기업들은 특히 전략적 제휴

형태로 기업의 독립성을 유지하면서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공동이익을 추구하려는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제휴는 자동차분야의 예를 보면 특정 자동차 부품의 생산을 위한 노하우의 상호교환(British Leyland와 Honda)이나 소형승용차나 스포츠카의 공동개발 및 생산(GM와 Toyota; Chrysler와 Mitsubishi)을 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Ohmae, 1985: 87, 150ff.). 또한 해외시장이 지니고 있는 현지적 특수여건이나 고객욕구에 보다 더 잘 부응하여 시장에 침투하기 위한 목적으로나(Alfa Romeo가 Nissan과 제휴한 경우) 수입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British Leyland와 Honda의 제휴) 이루어지기도 한다(Ohmae, 1985: 79).

자동차 부문에서 위에서 열거한 예외에도 VW사가 Nissan, Ford, Toyota와 협력계약을 체결한 것이나 Daimler Benz사가 Mitsubishi사와 제휴한 예, 그리고 반도체사업부문에서 Siemens가 IBM, Toshiba사와 제휴한 예에서 볼 수 있듯이 유럽의 생산업체들은 같은 역내국 기업보다는 미국이나 일본기업과 기업협력을 더 선호하고 있다. 이것은 유럽의 대기업들이 유럽시장이라는 경계를 넘어 전세계로 그들의 활동영역을 확대하는 글로벌전략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Crow and Wildmann, 1988: 8; Pfaender, 1992: 265).

어제의 경쟁상대가 오늘의 동반자로 변하는 상황이 EU 뿐만 아니라 세계도처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기업간 제휴 및 협력이 글로벌 경쟁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 커질 것이며, 이를 전략적으로 잘 활용하는 기업은 더 큰 경쟁력을 갖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따라서 EU기업도 국제적 제휴를 국제적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필수적인 전략적 수단으로 이 용하려는 추세가 증대할 것으로 보인다.

V. 결 론

본 연구는 정치·경제·산업·기업에 이르는 상호의존성을 바탕으로 공동연구로 진행되었다. 그것은 유럽통합이 정치적 통합과 경제적 통합의 상호작용이며, 또한 그 상승작용에 의해서만 통합의 심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밀하자면 제도적 통합과 기능적 통합의 상호작용이야말로 유럽통합의 기본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볼 때 유럽연합의 통합은 정치적·경제적 통합의 이원성을 띠고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연구의 진행방향도 EU의 정치적 통합과정을 필두로 통상정책, 산업정책, EU기업의 영향 및 적응에 대하여 개별적 연구가 수행되었다.

EU의 정치적 통합에 있어서는 통합논의의 기본틀은 연방주의(federalism), 국가연합(confederalism) 및 단순히 결합을 상징하는 연합(union)의 3가지 기본 모델을 중심으로 나타났다. 통합의 초기에서는 연방주의가 강하게 나타났는데 그것은 2차대전으로

파괴된 유럽의 경제를 정치적, 제도적 단일화 속에서 회복하고 유럽의 번영을 꾀하고 자한 의지를 반영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는 브뤼셀과 스트라스부르그의 중앙집권에 반대하는 경향이 나타났는데, 그것은 유럽공동체의 초국가적 제도들이 국가고유의 특성과 문화를 훼손할지도 모를 우려때문이었다. 1970년대 이후 유럽의 통합이 자연된 것은 바로 이런 경향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1970년대 오일쇼크, 미국과 일본경제의 도전, 유럽의 경쟁력 약화 등의 일련의 위기의식은 연방주의자와 통합론자의 입장을 강하게 만들었다. 1987 유럽단일의정서 (Single European Act)의 탄생으로 지지부진하던 경제통합을 가속시키는 계기를 만들었고, 드디어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탄생으로 유럽연합(European Union)의 출범을 보게 되었다. 특히 마스트리히트조약은 통합의 강도를 높혀 유럽연합체제로 방향을 결정하였는데, 이러한 정치적 결정은 민주적 결손을 보상하는 제도적 장치, 즉 공동체와 회원국간의 관계를 보다 원만하게 조절하는 ‘보충성의 원리’를 제시함으로써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시민권의 도입, 공동외교정책, 공동안보의 추구는 EU가 상당 부분 연방주의적 요소를 가미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연방주의적 진로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통화부문의 통합, 즉 단일통화의 채택과 유럽중앙은행의 설립이다. 현재 EMS라는 유럽통화시스템이 1992년 붕괴이후 다시 회복되고 있어, 어느 때보다도 단일화에 대한 희망을 갖게 하고 있다.

EU가 연방주의로 가든지, 국가연합으로 가든지간에 EU는 점차 단일의 통치적 기반을 갖게 될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향후 각 회원국의 정책들은 EU 차원의 조화를 기하든가, 아니면 완전한 단일창구를 통한 정책결정의 빈도가 점차 증가할 것이다.

EU의 통상정책은 초창기 EEC시절부터 유럽통합의 근간이 되어 온 것으로 관세동맹의 모습으로 나타난 바 있다. EU통상정책은 1990년대 초까지는 관세동맹정책외는 통상정책상 별다른 심화를 보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1992년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의해 경제정책의 조화를 강하게 선언하는 새로운 전기를 맡게되었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EU는 경제동맹의 단계로 진입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동맹의 단계에 오면 재정, 금융, 통화정책에 이르기까지 경제정책의 조화를 이루게 되는데 궁극적으로 초국가적 기구의 탄생을 보게 된다.

우리의 최대 관심사는 EU 통상정책의 기초가 더욱 자유화의 경향을 떨 것인가 아니면 더욱 보호주의 색채를 보일 것인가 하는 것으로, 이는 향후 국제무역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문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선 EU 대외무역의 현황과 통상정책의 제도적 기초를 분석한 다음, 향후 통상정책을 전망해 보았다. EU의 통상정책이 1990년대 들어 커다란 변화를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것은 1993년 초 마스트리히트 조약의 발효로 통화통합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EFTA국가

와의 자유무역을 명시한 EEA조약의 발효, 독일의 통합가속, 그리고 UR의 종결이라는 대내외적 변화에 직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UR의 종결과 WTO신무역체제의 성립으로 EU의 지역주의의 진로가 불분명해졌기 때문이다.

EU의 향후 통상정책의 기조는 현재 2가지 방향 모두 예측될 수 있다. 우선 UR타결로 전세계적인 무역자유화가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여 EU의 통상정책이 다소 자유화의 추세로 진전될 것이라는 견해이다. 또 다른 가정은 EU가 최소한 현재와 같은 보호주의적 입장을 견지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으로 종전의 EC(유럽 공동체)는 EU(유럽연합)의 길로 접어들었다는 면에서 통상정책상의 중앙집권적 경향을 보일 것으로 본다. 집행위원회의 권한강화가 반드시 무역자유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프랑스, 이태리 스페인 등 주도국의 입김에 따라 ‘집단적 보호주의 (collective protectionism)’가 더욱 강해질 우려도 있다. 또한 범유럽주의가 유럽연합의 자유무역정책에 장애가 될 수도 있다. 말하자면 EEA조약의 발효로 유럽연합의 무역정책은 더욱 유럽지향적일 수도 있다는 점이다. 현재 70%가 넘은 유럽연합의 대유럽 무역의존도가 말하듯이 유럽의 지역과의 교역에서 소극적이거나 보호주의적 경향을 떨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독일통일의 가속과 동구권의 시장경제의 활성화로 범유럽적 경제통합과 역외차별주의가 강화될 우려도 있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EU의 통상정책은 WTO 신무역체제하에서 기대되는 ‘다자적 무역자유화(multilateral liberalisation)’와 이에 대항하는 ‘쌍무적 보호주의(bilateral protectionism)’사이의 trade-off로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으로는 시장확대와 무역자유화를 추진하고, 밖으로는 방어적 성격을 띠는 소위 ‘미니주적 무역자유화(minilateral liberalisation)’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EU의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왜냐하면 EU 통상정책의 목표가 역내산업의 경쟁력강화에 있기 때문이다(공동체조약 제110조). 그러므로 통상정책과 산업정책을 함께 분석하는 것이 EU의 경제정책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EU 공동산업정책의 이상은 역내시장의 단일화가 가져오는 ‘동태적 시장효율’의 증가에 있다. 따라서 시장통합 자체가 중요한 산업정책의 내용이 될 수 있다. ‘대시장이론’이 지적하듯이 기존 유럽시장이 분할됨으로써 나타난 비효율을 제거하고 역내기업의 효율성을 제거하고자 하는 것이 EU 산업정책의 가장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분할된 시장을 통합하는 중요한 원리로 (1) 상호인정의 원칙 (2) 제도적 조화의 원칙 (3) 보충성의 원칙이 제시되고 있다.

시장 및 산업조직의 산업정책의 수단에는 구조정책이 있는데, 구조정책 또한 유럽단일의정서 발효 이후 EU 산업정책의 중요한 한 축으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유럽단일의정서에는 EU 기술공동체(technology community)를 명시함으로써 기술에 대한 공동

대응을 정체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보·통신분야의 공동연구프로그램인 ESPRIT, JESSI프로그램 등 수많은 공동연구가 EU 집행위원회의 주관으로 실시되었다. 또한 EU 이사회는 1991년 11월 유럽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신산업정책의 요강을 승인했는데, 그 내용은 산업의 체질을 개선하고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구조정책보다는 교육, 기술, 환경, 등 산업기반의 확충이라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EU가 추구하는 시장단일화의 일차목표는 12개 회원국을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하여 상품, 사람, 자본 및 서비스의 역내 자유화를 완성하는 데 있다. 이러한 시장통합이라는 여전의 변화는 유럽기업에게는 새로운 희망과 도전이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통합은 산업·통상정책이라는 공공정책의 변화는 물론 기업에게도 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상·산업정책의 전환에 이어 유럽기업의 변화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크게 보면 시장단일화는 역내에서 각종 통제나 장벽이 제거됨으로써 비용이 절감되고 시장화대를 통한 규모의 경제가 달성되는 잇점을 제공한다. 반면 능동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에게는 존립자체에 위협이 되고 있다. 말하자면 역내자유화란 종전까지 국가의 보호를 받아오던 역내 한계기업에게는 어떤 식이든지 리스트러처링이 불가피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는 뜻이다.

본 연구에 의하면 시장통합의 환경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기업군으로는 (1) 수출 및 부가가치 창출비중이 높은 기업 (2) 기업전략이 사업영역, 사업규모 및 성과에 큰 영향을 끼치는 기업 (3) 제품의 규격이나 법적 규제의 국별차이가 심한 업종에 종사하는 기업 (4) 이전 국내의 보호를 받고 있거나 정치적 영향을 행사했던 기업 (5) 국내에서 선도적 지위를 갖고 있는 기업 (6) 기술적, 물리적 장벽으로 인해 수출에 관심을 갖지 못했던 기업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형별로 보면 비교적 규모가 큰 중견기업과 역내시장에서 이미 초국가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이미 세계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대규모 기업이나 순수 국내시장지향적인 기업은 별로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각종규제의 철폐에 따른 시장진입의 용이성은 기업간 경쟁심화를 의미함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대다수 기업들은 역내시장의 여전변화에 비교적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다. 이들은 주력기업의 전문화를 통한 구조재조정과 생산성증대를 위한 노력, 기존 시장의 유지와 신시장의 개척, 그리고 인수 및 합병을 통한 경쟁력의 제고를 도모하고 있다고 하겠다.

〈참 고 문 헌〉

김박수

1992 “범유럽경제권 형성의 전망과 영향”, 「KIEP 정책연구」 92-15.

김세균

1992 “유럽공동체 시장통합의 정치경제학”, 「지역연구」, 서울대학교 지역종합연구소 제1권 제1호.

라종일

1993 “유럽통합의 정치적 전망과 문제”, 한국유럽연구협회-동아일보사 공동주체 학술세미나.

민충기

1992 “EC의 무역장벽”, 「KIEP 정책연구」 92-14.

민충기

1993 “EC 경쟁정책 변화와 우리의 대응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정책자료 93-04.

박노형

1991 “새유럽의 도전”, 서울매일경제신문사.

소전정웅

1992 『경제통합의 신리론』, 관세と무역, 1992. 7

손병해

1988 『경제통합론』, 법문사, 서울.

유승필 · 손상익 · 이경숙

1993 “한·EC간 주요산업의 경쟁력 변화와 향후협력방안”, 산업연구원(KIET), 정책연구자료 93-39.

허 만

1991 “유럽통합: 문제와 전망”, 「구주연구」, 제2권 제1호.

Adams, W.

1992 *Singular Europ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Adams, H.W. & K. Rekittke

1989 “Ein weites Feld: Standort Europa,” H.W. Adams(ed.) *Europa 1992 -Strategie, Struktur, Ressourcen*, Frankfurt

Alderson, J.

1988 “Are Border Controls Necessary?” R. Bieber et al.(eds.) 1992: *One Europe*

- Market?* Baden-Baden: Nomos
- Burgess, M
 1989 *Federalism and European Union*, Routledge.
- Balassa, B.
 1969 *The Theory of Economic Integration*, Allen & Unwin.
- Bronker, M.
 1984 "Private Response to Foreign Unfair Practices", Northwestern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and Business, pp.716-726.
- Commission of EC
 1991a *Opening Up the Internal Market*, Brussels
 1991b *Europe: World Partner*, Brussels.
 1992 *The Single Market in Action*, Brussels.
- Bayliss, B. T. and El-Agraa, A. M.
 1992 "Competition and industrial policies with emphasis on competition policy", *The Economics of European Community*, St. Martin's Press, New York.
- Berg, H.
 1990 "Das Programm'EG-Binnenmarkt 92': Neue Chancen-Neue Risiken," H. Berg et al.(eds.) *Maerkte in Europa*. Stuttgart
- Berger, R.
 1989 EG '92-Gemeinschaftsstudie von Roland Berger & Partner und Manager Magazin. Muenchen
- Berger, R.
 1990 "Der Europaeische Binnenmarkt-Ein Schritt in Richtung Globalisierung," R. Berger(ed.) *Handbuch Europa '92*. Duesseldorf etc
- Bianchi, Patrizio
 1992 "Industrial Strategy and structural policies," *Current issues in industrial economic strategy*, Keith Cowling and Roger Sugden (eds.), Manchester University Press, Manchester.
- Bruhn, M.
 1989 "1992-Marketing im Europa ohne Grenzen," *Havard Manager* 11(1): 65-72
- Cool, K., Neven, A., Walter, I.
 1992 *European Industrial Restructuring in the 1990s*, New York Univ. Press.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91 *European Industrial Policy for the 1990s*, Bulleti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Supplement 3/91.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
- 1993, *Panorama of EC Industry*. Office for Official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Communities, Luxembourg.
- Corbett, R.
"The 1985 Intergovernmental conference and the Single European Act," in *The Dynamics of European Union*, R. Pryce(ed.), Croom Helm:238-272.
- Cechini, Pado
1988 Europa '92. Der Vorteil des Binnenmarktes. Baden-Baden: Nomos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EC-Commission)
- 1989 European Economy 40(May)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EC-Commission)
- 1993a European Economy(Supplement A) 5(May) Commission of the European Communities(EC-Commission)
- 1993b Panorama of EC Industry 93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DIHT)
- 1988 Wegweiser zum EG-Binnenmarkt, Chancen und Risiken fuer die deutsche Wirtschaft-Informationen fuer die Unternehmen. Bonn Deutscher Industrie- und Handelstag(DIHT)
- 1989 Erweiterung der Industrie- und Handelskammer-Umfrage zu Wirtschaftslage
- Delors, Jacques
1992 *Le Nouveau Concert Européen*, Paris, Odile Jacob.
- Dichtl, E. & A. Dohet
1992 "Der europaeische Binnenmarkt," *Marketingè ZFP* 14(4): 221-226 und Erwartungen um Binnenmarktfragen, Bonn Dudley, James w.
- 1990 1992: *Understandding new European Market*. Dearborn: Financial Publishing Geroski, P.& A. Jacquemin
- 1984 "Large Firms in the Eruopean Corporate Economy and Industrial Policy in the 1980's," A. Jcquemin(ed.) *European Industry: Public Policy and Corporate Strategy*. Clarendon Goermann, Hans W.
- 1992 *Die Auslandsmarktbearbeitung im europaeischen Binnenmarkt*. Frankfurt etc: Peter Lang

- Doutriaux Yves
 1992 *Le Traité sur l'Union Européenne*, Paris: Armand Colin.
- El-Agraa, A.
 1989 *The Theory and Measurement of International Economic Integration*, St. Martin's Press, New York.
- 1990 *The Economics of European Community*, St. Martin's Press, New York.
- Gerken, L.
 1993 *Europa 2000 - Perspektive Wohin?*, Haufe, Freiburg.
- Gerbet, Pierre
 1983 *La Construction de l'Europe*, Paris: Notre Siècle.
- Ghellinek, Elizabeth De,
 1990 "European industrial policy against the background of the Single European Act," Peter Loffey (eds.) *The Main Economic policy Areas of the EEC Toward 1992*, 3rd ed., Kluwer Academic Publishers, Dordrecht; Boston; London.
- Hass, E. B
 1985 *The Uniting of Europ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Hoefner, K.
 1990 Checkliste EG '92. Landsberg/Lech: Moderne Industrie Jacquemin, A.
 1993 "Corporate Strategy and Competition Policy in the Post-1992 Single Market," W. J. Adams(ed.) *Singular Europe. Economy Policy of the European Community after 1992*. Michigan: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Kluvich, H.
- 1992 *EG-Binnenmarkt. Kooperation und Konkurrenz*, Ludwigsburg-Berlin: Wissenschaft & Praxis Kommissio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en(EG-Kommission)
- 1985 *Vollendung des Binnenmarktes. Weissbuch der Kommission an den Europaeischen Rat*. Luxemburg Meffert, H.
- 1989 "Euro-Marketing im Spannungsfeld zwischen nationalen Beduerfnissen und globalen Wettbewerb," M. Bruhn & F. Wehrle(eds.) *Europa 92- Chancen und Risiken fuer das Marketing*. Muenster-Hiltrup Meissner, H.G.
- 1990 "Marketingstrategien im gemeinsamen europaeischen Binnenmarkt," E. Brauchlin (ed.) *Die Vollendung des EG-Binnenmarktes*. Stuttgart Methfessel, K.
- 1990 "Euroboom," *Manager Magazin* 3: 204-233
- Jackson, J.

- 1991 *The World Trading System*, The MIT Press.
- Jones, R. & Krueger, A.
- 1990 *The Political Economy of International Trade*, Basil Blackwell
- Kalaydjian, B
- 1993 *L'Élargissement de la Communauté, l'Europ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 Kiehling, H.
- 1992 *Finanzplatz Europa*, Deutscher Taschenbuch Verlag.
- Klodt, H.
- 1992 "Europäische Industriepolitik nach Maastricht", *Die Weltwirtschaft*, 1993, Heft 3, pp. 263-273.
- Langhammer, R.
- 1993 "Die Handelspolitik der EG nach 1992", Kiel Discussion Papers 214.
- Lauer, J.
- 1993 *Unternehmensführung in der EG*, WRS Verlag, München.
- OECD
- 1990 *Competition Policy in OECD Countries 1988-89*, Paris
- Ohmae, K.
- 1985 *Die Macht der Triade. Die neuen Formen des weltweiten Wettbewerbs*. Wiesbaden: Gabler
- Pallarz, K.-H.
- 1990 *EG-Binnenmarkt 1992: Daten, Fakten und Anregungen*. Stuttgart etc.: Kohlhammer Pfaender, Gabriela
- 1992 *Strategische Entscheidungen für den europäischen Binnenmarkt*. Frankfurt etc.: Peter Lang
- Pinder, J.
- 1988 "Enhancing the Community's Economic and Political Capacity: Some Consequences of Completing the Common Market," R. Bieber et al.(eds.)
- 1992: *One European Market?* Baden-Baden: Nomos
- Plinke, W.
- 1990 "Auswirkungen der europäischen Normung auf die Investitionsgüter-Industrie," H. Meffert & M. Kirchgeorg(eds.) *Marktorientierte Unternehmensfuehrung im Europaeischen Binnenmarkt*. Stuttgart Quelch, John A. et al.

- 1991 *The Marketing Challenge of Europe 1992*. Addison-Wesley Rath, H.
- 1990 *Neue Formen der internationalen Unternehmenskooperation*. Hamburg Schmidt, G.
- 1992 "Freier Warenverkehr innerhalb der EG.Unter besonderer Beruecksichtigung der Artikel 30ff. EWG-Vertrag," H.-W. Rengeling & R. v. Borries(eds.) *Aktuelle Entwicklungen in der Europaeischen Gemeinschaft*. Koeln etc: Carl Heymanns Scholz, L. et al.
- 1991 *Anpassungsergebnisse in Unternehmen durch den euroaeischen Binnenmarkt*. Muenchen:Ifo-Institut fuer Wirtschaftsforschung Tietz, B.
- 1989 *Euro-Marketing*. Landsberg/Lech: Moderne Industrie Toepfer, A.
- 1989 "Marketing-Qualitaet als ganzheitlicher Ansatz fuer langfristige Wettbewerbsvorteile," *Thexis* 6(6): 12-18
- Porter, Michael
- 1990 *The Competition Advantage of Nations*, Billin & Sons Ltd, Worcester Price, V. Curzon 1992 "Competition and industrial policies with emphasis on industrial policy", *The Economics of European Community*, St. Martin's Press, New York, Salvatore, D.
- 1992 *National Trade Policies*, Greenwood, Westport.
- Spinelli, Altiero
- 1972 "The Growth of the European Integration Since the Second World War", in Micheal Hodges(ed.), *European Integration*, Penguin Books.
- Taylor, Paul
- 1975 "The Politics of European Communities: The Confederal Phase", *World Politics*, Vol.XXVII, No3. April.
- Toepfer, A.& R. Huenerberg
- 1990 "Wettbewerbsstrategien im Europaeischen Binnenmarkt" *Marketingè ZFP 11* (2): 77-90
- Winters, L. and Venables, A.
- 1993 *European Integration: Trade and Industry*, Cambridge Univ. Press.
- Zentes, J. & S. Lubritz
- 1992 "Freier Warenverkehr im EG-Binnenmarkt vor dem Hintegrund der Maastrichter Beschluesse," *Marketingè ZFP 14(4)*: 227-232
- Zorgibes, Charles

1993 *Histoire de la Construction Européenn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Zorgibes, Charles

1978 *La Construction Politique de l'Europe*,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1989 "Europe Without Frontiers — Completing the Internal Market", Periodical 2/1989, European Documentation.

1993 Interview between Heo Mane and Léo Tindeman, Brussels, December 27.

The Deepening of the EU's Economic Integration and Restructuring of its Trade and Industrial Policy

Mahn Huh, Kwang-Su Kim, Kab-Su Lee, Young-Deuk Yoon

There have appeared two characteristics in the recent world economic trend: one is globalization and the other regionalization. With the Uruguay Round resolved and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established, multilateral free trade without national frontiers has come into existence, while a division of the world market by regional integration has also been in full process.

The EU seems to more accelerate the regionalization trend of the world economy than any other region. The EU completed market integration in 1993 by the Single European Act. And going beyond the Common Market level, it is entering a new phase seeking harmonization in public financ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Therefore, this paper is to study the process of deepening of the EU's integration and to review what its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would be like.

First, from the above point of view, this paper is to study a possibility of political integration, a long term objective of the EU that is closely connected with the economic integration. The integration movement of the EU, which can be termed as a neofunctionalism, has taken place over the long period of time, focussing on the unification and harmonization in public finance, monetary and financial policies, and trade and industrial policies. As a matter of fact, this process had considerably increased political cooperation. In particular, due to the currency integration

through the Maastricht Treaty, the integration movement has been directed to the federal approach. This approach is expected to intensify the possibility of the EU's political integration.

In regard of trade policy, its study focussed on whether the EU's policy will be directed more toward free trade or protectionism. Trade policy will be more centralized through the Maastricht Treaty, while due to the effectuation of the EEA treaty, it will be gradually more European, thus strengthening probably discriminatory practices toward non-European regions. Therefore the EU's basic trade policy will push forward with free trade on the one hand, but it will tilt to block-oriented tendency on the other hand.

EU's industrial policy is based on the principles of reciprocal recognition and of institutional harmonization together with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subsidiarity. It aims to strengthen competitive power of EU industries at the global level by fostering competition environment among regions, industries, and enterprises and by fostering the cooperation among relevant parties. The EU is focussing its energy on strengthening of industrial regional network of member states and thus restructuring its industries to stimulate the indigenous power of market.

As a matter of fact, the integration of EU's market has made a great contribution to the European industries and its enterprises. The contribution varies according to industry, strategy, and degree of globalization.

Looking closely into their typology, medium-sized and big-sized enterprises operating supranationally in Europe are most affected. In general, most of enterprises are positive in the deepening of competition through the integration of markets and are ready to more dynamically develop markets and to prepare active countermeasures by seeking new markets and at the same time by merger and undertakings of enterprises.

허만,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교수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 일반사회교육학과

Tel : 051-510-2644(O), 051-56-1989(H)

김광수, 부산대 경영학과 교수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 경영학과

Tel : 051-510-2558(O), 051-522-4836(H)

윤영득 : 부산대 경제학과 교수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 경제학과

Tel : 051-510-2549(O), 051-57-2219(H)

이갑수, 부산대 무역학과 교수

주소 : 부산시 금정구 장전동 산30 부산대 무역학과

Tel : 051-510-2569(O), 051-524-9528(H)